e편한세상 단양 리버비스타 입주자모집공고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한 모델하우스 운영안내

- 견본주택 방문 시 아래 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입장이 제한됩니다.

※ 견본주택 입장 전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을 경우

※ 견본주택 입장 시 열화상카메라 및 비접촉체온계를 통한 체온이 37.3도가 넘을 경우

※ 견본주택에서 실시하는 감역에 응하지 않는 경우(열화상카메라, 비접촉체온계, 손소독제 등)

※ 기타 진행요원의 안내에 따르지 않는 경우

※ 당첨자 발표 후 당첨유형에 따라 자격확인서류를 제출 기한까지 견본주택으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 제출서류는 당첨자 발표 후 별도로 추가 안내 할 예정입니다.(기본 서류는 홈페이지 공지예정)

※ 청약 및 공급 계약 등 주요 분양일정에 일반고객 관람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 당첨자의 견본주택 방문 시 입장은 당첨자 본인 외 동반1인만 입장 가능합니다.(당첨자와 동반1인/대리인 위임시 대리인 1인만 입장가능)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확산 및 정부정책에 따라 당첨자의 견본주택 관람, 당첨자 자격확인서류 제출 및 공급계약 체결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개별통보 할 예정입니다.

■ 본 아파트는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과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전화(☎ 1811-1028)를 실시할 예정이오나, 간혹 폭주하는 전화상담 신청으로 인해 다소 대기시간이 길어질 수 있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상담 시 신청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하여 정확하지 않은 정보 전달로 인해 청약관련 사항에 대한 착오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며, 청약과 관련된 전화상담은 청약신청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청약신청시 입주자모집공고를 통해 청약자격 등을 숙지하시어 관련 서류 등을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 입주자모집공고문의 내용을 반드시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및 계약자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2020.9.29.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되며,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주택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본 아파트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0. 12 . 11 .입니다.(청약자격조건의 기간, 나이, 지역우선 등의 청약자격조건 판단기준일입니다.)

■ 해당 주택건설지역(단양군)은「주택법」제63조 및 제63조의2에 의한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으로서, 본 아파트는「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1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도 1순위 자격이 부여됩니다.

■ 본 아파트는 수도권 외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4조에 따른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지 않고 기존 주택 당첨여부와 관계없이 본 아파트 청약이 가능합니다. (단, 본 제도는 당첨된 청약통장의 재사용을 허용하는 제도가 아니므로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본 아파트의 당첨자로 선정 시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0. 12 . 11 .) 현재 단양군에 거주하거나 충청북도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만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의 경우 청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청약 신청자 중 같은 순위 내에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단양군 거주자가 우선합니다.

■ 2019.11.01.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제5항 및 제23조제2항제7호에 따라 우선공급 받으려는 경우에는「출입국관리법」제88조의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장기해외체류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신청이 불가하며, 이를 위반하여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됩니다.

출입국사실증명서 해외체류기간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한 기간(입국 후 7일 내 동일국가 재출국 시 계속하여 해외에 체류한 것으로 봄) 또는 연간 183일을 초과하여 국외에 거주한 기간은 국내 거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해당 주택건설지역으로 청약할 수 없습니다. 단, 90일 이내의 여행, 출장, 파견 등 단기 해외체류는 국내거주로 간주되어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1)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나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여 이상 국외에 체류한 경력이 있으면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는 불인정하나 기타지역 거주자로는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2)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3)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한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불인정되며 기타지역 거주자로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단, 2020.09.29.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제7항에 따라 세대원 중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 2018.12.11.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2호의3, 제2조의4에 의거 '세대' 및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

-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부.모, 장인.장모, 시부.시모, 조부.조모, 외조부.외조모 등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아들.딸, 사위.며느리,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등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전혼자녀 등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 제1호 나목에 의거 주택(분양권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는 직계존속과 직계존속의 배우자는 가점제 항목의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습니다.
부양가족 판단 시 직계비속은 미혼자녀와 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의 손자녀인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됩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7호의2, 제23조제4항, 제53조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주택 소유로 간주하오니, 주택소유 여부 판정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참조)

※ 주택 소유로 보는 분양권등의 범위(국토교통부령 부칙 제3조, 제565호, 2018.12.11. 시행)

- 분양권등 신규 계약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또는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공급계약 체결일' 기준 주택 소유로 봄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공급받은 경우는 제외되나,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경우 주택소유로 봄)
- 분양권등 매수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매수 신고한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매매대금 완납일'(실거래 신고서상) 기준 주택 소유로 봄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7호의3에 의거 "소형.저가주택등"은 분양권등을 포함하며,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 제외)을 기준으로 가격을 판단합니다.

※ "소형.저가주택등"이란,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서 주택가격이 8천만원(수도권은 1억3천만원) 이하인 주택 또는 분양권등 (주택가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 가목2)의 기준에 따름)

■ 본 아파트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정착을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인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한국부동산원에서 운영하는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청약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청약 절차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운영하는 "청약가상체험"을 활용하시기 바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0조 제1항에 따라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실시합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의 청약자격이 개정되었으니 청약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존)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무주택군인 → (변경)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유주택자도 청약 가능)
- (기존) 입주자저축 1년 이상 가입자 → (변경) 본 주택의 해당순위(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순위, 2순위) 입주자저축 요건을 충족 시 청약 가능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여도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봅니다.
다만, 수도권에서 건설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이 아닌 수도권 거주자로 봅니다.
또한, 수도권외 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 중 전입제한일이 적용된 경우 기타지역 거주자의 자격으로 청약됩니다. (2018.1.2.모집공고 승인분부터 적용)

■ 고령자, 장애인, 다자녀가구(단, 미성년자녀 3명 이상)의 최하층 우선배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제1호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인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 제2호「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 제3호 미성년자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자 또는 세대에 속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신청(특별 및 일반공급)시 최하층의 주택배정을 희망한 당첨자에 대해서 해당 층을 우선 배정하오니 청약 시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하층이라 함은 1층을 말하며 1층이 없는 경우 최저층을 말하며, 해당 주택의 분양 가격이 바로 위층 주택의 분양가격보다 높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제3호에 해당하는 자 사이에 경쟁이 있으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 배정합니다. 단, 신청자가 많은 경우 다른 층을 배정받을 수 있고, 적은 경우에는 미신청자(최하층 우선배정 신청 비대상자 포함)에게도 최하층이 배정될 수 있습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1조제1항제1호다목에 의거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 시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전 기존주택을 처분하여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 2순위 자격이 부여됩니다(부칙 제5조 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

■ 신청접수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신청 할 경우에는 모두를 무효처리 합니다.
단, 본인이 같은 주택에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중복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 중복청약 시에는 모두 무효처리)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특별공급 신청 방법이 '견본주택 방문 신청'에서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인터넷 청약 신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접수를 원칙으로 하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만 사업주체 견본주택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5조제7항에 의거 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의 입주자는 다른 공급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2018.05.04.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6조의2에 의거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도록 신설되었으며, 특별공급 접수종류 구분없이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본 아파트는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을 점수로 계산하여 당첨자를 선정하는「청약가점제」및 추첨의 방법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는「추첨제」가 적용됩니다.

■ 본 아파트의 주택형 85㎡이하 주택은 2018.12.11.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8조제2항에 의거하여「청약가점제」40% 및「추첨제」60%가 적용됩니다.

■ 2017.09.20.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8조제6항제2호에 의거 본 주택에 가점제로 당첨되신 분은 당첨일로부터 2년간 가점제 당첨 제한자로 관리되오니, 향후 당첨자 본인 및 세대원이 가점제가 적용되는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가점제 제한사항 적용여부를 확인하신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 마이페이지 > 청약제한사항)

■ 본 아파트에 1순위 청약 시 모집공고일 현재 과거 2년 이내 가점제로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추첨제로 청약접수하여야 합니다. 또한, 가점제 제한 청약자가 가점제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부적격 처리되오니 청약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순위 접수방법이 '청약신청금 납부'에서 '청약통장 사용'으로 변경되었으니 2순위로 청약하고자 하시는 분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지역별 예치금액과 상관없이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 2018.12.11.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8조제8항에 의거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수도권 및 광역시에서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주택수보다 추첨 대상자가 많은 경우, 다음 순서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1.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되는 주택수의 75% : 무주택세대구성원
2. 나머지 25%의 주택(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 포함) : 무주택세대구성원과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기존 소유주택 처분조건을 승낙한 자로 한정)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공급한 후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 1순위에 해당하는 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에게 공급

※ 1주택(분양권등 제외)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가 우선 공급받으려는 경우, ① 공급받은 주택의 입주 이전에 기존주택의 소유권 처분 조건을 승낙하여야 하며, ② 입주예정일 이전에 기존주택의 소유권 처분계약에 관하여 신고하거나 검인을 받아야 하고, ③ 입주가능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기존주택의 소유권 처분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 ②에 따라 신고하거나 검인받지 않은 경우 입주할 수 없으며, ③에 따라 처분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 공급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6조의2제1항 및 제26조제1항에 따라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은 순위에 따라 대상 주택수의 40퍼센트를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선정된 예비입주자 현황은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부터 60일까지(예비입주자가 소진될 경우에는 그 때까지로 함) 당사의 인터넷 홈페이지(www.daelimcon-apt.co.kr)에 공개되며, 공개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에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소멸되며, 예비입주자의 지위가 소멸된 때 예비입주자와 관련한 개인정보는 파기처리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02.28. 시행한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1590(청약과열지역 등 예비입주자 선정비율 확대 요청)호에 따라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하는 주택은 500%, 청약과열지역·수도권(인천, 경기)·지방 광역시(부산,대구,대전,광주,울산)에서 공급하는 주택은 300%의 예비입주자를 선정

■ 2019.12.06.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6조에 의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는 청약신청자가 예비입주자 선정 총수에 미달되어도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합니다.

•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선정 시 주택형별로 공급세대수의 40%를 아래와 같이 선정합니다.

- 1순위 : 공급세대수의 40%까지 지역우선공급을 적용(대규모택지개발지구인 경우 지역구분 없음)하여 가점이 높은 자를 앞 순번으로 선정
 * 가점제가 적용되지 않는 주택인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
- 2순위 : 1순위에서 미달된 예비공급세대수 만큼 지역우선공급을 적용(대규모택지개발지구인 경우 지역구분 없음)하여 추첨으로 선정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로 선정된 자 중 당첨이 취소되거나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또는 공급계약을 해약한 자가 있으면 소명기간이 지난 후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순번에 따라 공급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의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의 참가의사를 표시한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 대하여는 특별공급 물량을,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 대하여는 일반공급 물량을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하여 공급하고, 특별공급 물량 중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2018.05.04.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6조의 제6항에 의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예비입주자로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 동·호수 배정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비입주자의 동호수배정일(당첨일)이 입주자 선정일보다 빠른 경우 예비입주자 계약체결은 가능하며 입주자선정내역은 무효처리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9조제2항에 따라 주택의 공급계약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사실 공고일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3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기간 동안에 체결합니다.

■ 해당건설지역(단양읍)은「주택법」제63조 및 동법 제63조의2에 의한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이며, 본 아파트는「주택법」제64조 및「주택법시행령」제73조 규정에 의거 수도권 외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아파트로서 분양권 전매에 제한이 없습니다. 단, 계약금(총 공급금액의 10%) 완납 후 전매가 가능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투기적발자 처벌 (「주택법」 제64조, 제65조 및 제101조)

- 분양과 관련하여 주택 청약통장 및 주택 분양권을 불법 거래하다가 적발된 자는「주택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주택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형사 고발되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불법거래를 알선 또는 중개한 부동산업자에 대해서도「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자격정지, 등록취소 등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 부동산 거래의 신고

- 본 아파트에 대한 공급계약을 체결한 계약자는「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 규정에 따라 공급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소재지 주무관청에 사업주체와 공동으로 부동산 거래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필요한 분양서류 일체를 사업주체에 제공하여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중도금 대출 관련 유의사항 : 중도금 대출은 정부의 대출관련정책 및 대출상품의 종류, 개인의 사정 및 자격가능여부 등에 따라 개인별로 대출금액이 축소되거나 대출 자체가 거부될 수 있으니 계약자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게 책임 및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분양대금을 본인 책임 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청약, 대출제한, 전매, 재당첨 등에 관한 사항은 향후「주택법」및 관계 법령 개정내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8.12.11.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8조제3항에 의거 부적격으로 당첨이 취소된 자는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 2020.01.01.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1조제2항에 의거 입주자모집공고는 최초 청약 신청 접수일 10일 전에 해야 합니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5조 및 제36조에 따른 특별공급의 경우로서 공급물량이 적거나 청약 관심도가 낮다고 판단되는 등의 경우에는 5일 전으로 단축할 수 있습니다.

※ 한국부동산원이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함에 따라 종전에 국민은행 청약통장 가입자도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를 통해 접수하게 되었습니다.

구 분	특별공급 (기관추천, 다자녀,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일반1순위	일반2순위	당첨자발표	당첨자 서류접수 (서류심사 및 부적격확인)	계약체결
일 정	2020년 12월 21일(월)	2020년 12월 22일(화)	2020년 12월 23일(수)	2020년 12월 30일(수)	2021년 1월 4일(월) ~ 2021년 1월 6일(수)	2021년 1월 11일(월) ~ 2021년 1월 13일(수)
방 법	인터넷 청약 (08:00 ~ 17:30)	인터넷 청약 (08:00 ~ 17:30)	인터넷 청약 (08:00 ~ 17:30)	개별조회 (청약Home 로그인 후 조회 가능)	견본주택 (10:00~16:00)	—
장 소	■ 사업주체 견본주택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음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당사 견본주택 방문검수 - 구비서류 등 지참 방문 ※검수 접수건수의 과밀로 인한 검수일정 및 운영시간은 변경될 수 있음	당사 견본주택

※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 한해 특별공급은 견본주택 방문접수(10:00~14:00, 은행창구 접수 불가), 일반공급은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09:00~16:00)에서 청약이 가능합니다.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에 한해 당첨자 발표일 이후 계약체결 전까지 사업주체가 요구하는 서류 제출기간에 자격확인과 관련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스마트폰앱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스마트폰앱을 이용하여 청약할 경우에는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공인인증서를 해당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기 바랍니다. 청약 당일 공인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0.09.29. 개정된 내용 관련 자세한 사항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주택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I 공급내역 및 공급금액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단양군청 민원과 - 151086호(2020.12.11.)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 공급위치 : 충청북도 단양군 단양읍 도전리 659-2번지 일원
■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3층, 지상20층 5개동 총 396세대
[특별공급 159세대(일반[기관추천] 36세대, 다자녀가구 36세대, 신혼부부 57세대, 노부모부양 11세대, 생애최초 19세대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 **내진설계에 관한 사항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의해 내진설계가 되어 있으며, 내진능력은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표기하며, 본 건축물은 메르칼리 진도등급(MMI등급) VII-0.2074g입니다.
■ 입주시기 : 2023년 06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공급대상**

주택 구분	주택관리번호	모델	주택형 (전용면적기준)	약식표기	주택공급면적(㎡)			기타 공용면적 (지하주차장등)	계약 면적	세대별 대지지분	총공급 세대수	특별공급 세대수						일반분양 세대수	저층 우선배정 세대수
					주거 전용면적	주거 공용면적	소계					기관 추천	다자녀 가구	신혼 부부	노부모 부양	생애 최초	계		
민영 주택	2020001372	01	084.8608A	84A	84.8608	26.5986	111.4594	32.8069	144.2663	57.3461	304	29	29	45	9	15	127	177	14
		02	084.9150B	84B	84.9150	28.0363	112.9513	32.8279	145.7792	57.3828	92	7	7	12	2	4	32	60	5
	합 계										396	36	36	57	11	19	159	237	19

※ 평형환산방법 : 공급면적(㎡) × 0.3025 또는 공급면적(㎡) ÷ 3.3058
※ 2009.04.01.「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일부개정으로 인해 주택형 표기방식은 기존 공급면적(전용면적 + 주거공용면적)기준에서 주거전용면적만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형의 구분은 입주자모집공고상의 표기이며, 견본주택 및 홍보 제작물 등은 약식으로 표현될 수 있으니 청약 및 계약 시 주택형에 대한 혼돈 방지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예정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 견본주택 및 분양안내문 등으로 동.호배치도, 평면도 등을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라며, 청약 신청한 주택형은 추후 다른 주택형으로 변경 불가합니다.
※ 특별공급 미청약분은 일반공급으로 전환됨에 따라 일반공급 세대수는 특별공급의 청약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단위 : ㎡, 원, 부가가치세 포함)

주택동	주택 호수	타입	층수 구분	공급 세대수	세대별 분양금액			세대별 분양가								
								계약금 10%		중도금 60%						잔금 30%
					대지비	건축비	공급금액	1차	2차	1차(10%)	2차(10%)	3차(10%)	4차(10%)	5차(10%)	6차(10%)	
								계약시	계약후30일내	2021.03.16	2021.06.16	2021.09.16	2022.06.16	2022.09.15	2022.12.15	입주지정일
101동	1~3	84A	2~4	9	20,394,900	258,605,100	279,000,000	5,000,000	22,900,000	27,900,000	27,900,000	27,900,000	27,900,000	27,900,000	27,900,000	83,700,000
	4	84B	2~4	3	20,241,390	256,658,610	276,900,000	5,000,000	22,690,000	27,690,000	27,690,000	27,690,000	27,690,000	27,690,000	27,690,000	83,070,000
	5	84A	2~4	3	19,693,140	249,706,860	269,400,000	5,000,000	21,940,000	26,940,000	26,940,000	26,940,000	26,940,000	26,940,000	26,940,000	80,820,000
	1~3	84A	5~9	15	20,687,300	262,312,700	283,000,000	5,000,000	23,300,000	28,300,000	28,300,000	28,300,000	28,300,000	28,300,000	28,300,000	84,900,000
	4	84B	5~9	5	20,533,790	260,366,210	280,900,000	5,000,000	23,090,000	28,090,000	28,090,000	28,090,000	28,090,000	28,090,000	28,090,000	84,270,000
	5	84A	5~9	5	19,985,540	253,414,460	273,400,000	5,000,000	22,340,000	27,340,000	27,340,000	27,340,000	27,340,000	27,340,000	27,340,000	82,020,000
	1~3	84A	10~15	14	20,979,700	266,020,300	287,000,000	5,000,000	23,700,000	28,700,000	28,700,000	28,700,000	28,700,000	28,700,000	28,700,000	86,100,000
	4	84B	10~15	6	20,826,190	264,073,810	284,900,000	5,000,000	23,490,000	28,490,000	28,490,000	28,490,000	28,490,000	28,490,000	28,490,000	85,470,000
	5	84A	10~15	6	20,277,940	257,122,060	277,400,000	5,000,000	22,740,000	27,740,000	27,740,000	27,740,000	27,740,000	27,740,000	27,740,000	83,220,000
	1~3	84A	16~20	8	21,272,100	269,727,900	291,000,000	5,000,000	24,100,000	29,100,000	29,100,000	29,100,000	29,100,000	29,100,000	29,100,000	87,300,000
	4	84B	16~20	5	21,118,590	267,781,410	288,900,000	5,000,000	23,890,000	28,890,000	28,890,000	28,890,000	28,890,000	28,890,000	28,890,000	86,670,000
	5	84A	16~20	5	20,570,340	260,829,660	281,400,000	5,000,000	23,140,000	28,140,000	28,140,000	28,140,000	28,140,000	28,140,000	28,140,000	84,420,000
102동	1~2	84A	1	2	20,102,500	254,897,500	275,000,000	5,000,000	22,500,000	27,500,000	27,500,000	27,500,000	27,500,000	27,500,000	27,500,000	82,500,000
	3	84B	1	1	19,671,210	249,428,790	269,100,000	5,000,000	21,910,000	26,910,000	26,910,000	26,910,000	26,910,000	26,910,000	26,910,000	80,730,000

	1~2	84A	2~4	6	20,394,900	258,605,100	279,000,000	5,000,000	22,900,000	27,900,000	27,900,000	27,900,000	27,900,000	27,900,000	27,900,000	83,700,000
	3	84B	2~4	3	19,963,610	253,136,390	273,100,000	5,000,000	22,310,000	27,310,000	27,310,000	27,310,000	27,310,000	27,310,000	27,310,000	81,930,000
	4	84A	2~4	3	19,693,140	249,706,860	269,400,000	5,000,000	21,940,000	26,940,000	26,940,000	26,940,000	26,940,000	26,940,000	26,940,000	80,820,000
	1~2	84A	5~9	10	20,687,300	262,312,700	283,000,000	5,000,000	23,300,000	28,300,000	28,300,000	28,300,000	28,300,000	28,300,000	28,300,000	84,900,000
	3	84B	5~9	5	20,256,010	256,843,990	277,100,000	5,000,000	22,710,000	27,710,000	27,710,000	27,710,000	27,710,000	27,710,000	27,710,000	83,130,000
	4	84A	5~9	5	19,985,540	253,414,460	273,400,000	5,000,000	22,340,000	27,340,000	27,340,000	27,340,000	27,340,000	27,340,000	27,340,000	82,020,000
	1~2	84A	10~15	11	20,979,700	266,020,300	287,000,000	5,000,000	23,700,000	28,700,000	28,700,000	28,700,000	28,700,000	28,700,000	28,700,000	86,100,000
	3	84B	10~15	6	20,548,410	260,551,590	281,100,000	5,000,000	23,110,000	28,110,000	28,110,000	28,110,000	28,110,000	28,110,000	28,110,000	84,330,000
	4	84A	10~15	6	20,277,940	257,122,060	277,400,000	5,000,000	22,740,000	27,740,000	27,740,000	27,740,000	27,740,000	27,740,000	27,740,000	83,220,000
	2	84A	16~20	4	21,272,100	269,727,900	291,000,000	5,000,000	24,100,000	29,100,000	29,100,000	29,100,000	29,100,000	29,100,000	29,100,000	87,300,000
	3	84B	16~20	5	20,840,810	264,259,190	285,100,000	5,000,000	23,510,000	28,510,000	28,510,000	28,510,000	28,510,000	28,510,000	28,510,000	85,530,000
	4	84A	16~20	5	20,570,340	260,829,660	281,400,000	5,000,000	23,140,000	28,140,000	28,140,000	28,140,000	28,140,000	28,140,000	28,140,000	84,420,000
103동	1~2	84A	1	2	19,590,800	248,409,200	268,000,000	5,000,000	21,800,000	26,800,000	26,800,000	26,800,000	26,800,000	26,800,000	26,800,000	80,400,000
	3	84B	1	1	19,437,290	246,462,710	265,900,000	5,000,000	21,590,000	26,590,000	26,590,000	26,590,000	26,590,000	26,590,000	26,590,000	79,770,000
	1~2	84A	2~4	6	19,883,200	252,116,800	272,000,000	5,000,000	22,200,000	27,200,000	27,200,000	27,200,000	27,200,000	27,200,000	27,200,000	81,600,000
	3	84B	2~4	3	19,729,690	250,170,310	269,900,000	5,000,000	21,990,000	26,990,000	26,990,000	26,990,000	26,990,000	26,990,000	26,990,000	80,970,000
	4	84A	2~4	3	19,327,640	245,072,360	264,400,000	5,000,000	21,440,000	26,440,000	26,440,000	26,440,000	26,440,000	26,440,000	26,440,000	79,320,000
	1~2	84A	5~9	10	20,175,600	255,824,400	276,000,000	5,000,000	22,600,000	27,600,000	27,600,000	27,600,000	27,600,000	27,600,000	27,600,000	82,800,000
	3	84B	5~9	5	20,022,090	253,877,910	273,900,000	5,000,000	22,390,000	27,390,000	27,390,000	27,390,000	27,390,000	27,390,000	27,390,000	82,170,000
	4	84A	5~9	5	19,912,440	252,487,560	272,400,000	5,000,000	22,240,000	27,240,000	27,240,000	27,240,000	27,240,000	27,240,000	27,240,000	81,720,000
	1~2	84A	10~15	12	20,468,000	259,532,000	280,000,000	5,000,000	23,000,000	28,000,000	28,000,000	28,000,000	28,000,000	28,000,000	28,000,000	84,000,000
	3	84B	10~15	6	20,314,490	257,585,510	277,900,000	5,000,000	22,790,000	27,790,000	27,790,000	27,790,000	27,790,000	27,790,000	27,790,000	83,370,000
	4	84A	10~15	6	20,204,840	256,195,160	276,400,000	5,000,000	22,640,000	27,640,000	27,640,000	27,640,000	27,640,000	27,640,000	27,640,000	82,920,000
	1~2	84A	16~20	8	20,760,400	263,239,600	284,000,000	5,000,000	23,400,000	28,400,000	28,400,000	28,400,000	28,400,000	28,400,000	28,400,000	85,200,000
	3	84B	16~20	5	20,606,890	261,293,110	281,900,000	5,000,000	23,190,000	28,190,000	28,190,000	28,190,000	28,190,000	28,190,000	28,190,000	84,570,000
	4	84A	16~20	5	20,497,240	259,902,760	280,400,000	5,000,000	23,040,000	28,040,000	28,040,000	28,040,000	28,040,000	28,040,000	28,040,000	84,120,000
104동	1~2	84A	1	2	20,102,500	254,897,500	275,000,000	5,000,000	22,500,000	27,500,000	27,500,000	27,500,000	27,500,000	27,500,000	27,500,000	82,500,000
	3	84B	1	1	19,671,210	249,428,790	269,100,000	5,000,000	21,910,000	26,910,000	26,910,000	26,910,000	26,910,000	26,910,000	26,910,000	80,730,000
	1~2	84A	2~4	6	20,394,900	258,605,100	279,000,000	5,000,000	22,900,000	27,900,000	27,900,000	27,900,000	27,900,000	27,900,000	27,900,000	83,700,000
	3	84B	2~4	3	19,963,610	253,136,390	273,100,000	5,000,000	22,310,000	27,310,000	27,310,000	27,310,000	27,310,000	27,310,000	27,310,000	81,930,000
	4	84A	2~4	3	20,131,740	255,268,260	275,400,000	5,000,000	22,540,000	27,540,000	27,540,000	27,540,000	27,540,000	27,540,000	27,540,000	82,620,000
	1~2	84A	5~9	10	20,687,300	262,312,700	283,000,000	5,000,000	23,300,000	28,300,000	28,300,000	28,300,000	28,300,000	28,300,000	28,300,000	84,900,000
	3	84B	5~9	5	20,256,010	256,843,990	277,100,000	5,000,000	22,710,000	27,710,000	27,710,000	27,710,000	27,710,000	27,710,000	27,710,000	83,130,000
	4	84A	5~9	5	20,424,140	258,975,860	279,400,000	5,000,000	22,940,000	27,940,000	27,940,000	27,940,000	27,940,000	27,940,000	27,940,000	83,820,000
	1~2	84A	10~15	12	20,979,700	266,020,300	287,000,000	5,000,000	23,700,000	28,700,000	28,700,000	28,700,000	28,700,000	28,700,000	28,700,000	86,100,000
	3	84B	10~15	6	20,548,410	260,551,590	281,100,000	5,000,000	23,110,000	28,110,000	28,110,000	28,110,000	28,110,000	28,110,000	28,110,000	84,330,000
	4	84A	10~15	6	20,716,540	262,683,460	283,400,000	5,000,000	23,340,000	28,340,000	28,340,000	28,340,000	28,340,000	28,340,000	28,340,000	85,020,000
	1~2	84A	16~20	10	21,272,100	269,727,900	291,000,000	5,000,000	24,100,000	29,100,000	29,100,000	29,100,000	29,100,000	29,100,000	29,100,000	87,300,000
	3	84B	16~20	5	20,840,810	264,259,190	285,100,000	5,000,000	23,510,000	28,510,000	28,510,000	28,510,000	28,510,000	28,510,000	28,510,000	85,530,000
	4	84A	16~20	5	21,008,940	266,391,060	287,400,000	5,000,000	23,740,000	28,740,000	28,740,000	28,740,000	28,740,000	28,740,000	28,740,000	86,220,000
105동	1~3	84A	2~4	9	20,394,900	258,605,100	279,000,000	5,000,000	22,900,000	27,900,000	27,900,000	27,900,000	27,900,000	27,900,000	27,900,000	83,700,000
	4	84B	2~4	3	20,241,390	256,658,610	276,900,000	5,000,000	22,690,000	27,690,000	27,690,000	27,690,000	27,690,000	27,690,000	27,690,000	83,070,000
	5	84A	2~4	3	20,131,740	255,268,260	275,400,000	5,000,000	22,540,000	27,540,000	27,540,000	27,540,000	27,540,000	27,540,000	27,540,000	82,620,000
	1~3	84A	5~9	15	20,687,300	262,312,700	283,000,000	5,000,000	23,300,000	28,300,000	28,300,000	28,300,000	28,300,000	28,300,000	28,300,000	84,900,000
	4	84B	5~9	5	20,533,790	260,366,210	280,900,000	5,000,000	23,090,000	28,090,000	28,090,000	28,090,000	28,090,000	28,090,000	28,090,000	84,270,000
	5	84A	5~9	5	20,424,140	258,975,860	279,400,000	5,000,000	22,940,000	27,940,000	27,940,000	27,940,000	27,940,000	27,940,000	27,940,000	83,820,000
	1~3	84A	10~15	18	20,979,700	266,020,300	287,000,000	5,000,000	23,700,000	28,700,000	28,700,000	28,700,000	28,700,000	28,700,000	28,700,000	86,100,000
	4	84B	10~15	5	20,826,190	264,073,810	284,900,000	5,000,000	23,490,000	28,490,000	28,490,000	28,490,000	28,490,000	28,490,000	28,490,000	85,470,000
	5	84A	10~15	6	20,716,540	262,683,460	283,400,000	5,000,000	23,340,000	28,340,000	28,340,000	28,340,000	28,340,000	28,340,000	28,340,000	85,020,000
	1~3	84A	16~20	13	21,272,100	269,727,900	291,000,000	5,000,000	24,100,000	29,100,000	29,100,000	29,100,000	29,100,000	29,100,000	29,100,000	87,300,000
	5	84A	16~17	2	21,060,110	267,039,890	288,100,000	5,000,000	23,810,000	28,810,000	28,810,000	28,810,000	28,810,000	28,810,000	28,810,000	86,430,000

■ 공통유의사항

- 본 아파트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주택으로, 상기 주택형별 공급금액은 분양가 자율화에 따라 공급금액 범위 내에서 주택형별, 동별, 층별에 따라 사업주체가 차등을 두어 적의 조정하여 책정한 금액임.
- 상기 공급금액에는 각 주택형별 공히 소유권이전등기비용, 통합취득세가 미포함된 금액임.
- 상기 공급금액에는 발코니확장비용 등 추가 선택품목비용이 미포함 되었으며, 추가 선택품목은 계약자가 선택하여 계약하는 사항으로, 분양계약 시 별도의 계약을 통해 선택이 가능함.
-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에는 계단, 복도, 주현관 등 주거공용면적과 부대시설, 경비실, 지하주차장 등 그 밖의 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으며, 상기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음.
- 상기 세대별 대지지분은 주택형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향후 지적확정측량결과 또는 공부정리결과에 따라 대지면적 증감이 있을 수 있음.
- 근린생활시설(단지 내 상가)은 별도 분양대상으로서 상기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근린생활시설과 공동주택간 하나의 단지로 대지경계(구획)가 없는 공유 토지임.
- 전용면적은 안목치수로 산정하며 그 외 면적은 중심선 치수로 산정하며, 소수점 이하 단수조정으로 등기면적이 상이할 수 있음.
- 층수는 건립 동별, 해당 주택형이 속한 라인의 최상층임.
- 중도금은 당해 주택의 건축공정이 전체 공사비(부지매입비를 제외함)의 50%이상이 투입된 때(다만, 동별 건축공정이 30%이상 되어야 한다.)를 기준으로 전후 각 2회 이상 분할하여 받으며, 상기 중도금 납부일자는 예정일자로서 감리자의 건축공정 확인에 따라 추후 변동될 수 있음.
- 잔금은 사용검사일 이후에 받음. 다만, 동별 사용검사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얻어 입주하는 경우에는 전체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금을 입주일에, 전체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잔금은 사용검사일 이후에 받을 수 있음.
 (대지권에 대한 등기는 공부정리 절차 등의 이유로 실 입주일과는 관계없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위 단서 조항이 적용되지 않음)
- 분양금액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며, 잔금은 입주(열쇠 불출일)전에 완납하여야 함.(중도금 및 잔금 납부일이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익일 은행영업일을 기준으로 함)
- 중도금 금융대출을 원할시 수분양자가 분양계약체결 후 지정된 중도금 대출 협약은행과 중도금대출 계약을 별도로 체결하여야 함.(세부적인 대출신청일정 등은 별도안내 예정)
 단, 대출 미신청자와 본인의 부적격 사유로 인하여 대출이 불가한 계약자는 상기 납부일정에 맞추어 본인이 직접 납부해야하며 미납 시 연체료가 가산됨.
- 중도금 및 잔금을 약정일 이전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선납금액에 대하여 공급계약서에 명시된 할인율을 적용하여 선납일수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할인함.
 단, 잔금에 대하여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할인하며, 입주지정기간에는 할인료 및 연체료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 선납금액은 주택 분양보증을 받을 수 없음. 다만, 선납금액 중 약정별 납부기일이 지난 경우는 주택 분양보증을 받을 수 있고, 선납할인액은 상기 중도금 일정에 따라 계산됨.
 (중도금 및 약정일 이전에 납부한 선납금액은 환불불가)
- 청약(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및 분양계약 시 모든 제출서류는 원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사본불가)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함.
- 본 표시재산의 구조물 등 제반 사항은 설계도면 등을 통하여 반드시 확인 후 계약하여야 하며, 확인하지 못한 사항으로 인한 이의제기 및 그 밖의 인쇄물이나 구두약정의 내용은 인정하지 아니함.
- 본 주택에 대한 신청자격 등 판단 시 기준이 되는 면적은 주거전용면적이고, 연령조건은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며, 당첨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본인의 책임과 비용으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소명기간 이내에 소명을 완료하여야만 계약체결이 가능함.
- 상기 공급세대의 청약접수는 전산관리지정기관(한국부동산원)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 동별, 층별, 호별 구분 없이 주택형별, 청약 순위별로 접수를 받고 동.호수를 추첨하여 추첨결과에 따라 각 동별, 층별, 호별로 당첨자를 선정함.

Ⅱ 특별공급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 특별공급 신청자격별 · 주택형별 공급세대수

구 분			84A	84B	합 계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국가유공자 등 국가보훈처 추천		13	3	16
	장기복무 제대군인		1	-	1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1	-	1
	중소기업 근로자		10	3	13
	장애인		4	1	5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		29	7	36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	**우선공급(75%)**	34	9	43
		일반공급(25%)	11	3	14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9	2	11
생애최초 특별공급	—		15	4	19
합 계			127	32	159

※ 주택형별 특별공급대상 세대수는 공급세대수, 비율 등을 감안하여 배정하였으며 배정 호수가 없는 주택형에 대하여는 신청할 수 없음.

※ 2018.05.04. 및 2020.09.29.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75%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00%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에게 우선공급하며, 나머지 주택(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한다.)은 소득기준을 완화하여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20%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30% 이하)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합니다. 단, 일반공급하는 주택가격이 6억원 이상 9억원 이하인 경우 소득 기준의 130%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40% 이하)에게 공급합니다.

※ 특별공급 세대수는 지자체와 협의하여 결정된 사항임

■ 특별공급 공통사항

구분	내용
1회 한정/ 자격요건/ 자격제한	• 특별공급 주택을 분양받고자 하는 자는「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5조에 따라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이 가능하고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향후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으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6조 제1호 및 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특별공급 횟수 제한 제외)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요건, 청약자격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함
무주택 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함. ※ 1세대 내 무주택세대구성원(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주 한정) 중 1인만 신청가능하며,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의 구성원(부부 포함)이 중복 청약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체결 불가, 부적격당첨자로 관리되며 당첨일부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당첨 제한]

<table>
<tr><td></td><td>- 기관추천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 생애최초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
-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주 요건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구성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및 제4호)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td></tr>
<tr><td>청약자격
요건</td><td>•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함.
- 기관추천 특별공급(국가유공자, 장애인, 철거민 및 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제외) / 신혼부부 특별공급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신청자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85㎡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자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85㎡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 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 가능함.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table>
<tr><th>구 분</th><th>특별시 및 부산광역시</th><th>그 밖의 광역시</th><th>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th></tr>
<tr><td>전용면적 85㎡ 이하</td><td>300만원</td><td>250만원</td><td>200만원</td></tr>
<tr><td>전용면적 102㎡ 이하</td><td>600만원</td><td>400만원</td><td>300만원</td></tr>
<tr><td>전용면적 135㎡ 이하</td><td>1,000만원</td><td>700만원</td><td>400만원</td></tr>
<tr><td>모든면적</td><td>1,500만원</td><td>1,000만원</td><td>500만원</td></tr>
</table></td></tr>
</table>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세대수의 10% 범위) : 36세대

▪ **대상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해당하는 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특별공급 대상 해당 기관장의 추천 및 인정서류를 받으신 분.
(단, 거주요건 등 우선순위 기준은 해당 기관장이 정하며,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는 제외함)

※ 청약자격요건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단, 국가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 장애인 및 도시재생 부지제공자 제외

※ 추천기관

-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 국군복지단 복지사업운용과(02-2225-6378)
- 장애인 : 단양군청 주민복지과 경로장애팀(043-420-2134), 충북도청 노인장애인과(043-220-3075)
- 장기복무 제대군인, 국가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 : 충청북도 북부 보훈지청 복지팀(043-841-8861)
- 중소기업 근로자 : 충청북도 중소기업 진흥청 조정협력과(043-230-5309)

▪ **당첨자 선정방법**

-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우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6조에 의거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합니다.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미신청시 당첨자선정(동·호배정)에서 제외되며 계약불가]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므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다자녀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 : 공급 세대수의 10% 범위) : 36세대

▪ 대상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0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단양군에 거주하거나 충청북도 지역에 거주하는 만19세 미만의 자녀 3명(태아 포함) 이상을 둔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경과,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신청이 가능함.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3명 이상의 자녀 모두 민법상 미성년자(만19세 미만)이어야 함. 3명 이상의 자녀 중 전부 또는 일부가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주와 다른 지역에 거주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미성년자임을 입증하여야 함.
- 자녀수에는 태아나 입양자녀도 포함됨.[임신의 경우 서류 제출 시 출산 관련 자료(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임신 지속시 임신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미제출, 허위임신 등의 경우 당첨 취소 및 부적격 처리됨]
- 분양권전매 요청 시 임신자격이 유지(또는 출산)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사업주체가 요구하는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임신자격이 유지(또는 출산)되고 있다고 사업주체가 판단하는 경우에만 분양권 전매 요청을 접수함.
- 출산 관련 자료는 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태아나 입양한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할 경우 출산 등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입주시까지 입양이 유지되어야 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제3항)
- 재혼으로 성이 다른 자녀를 부양하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자녀임을 입증하여야 함.
- 다자녀 중 전부 또는 일부가 주민등록표상 청약신청자와 세대를 달리할 경우 「가족관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 당첨자 선정방법

- 해당지역(단양군)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하며, 경쟁이 있는 경우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우선순위 배점표"에 의한 점수 순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함.
또한, 동일점수로 경쟁이 있을 경우 ①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②자녀수가 같을 경우 공급 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순으로 공급함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본 공고상에 표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및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 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 따름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우선순위 배점표

평점요소	총배점	배점기준		비고
		기준	점수	
계	100			
미성년 자녀수(1)	40	미성년 자녀 5명 이상	40	자녀(태아, 입양아, 전혼자녀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19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만 포함
		미성년 자녀 4명	35	
		미성년 자녀 3명	30	
영유아 자녀수(2)	15	자녀 중 영유아 3명 이상	15	영유아(태아, 입양아, 전혼자녀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세 미만의 자녀
		자녀 중 영유아 2명	10	
		자녀 중 영유아 1명	5	
세대구성(3)	5	3세대 이상	5	공급신청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무주택자로 한정)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 등본에 등재
		한부모 가족	5	공급신청자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자
무주택기간(4)	20	10년 이상	20	**배우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정)도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무주택기간은 공급신청자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청약자가 성년(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이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산정하되 청약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함)부터 무주택 기간 산정**
		5년 이상 ~ 10년 미만	15	
		1년 이상 ~ 5년 미만	10	
해당 시·도 거주기간(5)	15	10년 이상	15	**공급신청자가 성년자(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로서 해당 지역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을 산정** * 시는 광역시.특별자치시 기준이고, 도는 도.특별자치도 기준이며, 수도권의 경우 서울.경기.인천지역 전체를 해당 시.도로 본다.
		5년 이상 ~ 10년 미만	10	
		1년 이상 ~ 5년 미만	5	
입주자저축가입기간(6)	5	10년 이상	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공급신청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명의 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 기준으로 산정

(1), (2)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이혼·재혼의 경우 자녀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경우(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도 포함)에 한함)

(3) : 한부모 가족의 경우 한부모가족증명서로 확인 (3), (4) : 주택소유여부 판단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3조를 적용

(4), (5)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주민등록표초본으로 확인 (6) : 입주자저축 가입확인서로 확인

※ 동점자 처리 ①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② 자녀수가 같을 경우 공급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 상기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위 기재내용을 검색 또는 확인한 결과 평점요소 자격이 다르거나, 무주택기간 상이 및 유주택자 등 부적격자로 판명될 경우에는 당첨 취소 및 계약해제는 물론 관련 법령에 의거 처벌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민등록표초본상 말소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시·도 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됩니다.

※ 기타 본 입주자모집공고 상에 표시되지 않는 내용에 대해서는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269호(2018.5.8.)]에 따릅니다.

■ 신혼부부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 : 공급 세대수의 20% 범위) : 57세대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1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단양군에 거주하거나 충청북도 지역에 거주하고 혼인기간이 7년 이내(혼인신고일 기준, 재혼 포함)인 무주택세대구성원(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 무주택자이어야 함*)으로서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자

* 단, 2018.12.11. 전 기존주택을 처분하여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 2순위 청약 가능(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경과,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출산은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판단하며, 임신의 경우 임신진단서, 입양의 경우 입양관계증명서(양자 및 친양자의 경우 입양관계 증명서 상 입양신고일이 적용됨) 등으로 확인
- 임신의 경우 계약서류 제출 시 출산 관련 자료(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임신 지속 시 임신진단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허위 임신, 불법낙태의 경우 당첨취소 및 부적격 처리되어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 (출산 관련자료는 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소득기준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4명 이상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한다) 기준의 120%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30% 이하) 다만, 세대에 속한 모든 자가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 주택가격이 6억원 이상 9억원 이하인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월평균소득 기준의 130% 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40% 이하)

▪ **당첨자 선정 방법**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75%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00% 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에게 우선공급하며, 나머지 주택(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한다.)은 소득기준을 완화하여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20% 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30% 이하)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합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우선공급 또는 일반공급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당첨자 선정방법**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자녀 유무에 따라 순위제를 규정하며, 제1순위에 우선공급 합니다.
 - ① **제1순위 :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임신 중이거나 입양한 경우 포함)하여 **자녀가 있는 자**(「민법」제855조제2항에 따라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외의 출생자가 있는 경우를 포함) * 재혼일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내 임신 중이거나 출산(입양포함)한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
 - ② **제2순위 :** 1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 **무자녀 또는 2018.12.11. 전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

■ **같은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당첨자 선정방법**

- 제1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순서대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① 해당 주택건설지역(단양군) 거주자
 - ②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수가 많은 자
 - * 재혼인 경우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입양한 미성년자녀(전혼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신청자 또는 세대 분리된 재혼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 상에 등재되어야 함.
 - * 재혼 배우자의 친자녀(전혼 배우자의 자녀)는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만 해당
 - ③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수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정된 자
- 제2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순서대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해당 주택건설지역(단양군) 거주자 우선 공급함.
 - ②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수가 많은 자
 - * 재혼인 경우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입양한 미성년자녀(전혼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신청자 또는 세대 분리된 재혼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 상에 등재되어야 함.
 - * 재혼 배우자의 친자녀(전혼 배우자의 자녀)는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만 해당
 - ③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수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정된 자

※ 임신부부 또는 입양부부가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에게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까지 출산 및 입양 관련 서류(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 제출을 요구하여 출산여부 및 입양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입양의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입주하기 전에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하고, 임신부부의 임신상태가 입주지정 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입주하기 전에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입주예정자가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불법 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2019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 2020.2.20.이후 모집공고분부터 적용*)

공급유형		구분	2019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신혼부부 우선공급 (기준소득,75%)	배우자가 소득이 없는 경우	100% 이하	5,554,983원	6,226,342원	6,938,354원	7,594,083원	8,249,812원	8,905,541원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6,665,980원	7,471,610원	8,326,025원	9,112,900원	9,899,774원	10,686,649원
신혼부부 일반공급 (상위소득,25%)	배우자가 소득이 없는 경우	100%초과~120%이하	5,554,984원 ~ 6,665,980원	6,226,343원 ~ 7,471,610원	6,938,355원 ~ 8,326,025원	7,594,084원 ~ 9,112,900원	8,249,813원 ~ 9,899,774원	8,905,542원 ~ 10,686,649원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초과~130%이하	6,665,981원 ~ 7,221,478원	7,471,611원 ~ 8,094,245원	8,326,026원 ~ 9,019,860원	9,112,901원 ~ 9,872,308원	9,899,775원 ~ 10,724,756원	10,686,650원 ~ 11,577,203원

- 기준소득 :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부부 중 1인 소득이 월평균 소득기준 100%초과시 일반공급 25%(상위소득)[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월평균 소득기준 120%초과~130%이하)]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 상위소득 :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 2020.09.29.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제1항제1호에 따라 6억원 이상 9억원 이하 주택을 생애최초로 구입하는 경우(세대에 속한 모든 자가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일반공급 기준소득을 10%씩 완화 적용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655,729) * (N-8)}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세대주 및 성년인자(만19세 이상)의 합산 소득입니다(단, 세대원의 실종 · 별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의 대상에서 제외함).
※ 월평균소득은 연간소득÷근무월수를 말하며, 연간소득은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의 총급여액(21번) 및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상의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며, 근무월수는 근로자인 경우에는 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를,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 가구원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 (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만큼 가구원수로 인정)
※ 군복무중이어서 건강(의료)보험증이 없는 경우 : 군복무확인서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징구하고 이 경우 군복무자(직업군인 제외)는 소득이 없는것으로 간주하고, 군복무자 및 배우자의 소득을 파악하여 월평균 소득을 산정함
※ 종교기관(교회, 사찰 등)이 신청인 앞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 소득 신고의무 및 국민연금 가입의무가 없는 자로서 종교기관이 신청자 앞으로 등록되어있는 경우는 대표자가 무보수임을 증명할 수 있는 정관 등을 첨부하여 소득증빙서류로 준용함
※ 신청자 명의로 사업자(법인)등록이 되어 있으면서 본인이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인 경우 : 소득금액증명서상의 사업소득이 법인인감이 날인된 소득증빙서류(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근로소득지급조서 등)로 근로소득을 확인한 후 두 소득액을 합산하여 월평균 소득을 산정함.
※ 직업이 프리랜서이고 소득이 불규칙한 경우 :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람인 경우에는 소득금액증명으로 소득을 확인하고, 신고하지 않은 사람의 경우에는 계약서상의 계약금액으로 월평균 소득을 산정함.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에 소득(근로 또는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 : 전년도 1월 1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총 소득을 동 기간으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함.
※ 자영업자이면서 근로자인 경우 : 전년도 사업소득에 대한 월평균소득과 근로소득에 대한 월평균소득을 각각 산정하여 합산하되, 사업소득이 손실로 되어있으면 사업소득은 없는 것으로 하여 근로소득만으로 월평균소득을 산정함.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통계를 통계청에서 발표하기 전에는 전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함.(통계청 기준으로 함)

[유의사항] 신혼부부 특별공급시 우선공급(75%) 단수 처리기준 : 소수점 이하 절상 , 예시) 13세대 공급시 : 우선공급(75%)- 10세대 배정, 일반공급(25%)- 3세대 배정
※ 기타 본 입주자모집공고 상에 표시되지 않는 내용에 대해서는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784호(2018.12.1.)]에 따릅니다.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 : 공급 세대수의 3% 범위) : 11세대

▪ **신청자격**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6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단양군에 거주하거나 충청북도 지역에 거주하면서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하고 있는 무주택 세대주(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여야 함.)

※ 무주택기간은 청약신청자 및 그 배우자, 피부양자(노부모) 및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산정(「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 따라 피부양자 및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에서 제외)
※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여야 함
※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피부양자의 배우자 포함)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 소형.저가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8조에 따른 청약1순위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당첨자 선정방법**

- 동일 순위 내에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단양군) 거주자가 우선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제2항에 따라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가점제를 적용하되, 동점일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에 따름.
- 1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가점제 적용은 신청자 본인이 작성한 '청약가점 산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에 의거한 청약가점 점수를 우선순위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신청자 본인이 직접 작성한 청약가점의 점수가 본인의 기재 오류에 의한 잘못으로 판명될 경우, 당첨이 취소될 수 있으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본 입주자모집공고 상에 표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는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269호(2018.5.8.)]에 따릅니다.

■ 생애최초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3조 : 공급 세대수의 15% 범위, 단 민간택지는 7% 범위) : 19세대

▪ **신청자격**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3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단양군에 거주하거나 충청북도 지역에 거주하면서 생애최초(세대에 속한 모든 자가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 한정)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 제28조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는 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과거 1년 내에 소득세(「소득세법」제19조 또는 제20조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함)를 납부한 자를 포함]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자. 단, 이 경우 해당 소득세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
- **소득기준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4명 이상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한다) 기준의 130%이하인 자**

※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여야 함
※ 소형 · 저가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8조에 따른 청약1순위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2019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 2020.2.20.이후 모집공고분부터 적용)

공급유형	구분	2019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생애최초 특별공급	130% 이하	7,221,478원	8,094,245원	9,019,860원	9,872,308원	10,724,756원	11,577,203원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655,729) * (N-8) * 130%}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세대주 및 성년인자(만19세 이상)의 합산 소득입니다(단, 세대원의 실종 · 별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의 대상에서 제외함).

※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가구원수에 포함합니다.

※ 월평균소득은 연간소득÷근무월수를 말하며, 연간소득은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의 총급여액(21번) 및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상의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며, 근무월수는 근로자인 경우에는 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를,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 가구원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

▪ 당첨자 선정방법

-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단양군)** 거주자가 우선하며,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으로 결정합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Ⅲ 일반공급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단양군에 거주하거나 충청북도 지역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 중 입주자저축 순위별 자격요건을 갖춘 자(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 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를 대상으로 주택형별 청약순위 별로 청약 접수가 가능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제4항에 의거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단양군을 포함한 충청북도 외 지역에 거주하여도 단양군 거주자로 인정되며 본 주택의 해당 순위(1순위 및 2순위) 입주자 저축 요건을 충족 시 청약 가능함

▪ 청약신청 유의사항

- 주민등록표초본상 말소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시·도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
- 신청자격 및 요건 등의 기준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이며 면적은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함
- 청약신청 접수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중복신청이 불가(1인 1건만 신청 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신청할 경우에는 청약 모두를 무효 처리함.
- 본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당첨자로 전산관리됨.
-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당첨자 발표일이 늦은 주택의 당첨은 자동 취소됨.(각각 동일한 청약통장으로 당첨된 경우에 한함)
- 상기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체결 여부와 상관없이 재사용이 불가하며 당첨자로 전산 관리되므로 향후 다른 주택 청약 시 제한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람.[단 부적격당첨자가 소명기간 내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 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 청약과열지역은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 주택(일정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 되는 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조치하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음
- 청약예금 가입한 후 예치금액이 작은 지역에서 큰 지역으로 주거를 이전한 분은 신청일 현재 변경된 주거지역에 해당하는 청약예금 예치금액으로 증액하여 청약이 가능함. 단 차액을 감액하는 경우 또는 주거지 변경없이 가입한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청약 신청할 경우에는 지역간 예치금액 변경없이 청약 가능함)
- 청약통장 관련 기준사항

①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 기준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 시 청약 신청 가능함

② 청약예금 지역간 예치금액 차액 충족 기준 : 청약 접수 당일까지 충족 시 청약 신청 가능함
③ 청약통장 예치금 기준(주택청약종합저축)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당일까지 예치금 충족 시 청약 신청 가능함
④ 청약예금의 신청 가능 주택규모(전용면적 기준) 변경한 분 신청 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한 경우 신청 가능함
(단, 작은 주택규모로 변경할 경우 해당구간의 청약예치금액 충족 시 별도의 주택규모 변경 절차 없이 하위 면적 모두 청약 가능함)

■ **민영주택의 청약 예치기준금액(**「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0조 제2항 관련)

구 분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전용면적 85㎡ 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0조 제2항 별표2 [민영주택의 청약 예치기준금액]에 따라 지역별, 주택규모별 예치금을 예치한 청약통장 가입자는 그 예치금 이하에 해당하는 면적의 주택에 대해 별도의 면적변경 없이 청약 가능함

■ **입주자저축 순위별 요건**

구분	순위	주택형	청약관련 신청자격
민영주택	1순위	전 주택형, (전용 85㎡이하)	▪ 전용면적 85㎡ 이하 : 가점제 (40%) 및 추첨제 (60%) 적용, 가점제 낙첨자는 추첨제 대상자로 자동 전환됨.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요건이 아래의 1순위를 충족하는 자. (가점제 접수) ①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②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납입하여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③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현재 납입인정 범위 내에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자. ④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납입금액이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
		전용 85㎡초과	▪ 전용면적 85㎡ 초과 : 추첨제 (100%) 적용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요건이 아래의 1순위를 충족하는 자 ①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②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현재 납입인정 범위 내에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자. ③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납입금액이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
	2순위	전 주택형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예치금액과 상관없이 청약예·부금 및 주택청약종합저축(포함)에 가입한 자

Ⅳ 신청일정 및 장소, 구비서류

■ 신청일정 및 장소

구분	신청대상자	신청일시	신청방법	신청장소
특별공급	일반(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2020.12.21(월) (청약Home 인터넷 : 08:00~17:30) (사업주체 견본주택 : 10:00~14:00)	• 인터넷 청약 **(PC 또는 스마트폰)**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사업주체 견본주택
일반공급	1순위	2020.12.22(화) 08:00~17:30	• 인터넷 청약 **(PC 또는 스마트폰)**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대행은행 창구
	2순위	2020.12.23(수) 08:00~17:30		

※ 스마트폰앱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엡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스마트폰앱을 이용하여 청약할 경우에는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공인인증서를 해당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기 바랍니다. 청약 당일 공인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특별공급 신청 방법이 '견본주택 방문 신청'에서 인터넷(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청약 신청'으로 변경되었으며, 특별공급의 경우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견본주택 방문접수(은행창구 접수 불가) 허용됩니다. (방문 접수시간 : 10:00~14:00)

※ 일반공급의 경우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나 정보취약계층(고령자,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에서 청약이 가능 (창구 접수시간 : 09:00~16:00)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시 가점항목 등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체결 시 주민등록표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주택공급 신청내용과 청약자격을 대조한 후 청약신청 내용과 청약자격이 일치할 경우에 계약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람.

■ 인터넷 청약서비스 이용방법 및 절차 안내 (해당순위 청약신청일 08:00~17:30)

※ 한국부동산원에서 운영하는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청약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현재 해당 청약순위가 발생하신 분은 청약통장 가입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인인증서를 청약 신청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아야 합니다.

한국부동산원(全 은행 청약자 : 국민은행 포함)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PC 청약시]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접속 ⇒ 공인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청약신청」⇒「APT청약신청」⇒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

[스마트폰 청약시] 스마트폰앱(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접속 ⇒ 공인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청약신청」⇒「APT청약신청」⇒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

인터넷 청약 절차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운영하는 "청약가상체험"을 활용하시기 바람

[주택청약업무가 금융결제원으로부터 한국부동산원으로 이관 되면서, 아래와 같은 서비스가 추가로 제공됩니다.]

① [행정정보 자동조회]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순위 청약신청 시, 신청 과정에서 청약자가 원할 경우 주민등록표등·초본,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해당기관으로부터 열람하여 그 정보를 즉시 보여줌으로써, 청약에 필요한 여러 가지 자격을 판단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선택사항이며, 청약신청 당일 지자체 통신망 연결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제공되지 않을 수 있음)
- 「청약신청」⇒「APT청약신청」⇒「Step2. 주택형선택 및 행정정보 자동조회」⇒「서비스 이용 동의 시」. 단, 미동의 시 기존과 동일한 절차대로 신청자가 직접 해당 자격을 판단하여 입력 가능

② [모집공고단지 청약연습] 공고일 다음날부터 일반공급 청약신청 전날까지 세대원을 등록하고, 해당 세대원(성년자에 한함)의 개인정보 동의가 완료되면, 실제 청약하고자 하는 모집공고에 대한 신청자 및 세대원의 청약자격(주택소유 및 각종 청약제한사실)을 미리 알아볼 수 있어, 부적격자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지원합니다.
- 「모집공고단지 청약연습」⇒「세대구성원 등록/조회」⇒「세대구성원 동의」⇒「모집공고단지 청약연습 신청」. 단, 세대구성원 등록 생략 시 신청자 본인에 대해서만 청약자격 검증

※ 상기 접수시간(17:30)은 청약접수 완료 기준으로 청약 신청 진행 중이라도 접수 완료하지 않고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신청 시 해당 은행에서는 청약자격에 대한 확인(검증)없이 청약 신청자가 기재한 사항만으로 청약접수를 받으며, 청약자가 인터넷 청약내용을 잘못 입력하여 당첨자로 결정될 경우에도 부적격 당첨자에 해당되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하여야 함.

■ 고령자, 장애인 등 은행창구 청약 (일반공급은 인터넷 청약 신청이 원칙이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을 제외하고는 은행창구에서의 청약접수는 불가함)

<table>
<tr><th>구 분</th><th colspan="3">구비사항</th></tr>
<tr><td rowspan="3">일반
공급</td><td>본인 신청 시</td><td colspan="2">· 주택공급신청서(청약통장 가입은행 비치)
·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 통장
· 예금인장 또는 본인 서명
※ 그 외 구비사항은 생략하오니 직접 작성하시기 바랍니다.</td></tr>
<tr><td rowspan="2">제3자 대리신청 시
추가사항
(배우자 포함)</td><td colspan="2">·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사항 외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 함</td></tr>
<tr><td>인감증명 방식</td><td>본인서명확인 방식</td></tr>
<tr><td>-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td><td>- 청약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의 서명) 1통
- 청약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td></tr>
</table>

※ 상기 제증명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또는 청약자격 전산등록 기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접수함.(단,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서류 제출)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산일 산정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람.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이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음.
※ 주택공급 신청서의 단말기 「(전산)인지란」의 인자된 내용과 주택공급신청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고, 동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당일 내로 공급신청서를 접수한 영업점에 정정 신청을 해야 함.
※ 본인 및 배우자가 인장 날인 없이 신청인[서명]으로 주택공급신청서를 작성한 경우는 신청자 성명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하며, 주택공급신청서의 [서명]은 접수받은 직원 입회하에 신청인이 직접 기재해야 함.

■ 특별공급 신청자격별 구비서류 (당첨자 자격확인 제출서류)

※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에 한해 당첨자 발표일 이후 계약체결 전 사업주체가 요구하는 서류 제출기간에 제출하여야 함.
※ 아래의 제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견본주택에서는 아래의 구비사항이 완비된 경우에 한하여 접수함.
※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임.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배우자, 직계 존.비속 포함)로 간주함.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추가서류 제출대상자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공통서류	O		특별공급신청서, 무주택서약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본인	- 접수 장소에 비치 - 청약Home(www.applyhome.co.kr)에서 청약한 경우 생략
	O		주민등록표등본	본인	-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요망
	O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	- 본인서명사실확인서(대리인불가), 용도 : 주택공급신청용(본인 발급용)
	O		인감도장	본인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시는 제출 생략
	O		신분증	본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O	주민등록표 등본	배우자	- 주민등록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 (상기 등본발급시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바람)
	O		청약통장순위(가입)확인서	본인	- 청약통장 가입은행으로부터 순위(가입) 내역 발급 또는 청약Home(www.applyhome.co.kr)홈페이지에서 청약통장순위(가입) 확인서 발급 (단, 국가유공자, 장애인특별공급 신청자 제외, 인터넷청약에서 청약한 경우 생략)
	O		주민등록표초본	본인	-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주소변동사항 사유 및 발생일(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O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O	복무확인서	본인	- 10년 이상 장기 복무 군인 자격으로 신청하는 경우(10년 이상 군복무 기간 명시)
	O		출입국사실증명원	본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5항의 의거 거주요건을 확인하여 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
		O	출입국사실증명원	부양가족	- 직계존속 부양가족 제외 사항 해외에 체류중(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인 경우에는 부양가족에서 제외 - 직계비속 부양가족 제외 사항 30세 미만 : 입주자모집공고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중인 경우 30세 이상 : 입주자모집공고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O	주민등록표초본	피부양 직계존속	-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O	주민등록표등본	자녀	- 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본인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O	가족관계증명서	자녀	- 재혼가정의 자녀일 경우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된 경우에만 해당
		O	한부모가족증명서	본인	- 세대주가「한부모가족지원법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한 경우
		O	혼인관계증명서	본인	- 만 19세 이전에 혼인하여 무주택 기간과 해당시,도 거주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O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산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 임신의 경우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유산 낙태관련 진단서 등)제출 (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O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 입양의 경우
신혼부부 특별공급	O		혼인관계증명서	본인	- 혼인신고일 확인
	O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본인 및 19세 이상 세대원	-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세대주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제출(발급처:국민건강보험공단)
	O		소득증빙서류	세대원	-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주택공급 신청자의 세대주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서류(표1참조) (단, 배우자 분리세대는 분리된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직계존비속 소득입증서류)
		O	가족관계증명서	자녀	- 재혼가정의 자녀일 경우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된 경우에만 해당
		O	주민등록표등본	자녀	- 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O	기본증명서	자녀	- 출생관련 일자 확인 필요시
		O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산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 임신의 경우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유산 낙태관련 진단서 등) 제출(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 해야 함)
		O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 입양의 경우
		O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	본인 또는 배우자	- 임신의 경우(주택전시관에 비치)
		O	비사업자 확인각서	본인 또는 배우자	- 비사업자의 경우(주택전시관에 비치)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O	주민등록표초본	피부양 직계존속	-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3년 이상의 주소변동사항을 포함하여 발급)

	O		주민등록표초본	직계비속	- 만 30세 이상 미혼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O	가족관계증명서	피부양 직계존속	- 본인의 주민등록표상에 피부양 직계존속과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거나 피부양 직계존속이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 분리된 경우
	O		출입국사실증명원	피부양 직계존속	- 해외에 체류중(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인 경우에는 부양가족에서 제외
		O	혼인관계증명서	본인/자녀	- 본인 : 만 30세 미만에 혼인하여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상세로 발급) 자녀 : 만 18세 이상의 미혼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상세로 발급)
생애최초 특별공급		O	주민등록표초본	피부양 직계존속	- 당첨자의 직계존속이 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당첨자 또는 당첨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하였음을 확인하여, 소득산정 시 당첨자의 가구원수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1년 이상의 주소변동 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포함하여 발급)
		O	혼인관계증명서	자녀	- 만 18세 이상의 미혼자녀를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상세로 발급)
	O		소득증빙서류	세대원	-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주택공급 신청자의 세대주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서류(표2참조) (단, 배우자 분리세대는 분리된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직계존비속 소득입증서류)
제3자 대리인 신청시 추가사항	O		인감증명서	청약자	- 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외국인인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O		인감도장	청약자	-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 시는 제출 생략
	O		위임장	청약자	-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접수 장소에 비치
	O		신분증, 인장	대리인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증빙서류

해당자격		소득입증 제출서류	발급처
근로자	일반근로자	① 재직증명서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②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서 (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 전년도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 연말정산 등으로 인해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기 전에 특별공급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전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	* 해당직장 * 세무서
	금년도 신규취업자 또는 금년도 전직자	① 재직증명서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② 금년도 월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직인날인)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③ 직장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④ 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 ※ 근로기간이 1개월을 경과하지 못하여 근로소득원천징수부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과 동일한 직장의 동일 직급, 동일 호봉인 자의 전년도 근로자 원천징수영수증과 재직증명서를 제출받아 월평균 소득을 추정	* 해당직장
	전년도 전직자	① 재직증명서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②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해당직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지 않는 자 (학원강사, 보육교사 등)	① 총급여액 및 근무기간이 기재된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급여명세표(근로소득지급조서) ※ 근로계약서 및 월별급여명세표에 사업자의 직인날인 필수	* 해당직장
자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면세사업자	① 전년도 종합소득세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 세무서
	간이과세자 중 소득세 미신고자	①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증 사본 ※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금액 증명 제출	* 세무서

영업자	신규사업자	①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 및 국민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또는 최근의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서(부본)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 국민연금관리공단 * 세무서
	법인사업자	①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③ 법인등기부등본	* 세무서 * 등기소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① 전년도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 사업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 또는 당해회사의 급여명세표 ② 위촉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 세무서 * 해당직장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주민센터
비정규직 근로자 / 일용직 근로자		① 계약기간 및 총급여액 명시된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급여명세표 또는 근로소득지급조서 ※ 근로계약서, 월별급여명세표 및 근로소득지급조서에 사업자의 직인날인 필수 ② ①번 서류가 없는 경우,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 해당직장 * 국민연금관리공단
무직자		• 비사업자 확인각서 (견본주택 비치)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에 소득(근로 또는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에는 전년도 1월1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총 소득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접수장소

■ <표1>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세 납부 입증 제출서류

해당여부	서류구분	확인자격	소득입증 제출서류	발급처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입증서류**	근로자	① 재직증명서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세무서 * 해당직장 * 건강보험공단
		자영업자	① 사업자등록증 사본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근로자,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를 납부한자	①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납세사실증명 포함)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 납부분에 한함)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소득세납부 입증서류	과거 5개년도 소득세 납부내역 * 근로자, 자영업자,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분으로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 납부자	- 과거 5개년도 소득세 납부증명서류로 아래에 해당하는 서류 중 하나 ① 소득금액증명원(근로자용 또는 종합소득세신고자용) 및 납세사실증명서 ②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③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일용근로자용 소득금액증명 및 납세사실증명서	* 세무서 * 해당직장

■ 일반공급 신청자격별 구비서류 (당첨자 자격확인 제출서류)

※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에 한해 당첨자 발표일 이후 계약체결 전 사업주체가 요구하는 서류 제출기간에 제출하여야 함.

※ 아래의 제증명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견본주택에서는 아래의 구비 사항이 완비된 경우에 한하여 접수함.

※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임.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배우자, 직계 존.비속 포함)로 간주함.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상세)	발급기준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공통서류	○		서약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본인	- 견본주택에 비치[인터넷청약(청약Home)에서 청약한 경우 일부 생략]
	○		인감증명서(본인발급용) 또는 본인서명 사실확인서	본인	- 용도 : 주택공급신청용(본인 발급용)
	○		인감도장	본인	-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시는 제출 생략
	○		신분증	본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		주민등록표등본(상세)	본인	-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		주민등록표초본(상세)	본인	-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사항 사유 및 발생일(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본인	-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상세"로 발급 - 배우자 및 자녀, 직계존속 등 공급신청자와의 관계
	○		출입국사실증명원	본인	- 지역 우선공급 대상으로 공급받으려는 경우
		○	주민등록표등본(상세)	배우자	- 주민등록표등본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상기 주민등록표등본 발급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	-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일반공급 가점제 추가서류		○	출입국사실증명원	부양가족	- 직계존속 부양가족 제외 사항(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3년 발급) 요양시설 및 해외에 체류 중(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에는 부양가족에서 제외 - 직계비속 부양가족 제외 사항(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1년 발급) 만30세 미만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중인 경우 만30세 이상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	주민등록표초본(상세)	피부양 직계존속	-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3년 이상의 주소변동사항을 포함하여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본인의 주민등록표상에 피부양 직계존속과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거나 피부양 직계존속이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분리된 경우
		○	주민등록표초본(상세)	피부양 직계비속	- 만30세 이상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본인/직계비속	- 만30세 이전에 혼인하여 혼인신고일로부터 무주택기간을 인정 받고자 하는 경우만 18세 이상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부적격 통보를 받은 자 (해당 주택에 대한 소명자료)		○	건물등기사항 전부증명서		- 또는 건축물 관리대장등본(가옥대장등본 포함)
		○	무허가건물확인서		- 또는 철거예정증명서
		○	소형·저가주택임을 증명하는 서류		- 건물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 건축물관리대장등본과 주택공시가격증명원 등
		○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기타 사업주체가 요구하는 서류		- 해당 기관의 당첨사실 무효확인서 등
제3자 대리인 신청시 추가사항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청약자	- 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외국인인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위임장	청약자	-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주택전시관에 비치
	○		신분증 및 인장	대리인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 최하층 주택우선배정 신청(고령자, 장애인, 미성년자인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분에 한함)

※ 금회주택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1조 에 의거 거동이 불편한 만65세 이상의 노인·장애인, 미성년자인 3명이상의 자녀를 둔자를 배려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최하층 주택을 우선 배정하며, 최하층 주택 공급세대수는 주택형별 층별 공급세대수를 참조하시기 바람.

※ 최하층 주택 우선배정 신청자가 각 주택형별 1층 주택수를 초과할 경우 1층에 배정되지 않을 수도 있으며, 향후 자격입증서류가 사실과 다를 경우 부적격 당첨으로 계약체결 불가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람.

※ 최하층이라 함은 1층을 말하며 1층이 없는 주택형의 경우 공급주택 중 최하층을 말함.

구분	최하층 우선배정 안내
신청자격	청약신청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자 중 아래 ① ~ ③에 해당하는 분 중 (최하층)주택 희망자 ①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에 속한 만65세 이상인 자 ②「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세대에 속한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자 ③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자인 3명 이상의 자녀(태아, 입양을 포함)를 둔 분 ※ 경쟁 시 ①,②에 해당하는 신청자에게 우선하여 배정
신청방법	* 특별공급 신청자 : 본인이 신청하고자 하는 청약자격별로 정해진 신청일자에 인터넷 청약하여 신청하고, 자격입증서류 및 최하층(1층)주택 우선배정 신청서(별도 양식)를 제출해야 함. * 일반공급 신청자 : 희망자는 인터넷청약 시 최하층(1층) 우선배정을 선택하여 신청하고, 당첨자 서류제출 시 자격입증 서류 및 최하층(1층) 주택 우선배정신청서(별도 양식)를 추가로 제출해야 함. ※ 자격입증서류 ①번 해당자-주민등록표등본 ②번 해당자-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수첩 사본 등 ③번 해당자-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청약 가점제 적용기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 1

구 분	내 용
①무주택기간 적용기준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원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한다**. 2) 소형·저가주택등의 가격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2007년 9월 1일 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 9월 1일 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별표에서 같다) 중 2007년 9월 1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른다. 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후에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다) 분양권등의 경우: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에 대한 가격은 제외한다) 3) **무주택기간**은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하고, 주택공급신청자의 연령이 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하되, 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기산한다. 이 경우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한다)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한다.
②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	1)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세대원으로 한다. 2)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은 **주택공급신청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인 경우**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다만,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으며,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직계존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 외국인 직계존속 - 내국인 직계존속이라도 요양시설(주민등록법 제12조 따라 주민등록을 요하는 요양시설을 말함) 및 해외에 체류 중(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인 경우 ※ 2019.11.01. 개정·시행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에 따라 부양가족을 산정 시에는 제53조제6호를 적용하지 않으므로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3) 주택공급신청자의 **30세 이상인 직계비속**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 미혼자녀(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의 손자녀 및 주택공급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재혼배우자의 미혼자녀 포함)에 한함. 4) 결혼 후 이혼한 자녀는 "미혼인 자녀"로 보지 않으며, 아래의 경우처럼 해외 체류 중인 직계비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 (30세 미만)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 (30세 이상)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을 산정한다.
④주택소유여부 및 무주택기간 산정기준	①무주택기간 적용기준 및 ②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에 따라 주택소유 여부를 판정하거나 무주택기간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제23조제4항 및 제53조에 따른다.

■ 청약 가점제 산정기준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의 2 나목

<table>
<tr><th>가점항목</th><th>가점상한</th><th>가점구분</th><th>점수</th><th>가점구분</th><th>점수</th><th>확인할 서류 등</th></tr>
<tr><td rowspan="10">①무주택기간</td><td rowspan="10">32</td><td>만30세 미만 미혼자 또는 유주택자</td><td>0</td><td>8년 이상 ~ 9년 미만</td><td>18</td><td rowspan="10">■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 분리세대 시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등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 만30세 이전에 결혼한 경우 혼인신고일 확인</td></tr>
<tr><td>1년 미만</td><td>2</td><td>9년 이상 ~ 10년 미만</td><td>20</td></tr>
<tr><td>1년 이상 ~ 2년 미만</td><td>4</td><td>10년 이상 ~ 11년 미만</td><td>22</td></tr>
<tr><td>2년 이상 ~ 3년 미만</td><td>6</td><td>11년 이상 ~ 12년 미만</td><td>24</td></tr>
<tr><td>3년 이상 ~ 4년 미만</td><td>8</td><td>12년 이상 ~ 13년 미만</td><td>26</td></tr>
<tr><td>4년 이상 ~ 5년 미만</td><td>10</td><td>13년 이상 ~ 14년 미만</td><td>28</td></tr>
<tr><td>5년 이상 ~ 6년 미만</td><td>12</td><td>14년 이상 ~ 15년 미만</td><td>30</td></tr>
<tr><td>6년 이상 ~ 7년 미만</td><td>14</td><td>15년 이상</td><td>32</td></tr>
<tr><td>7년 이상 ~ 8년 미만</td><td>16</td><td></td><td></td></tr>
<tr><td rowspan="4">②부양가족수</td><td rowspan="4">35</td><td>0명</td><td>5</td><td>4명</td><td>25</td><td rowspan="4">■ 주민등록표등·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 청약신청자 본인은 부양가족수에서 제외
■ 만18세 이상 성년자녀 부양가족인정 신청 시 추가확인서류
(1) 만18세 이상 ~ 만30세 미만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2) 만30세 이상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td></tr>
<tr><td>1명</td><td>10</td><td>5명</td><td>30</td></tr>
<tr><td>2명</td><td>15</td><td>6명 이상</td><td>35</td></tr>
<tr><td>3명</td><td>20</td><td></td><td></td></tr>
<tr><td rowspan="10">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td><td rowspan="10">17</td><td>6개월 미만</td><td>1</td><td>8년 이상 ~ 9년 미만</td><td>10</td><td rowspan="10">■ 청약통장
(인터넷 청약 시에 자동 계산됨)</td></tr>
<tr><td>6개월 이상 ~ 1년 미만</td><td>2</td><td>9년 이상 ~ 10년 미만</td><td>11</td></tr>
<tr><td>1년 이상 ~ 2년 미만</td><td>3</td><td>10년 이상 ~ 11년 미만</td><td>12</td></tr>
<tr><td>2년 이상 ~ 3년 미만</td><td>4</td><td>11년 이상 ~ 12년 미만</td><td>13</td></tr>
<tr><td>3년 이상 ~ 4년 미만</td><td>5</td><td>12년 이상 ~ 13년 미만</td><td>14</td></tr>
<tr><td>4년 이상 ~ 5년 미만</td><td>6</td><td>13년 이상 ~ 14년 미만</td><td>15</td></tr>
<tr><td>5년 이상 ~ 6년 미만</td><td>7</td><td>14년 이상 ~ 15년 미만</td><td>16</td></tr>
<tr><td>6년 이상 ~ 7년 미만</td><td>8</td><td>15년 이상</td><td>17</td></tr>
<tr><td>7년 이상 ~ 8년 미만</td><td>9</td><td></td><td></td></tr>
<tr><td colspan="7">※ 본인 청약가점 점수 = ① + ② + ③</td></tr>
</table>

※ 제28조제6항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과거 2년 이내에 가점제를 적용받아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제1순위에서 가점제의 적용 대상자에서 제외되며, 추첨제의 적용 대상자에 포함된다.

- 청약 신청 시 유의사항 및 당첨자 선정방법

· 선순위 청약접수결과 일반공급 세대수를 초과하더라도 예비입주자 선정비율(일반공급 세대수의 40%)에 미달할 경우 차순위 접수를 받을 수 있으므로 청약 신청 전 청약경쟁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분양일정(당첨자발표일 기준)이 동일한 2개 이상의 주택에 대해서는 중복신청이 불가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시는 청약 모두 무효 처리합니다.
· 주택소유로 보지 않는 경우 등 주택소유관련 유의사항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3조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공급 신청서의 단말기「(전산)인자란」의 인자된 내용과 주택공급신청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고, 동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당일 내로 공급신청서를 접수한 영업점에 정정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기 청약자격 전산 수록된 자 중 주민등록사항(거주지역, 세대주기간, 부양가족 등) 등의 청약자격이 변동된 자는 청약 신청일 이전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전산수록 사항을 변경한 후 신청하여야 하며, 사전에 변경 요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청약 신청 시 은행에서는 청약자의 청약자격에 대한 확인(검증) 없이 주택공급신청서에 기재한 내용으로만 청약접수를 받으므로 청약자는 본인의 청약자격(거주지역, 거주개시일,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주택소유여부 등)을 신청 전 확인하여 청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청약 신청은 청약자 본인의 책임 하에 이루어지므로 청약자격 착오 기재 등으로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체결이 불가하거나, 계약이 취소될 경우 당사 및 접수은행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 입주자 선정 방법 및 동·호수 결정

구 분	선 정 방 법
특별공급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 **한국부동산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생애최초, 다자녀특별공급, 신혼부부특별공급, 노부모부양특별공급, 기관추천특별공급 당첨자 선정방법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 · 호수 추첨은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로 동·호수를 결정합니다.** • 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의 입주자는 다른 공급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 시 특별공급 접수종류 구분없이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주택형별 공급세대의 40%까지 추첨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주택형별 전체 신청자수가 특별공급 세대수의 14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 • 특별공급 신청자가 없거나, 예비입주자 물량에 미달된 경우,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일반공급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 **한국부동산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각 순위별로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이 1순위는 전용면적대별 가점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2순위는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호수 추첨은 특별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로 동·호수를 결정합니다.** • 전용면적대별 가점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은 다음과 같으며, 85㎡이하 1순위 청약자는 해당 순위에서 가점제(가점점수가 높은 순)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가점제 낙첨자에 한해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해당 거주지역 추첨제 대상으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재선정합니다. - **전용면적 85㎡ 이하 : 일반공급 세대수의 40%를 가점제로, 나머지 60%는 경쟁이 있을 경우 추첨제 우선공급* 적용** - **전용면적 85㎡ 초과 : 일반공급 세대수의 100%를 추첨제로 공급하되, 경쟁이 있을 경우 추첨제 우선공급* 적용** *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수도권, 광역시**) 민영주택 추첨제 공급 시 무주택자 우선공급 :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주택수보다 추첨 대상자가 많은 경우, 다음 순서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 1.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되는 주택수의 75% : 무주택세대구성원 2. 나머지 25%의 주택(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 포함) : 무주택세대구성원과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기존 소유주택 처분조건을 승낙한 자로 한정)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공급한 후 남은 주택 : 1순위에 해당하는 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 • 동일순위 신청자(가점제 및 추첨제 대상 모두 포함) 중 경쟁이 있을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단양군 거주신청자가 충청북도 거주신청자보다 우선합니다. • 입주자 선정 시 선순위 신청자(가점제 및 추첨제 대상 모두 포함)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140%를 초과할 경우 차순위 접수분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2019.12.06.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6조에 의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는 청약신청자가 예비입주자 선정 총수에 미달되어도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합니다.** • **예비입주자 선정 시 주택형별로 일반공급 세대수의 40%를 아래와 같이 선정합니다.** - **1순위 : 일반공급 세대수의 40%까지 지역우선공급을 적용(대규모택지개발지구인 경우 지역구분 없음)하여 가점이 높은 자를 앞 순번으로 선정** *** 가점제가 적용되지 않는 주택인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 - **2순위 : 1순위에서 미달된 예비공급세대수 만큼 지역우선공급을 적용(대규모택지개발지구인 경우 지역구분 없음)하여 추첨으로 선정** • 미계약 또는 계약해제 발생 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합니다. (동·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예비입주자 명단 및 순번은 당첨자명단 발표 시 함께 발표됨)
유의사항	• **2018.05.04.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19조, 제50조에 따라 특별공급도 인터넷청약(한국부동산원 청약Home)을 원칙으로 하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는 견본주택 방문접수가 가능합니다.** • **인터넷 청약(한국부동산원 청약Home)의 경우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당첨자 공급계약 체결 전 사업주체로 제출하시기 바라며, 견본주택 방문접수 시에는 공급별 구비서류를 지참하여야 합니다.** • **특별공급 방문접수는 견본주택에서만 가능하며 은행창구에서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경우 특별공급 당첨자의 세대원이 일반공급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4조, 제58조에 따라 특별공급 당첨은 인정되나, 일반공급으로 당첨된 주택은 당첨이 취소(재당첨제한 적용)되고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되어 당첨자발표일부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므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 신청자가 일반공급에도 중복 청약이 가능하나 특별공급에 당첨된 경우 일반청약은 무효로 처리(특별공급에 예비입주자로 당첨된 경우에도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선정에서 제외)하고, 특별공급 신청자가 타 유형의 특별공급에 중복 청약 시 둘 다 무효처리 됩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일반공급의 당첨자로 선정되신 분이 이전기관종사자 등 특별공급(규칙 제47조) 예비입주자로 중복하여 선정된 경우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의 입주자 선정기회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 특별공급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소유여부의 판단에 있어 공급신청 당시 입력 값(자료)으로 우선 입주자선정을 하고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결과에 따른 세대주 및 세대원의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분양일정상 계약일 이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에는 아파트 당첨 및 계약이 임의 해지될 수 있으며, 계약금 납입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급이자 없이 원금만 환불하며, 당첨취소세대는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특별공급 대상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해당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7조제8항에 따라 부적격통보를 받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상의 기간에 소명하지 못할 경우 당첨 취소 및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된 경우 **당첨자발표일부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 '20.02.28. 시행한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1590(청약과열지역 등 예비입주자 선정비율 확대 요청)호에 따라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하는 주택은 500%, 청약과열지역·수도권(인천, 경기)·지방 광역시(부산,대구,대전,광주,울산)에서 공급하는 주택은 300%의 예비입주자를 선정

V 당첨자 발표

■ 일정 및 계약장소

구 분	신청대상자	당첨자 및 동·호수/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계약체결
특별공급	일반(기관추천),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 일시 : 2020.12.30.(수) • 확인방법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www.applyhome.co.kr) 또는 스마트폰앱에서 개별조회 *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조회 가능	• 일시 - 2021.01.11.(월)~2021.01.13.(수) (10:00~16:00) • 장소 - 당사 견본주택 (충청북도 단양군 단양읍 별곡리 15)
일반공급	1순위		
	2순위		

※ 당첨자 명단은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셔야 하며 당첨자 및 동·호수 확인 시에는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조회 가능함을 알려드리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고령자 및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으로서 인터넷 청약이 불가하여 견본주택(특별공급) 또는 은행창구(일반공급) 등에 방문하여 청약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정보입력(주택명, 주택형, 성명, 생년월일 입력) 조회가 가능하나 정보 오입력 등의 경우 부정확한 내역이 조회될 수 있으므로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으신 분은 반드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정확한 당첨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청약신청 건에 대해서는 '정보입력'에 의한 당첨내역 조회가 불가(당첨여부에 관계없이 '당첨내역이 없음'으로 표기됨)하오니 반드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시어 당첨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 및 동·호수, 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시 개별서면 통지는 하지 않습니다. (전화문의는 착오 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자(정당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
※ 당첨자 명단은 상기 장소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개별서면 통지는 하지 않습니다.(전화문의는 착오 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휴대폰 문자 당첨자발표 서비스 이용 안내

구분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全 은행 청약자)
이용기간		2020.12.30 (수) ~ 2021.01.08 (금) (10일간)
인터넷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접속 → **청약조회 → 당첨조회(최근10일)** **- 스마트폰앱 접속 → 당첨조회 → 당첨조회(10일간)** ※ 당첨조회(10일) 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마이페이지>청약제한사항확인을 통해 당첨에 따른 각종 제한 사항은 연중 확인 가능
휴대폰 문자서비스	대상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신청시 휴대폰번호를 등록하신 분 중 당첨(예비)자**
	제공일시	2020.12.30 (수) 08:00 (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휴대폰 문자서비스는 청약신청자의 편의도모를 위한 부가서비스로서 정확한 당첨여부는 상기 발표일에 청약홈>청약당첨조회 당첨자 발표장소 등에서 본인이 반드시 재확인하셔야 합니다.

VI 계약 체결

■ 계약체결 일정 및 장소

계약기간	장 소	문의전화	비고
2021.01.11.(월) ~ 2021.01.13.(수) (3일간, 10:00~16:00)	당사 견본주택 (충청북도 단양군 단양읍 별곡리 15번지)	1811-1028	일정 및 시간의 변동 시 별도 공지

※ 계약금 납부 : 분양대금 납부계좌 입금 후 입금증 견본주택 제출[견본주택에서 계약금(현금) 수납 불가]

■ 계약시 구비사항

구 분	서류유형		해당 서류	발급 기준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공통 (특별공급 포함)	○		자격검증서류	-	당첨유형별 입주대상자 자격검증서류 일체(입주대상자 자격검증서류 제출 기한 내 제출한 경우 제외)
		○	추가 개별통지 서류	-	기타 사업주체가 적격여부 확인을 위해 요구하는 서류(개별통지)
	○		신분증	본인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재외동포 : 국내거소신고증 및 국내거주 사실증명서 /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 및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본인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용도 : 주택공급계약용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서류제출 시 본인만 인정되며, 신청자 본인만 신청가능
	○		계약금 입금 영수증	-	계약금 무통장 입금 영수증
부적격 통보를 받은 자 (해당주택에 대한 소명자료)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해당 주택	또는 건축물관리대장(가옥대장등본 포함) - 전산검색 결과 주택소유로 판명 시 소명자료
		○	무허가건물확인서	해당 주택	또는 철거예정증명서 - 전산검색 결과 주택소유로 판명 시 소명자료
		○	소형저가주택임을 증명하는 서류	해당 주택	주택공시가격 증명원 등 - 전산검색 결과 주택소유로 판명 시 소명자료
		○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해당 주택	전산검색 결과 주택소유로 판명 시 소명자료
		○	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	-	해당기관의 당첨사실 무효확인서 등(한국부동산원 발급)
대리인 계약시 추가사항 (* 본인외 모두)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청약자	※ 본인 외 모두 제3자로 간주함 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대리 신청 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불가), '본인 발급분'에 한함 단, 외국인인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위임장	청약자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당사 견본주택에 비치
	○		대리인 신분증, 인장	대리인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재외동포 : 국내거소신고증 및 국내거주 사실증명서 /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 및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 상기 제 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 발급 시 용도를 기재하지 않고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람(단,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 시 외국인은 공급신청 시와 동일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주민등록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간 산정,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 받으시기 바람(아래 참조)

① 주민등록등본 발급 시 기재(포함)되어야 할 내용 : 세대 구성사유, 현 세대원의 세대주와의 관계, 현 세대원의 전입일/변동일/변동사유, 교부대상자 외에 다른 세대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② 주민등록초본 발급 시 기재(포함)되어야 할 내용 : 개인 인적사항 변경내용, 과거의 주소변동사항(전체 포함), 과거의 주소변동사항 중 세대주의 성명과 세대주와의 관계

• **계약체결 조건 및 유의사항**

- 부적격 당첨자로 통보된 자는 계약체결이 불가하며, 부적격 당첨 소명기간 내(당사가 소명요청을 통보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소명을 할 경우에 한하여 계약 체결이 가능함.
- 이중당첨자 및 부적격 당첨자에 처리 및 계약취소에 관한 사항(「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1조 제3항 제24호)

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2조에 따라 당첨자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및 계약신청 시 제출서류 확인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로 판정된 자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즉시 통보하며, 통보한 날로부터 7일 내에 '주택소유여부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을 참고하시어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또한 정당한 사유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함

② 계약체결 후에라도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입주자선정대상에서 제외되고, 공급계약을 취소합니다.(단, 부적격 당첨자 중 부적격 당첨사유가 고의성 없는 단순 착오기재가 사실임을 증명하는 경우 청약통장 재사용이 가능하나, 본 주택의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을 제한함)

1) 1순위 당첨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의 소유여부가 신청한 사실과 다른 경우

2) 특별공급 당첨자 중 과거 다른 주택에 특별공급 자격으로 당첨된 사실이 있는 경우

- 주택당첨자는 계약체결 후라도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될 경우 당첨권의 박탈과 함께 공급계약은 취소됨(단, 부적격 당첨자 중 부적격 당첨 사유가 고의성 없는 단순 착오기재 사실임을 소명하여 인정되는 경우, 청약통장 재사용이 가능하나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일정기간이 지난 후 분양 전환되는 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을 제한함)

① 청약가점항목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주택소유현황 등) 기재내역을 허위 또는 착오 기재하여 부적격자로 판명된 경우

② 특별공급 당첨자 중 과거 다른 주택에 특별공급 자격으로 당첨된 사실이 있는 경우

③ 가점점수 및 청약자격 확인을 위하여 사업주체가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 부적격자는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없이 일정기간(7일)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당첨된 주택은 예비당첨자에게 공급함.
- 상기 기준에 의거 주택소유여부 및 과거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당첨사실 유무 판단 시 당첨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전원 포함) 및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원 전원의 주택소유 및 당첨사실을 포함하며 특별공급 및 1순위자(분리세대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는 국토교통부에 무주택여부를 검색하여 부정당첨자를 판명함.
-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 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본 주택의 당첨을 취소함.(각각 동일한 청약관련예금으로 청약신청하여 당첨된 경우에 한함)
- 신청 시 제출한 서류가 사실이 아님이 판명될 경우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체결된 계약은 취소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당첨자로 관리하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자에게 귀속함.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당첨 취소 및 고발조치함
- 주민등록법령 위반 및 청약관련예금 등을 타인명의로 가입하거나 가입한 자의 청약예금 등을 사실상 양도받아 공급신청 및 계약시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계약은 취소함
- 지정 계약기간 내 계약금 또는 일부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 미체결 시에는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
- 입주지정일 이후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에 대해서는 입주 및 잔금완납이나 소유권 이전 유무 관계없이 계약자가 부담함. 또한, 계약자가 불이행으로 인해 사업주체가 입은 손해는 계약자가 배상함.
- 본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계약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당첨자로 전산 관리함.
- 단지 내 명칭 및 동·호수는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에는 입주 전 별도 통보할 예정이며 변경 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함.
- 본 아파트의 구조개선 등을 위하여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음.
- 아파트 및 상가의 대지면적이 차후 분할로 인하여 면적이 변동될 수 있음(단, 세대당 소수점 첫째자리 이하 면적 변경에 대해서는 차후 정산금액 없음)
- 주변단지의 신축으로 인한 건축사항과 아파트 배치, 구조 및 동·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진동 (주변도로의 비산분진, 소음문제 등을 포함한다) 등으로 환경권 및 사생활 등이 침해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청약신청 및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견본주택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문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의 용량, 탑승위치 등)등은 준공도서의 내용에 준하여 시공될 예정이며, 이로 인해 시행 또는 시공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분양권 전매 요청시 당해주택의 사업주체 및 대출취급기관은 양수자의 신용등급 등의 제반조건을 확인하기 위하여 추가증빙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며, 대출취급기관 또는 사업주체의 판단에 따라 양수자가 신용등급 등의 제반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분양권 전매가 제한될 수 있음.
- 계약관리(안내, 고지 등)를 위해 계약체결 시 2011년 07월 29일부터 새로운 법정주소인 도로명 주소(행정안전부 안내 참고)를 사용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계약시 도로명 주소가 명기된 제 증명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종전 지번 기준주소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2017.01.20.부터 시행됨에 따라, 아파트 분양계약 역시 신고대상에 포함됨. 따라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시군구청에 신고하여야 하며, 거래 당사자인 사업주체 및 계약자가 공동의 신고를 요하므로, 신고의 편의를 위하여 계약 체결 시 사업주체에 신고를 위임하여 업무를 진행하여야 함.
- 부동산거래로 인해 발생하는 인지세 등 제세공과금은 계약자의 부담으로 납부하여야 함.
- 기타 계약조건은 공급계약서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준용함.

• 주택소유에 의한 유의사항
- 건물의 용도는 공부상 표시된 용도를 기준으로 함.
- 주택매매 등 처분사실은 건물등기부등본상 등기접수일(미등기주택은 건축물관리대장등본상 처리일) 기준임.
- 주택은 전국에 소재하는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세대주・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및 세대원 전원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포함됨.
- 주택 공유지분 소유자 및 주택의 용도가 있는 복합건물 소유자도 주택소유자에 해당됨.
- 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 지분 소유자 전원이 주택소유자로 인정됨.
-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판명내용이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소명요청을 통보한 날로부터 7일)내에 '주택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을 참고하시어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동 기한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함.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 검색대상 :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세대원 전원
- 주택의 범위 : 건물등기사항 증명서,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와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분양권등
- 주택처분 기준일(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처리일

2의2. 분양권등에 관한 계약서:「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

2의3. 제2조제7호다목에 따른 분양권등의 매매계약서
가. 분양권등의 매매 후「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신고된 경우에는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
나. 분양권등을 증여나 그 밖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상 명의변경일
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봄

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6.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신청자 제외)
- 가점제의 부양가족 인정 여부 판단시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에서 제외함.
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8. 무허가건물[종전의「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9. 소형·저가주택등을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사람으로서 제28조에 따라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는 경우
10. 제27조제5항 및 제28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한다)

• 분양대금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구 분	은 행	계좌번호	예금주
분양금액	농협은행	317-0021-6469-71	㈜한국토지신탁

※ 상기 계좌는 분양대금 관리계좌(모계좌)로 최초 분양계약 체결 시 납부하는 계약금은 지정된 계약기간에 상기 계좌로 납부하여야 함
※ 이후 분양대금은 계약자별로 개별적으로 부여되는 가상계좌로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해당 가상계좌는 계약체결 시 세대별 계약서에 명기하여 고지할 예정임(개별 가상계좌에 입금한 금액은 은행 전산망에 의하여 상기 계좌로 이전 후 관리됨)
※ 상기 관리계좌 및 가상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분양대금은 인정치 않으며 또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받을 수 없음.
※ 분양대금은 약정된 계약금, 중도금, 잔금 납부일에 지정된 계좌로 무통장 입금(입금 시 비고란에 동·호수 또는 계약자 성명 필히 기재)하시기 바라며, 당사에서는 별도의 통지를 하지 않음.
※ 무통장 입금 시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람(단, 무통장 입금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소명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이자는 없음)
※ 계약체결 시 무통장 입금증 지참 요망.(무통장 입금증은 분양대금 납부 영수증으로 갈음되며, 별도의 영수증은 발행되지 않으므로 필히 보관하시기 바람)
※ 착오납입에 따른 문제 발생 시 당사는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계약자 중도금 대출안내

- 본 주택의 중도금 대출 시 무이자 조건으로 융자 알선을 시행할 예정이며, 대출관련 세부내용은 별도 공지 및 안내 예정입니다.
- 대출관련 세부내용은 당사 견본주택에서 별도 공지 및 안내 예정이며 사업주체가 알선하는 금융기관을 통한 대출신청 여부는 계약자의 선택사항임.
- 계약자는 사업주체가 지정한 금융기관을 통해 대출가능하나, 정부의 관련정책, 금융기관의 대출취급방침, 대출상품의 종류, 개인의 사정 등으로 대출 한도가 개인별로 상이하거나, 대출이 불가할 수도 있으므로 지정 금융기관에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에 따른 대출 불가 및 한도축소 등의 사유로 인해 개인적인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으며 이와 관련된 책임을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부담하지 않고, 계약자 자기책임하에 분양대금을 조달하여 기일 내 납부하여야 함.
- 사업주체가 알선한 금융기관 및 대출취급상품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대출은행과 대출협약에 따라 공급대금의 10% 이상 납부 이후 대출이 가능하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람.

- 계약자는 법률의 변경 및 정부의 부동산 정책(주택 담보대출 제한, 보증서 발급제한 등) 등에 따라 대출조건 등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이러한 제한에도 불구하고 분양대금을 본인 책임하에 조달하여 기일내에 납부하여야 함. 특히 청약 접수전 본인의 신용상태 및 대출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한 후 청약 및 계약하시기 바람
- 정부정책, 금융기관, 사업주체의 사정 등으로 대출관련 제반사항(대출취급기관, 조건, 대출취급상품 등)이 변경되더라도 사업주체에 책임을 물을 수 없음.
- 대출에 필요한 중도금보증수수료, 인지대 등 제반 경비는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금융신용불량거래자 등 계약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 대출이 불가하거나 대출한도가 부족할 경우 계약자는 분양대금 납부조건에 따라 중도금을 현금으로 직접 납부(이 경우 사업주체는 분양대금 납부일정을 별도로 통보할 의무가 없으며 미납 시 연체료 가산됨)하여야 하며, 대출 불가 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를 주장할 수 없음.
- 중도금보증서의 발급가능 여부에 따라 대출알선조건이 변경 또는 대출이 불가 할 수 있음.
- 대출보증요건 강화에 따라 대출 보증건수 및 보증한도 등이 제한될 수 있음.
- 정부 및 금융기관의 정책에 의해 입주시점의 담보대출에 대한 대출심사 강화, 원리금 상환조건 등 규제가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사업주체는 책임을 지지 않음.
- 당사는 대출기관과 협약 후 계약자에게 제시한 조건으로 대출을 신청한 계약자에게만 대출을 알선하며, 계약자가 당사의 대출알선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변경을 요구할 경우 대출을 알선하지 않으며, 계약자는 분양대금을 자기 책임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함.
- 중도금 대출 신청은 계약진행에 따라 모집공고에 기재된 날짜보다 다소 지연될 수 있으므로 이를 이유로 사업주체에 분양계약해지 요구, 중도금 대출 신청 거부, 발코니확장비 및 추가 선택 품목 대금 납부 거부 등 민원을 제기할 수 없음.
- 중도금 대출 신청 및 기표 일정이 공급대금의 각 납부회차 이후일지라도 이전 회차의 공급대금까지 함께 기표하여야 함.
- 대출은행과의 대출협약 등에 의거하여 대출금융기관에 대출을 위한 계약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함.(정보제공 미동의에 따른 대출 불가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체는 이에 책임지지 않음)
- 대출알선과 관련하여 당사 및 금융기관에서 제시한 서류의 미제출시 당사는 대출을 알선 하지 않음.
- 당사가 알선한 대출의 대출기간 만료 시(준공 후 미입주 등) 금융기관의 대출기간 연장 및 공정률에 따른 중도금 납입일자의 변경에 대해 별도의 절차 없이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함.
- 대출신청 관련 안내는 당사 의무사항이 아니며 "개인사유로 인해 대출 미신청" 또는 "금융거래 신용불량자 등" 계약자의 사정에 의한 대출불가 등으로 발생하는 개인적인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음.
- 대출기간 이내라도 계약자의 금융 신용불량 등 결격사유 등이 발생할 경우 대출 금융기관의 대출중단 등 요구에 따라 계약해지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마이너스 옵션 선택 시 분양금액 조정에 따른 대출 알선이 불가하며, 계약자가 직접 분양대금을 납부하여야 함

• **입주자 사전방문확인 제도 실시**
- 도장공사, 도배공사, 가구공사, 타일공사, 주방용구 공사 및 위생기구공사의 상태를 확인
- 입주자 사전방문은 입주개시일 약 1개월 전에 방문일자를 통보하여 사전점검토록 할 예정임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보상은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 제37조, 제38조에 따라 적용됨

• **입주예정일 : 2023년 6월경 (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과 잔금을 실입주지정일에 함께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음
- 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공사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견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지연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부대복리시설**
- 관리사무실(M.D.F실, 방재실 포함), 경로당, 피트니스, GX룸, 락커샤워실, 실내골프, 주민카페, 지하주차장, 전기실, 발전기실, 기계실(펌프실), 경비실 등
- 각 부대복리시설의 종류 및 개수는 관리사무소로 방문하여 확인하여 주시고, 향후 시공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 **하자보수는「공동주택관리법」제36조[하자담보책임]에 따라 적용됨**

Ⅶ 발코니 확장 및 추가 선택 품목

• 발코니 확장금액

[단위 : 원, VAT 포함]

주택형	확장부위	확장금액			계약금	잔금
		공급금액	부가세(VAT)	계	계약체결시	입주지정일
84A	**거실, 침실1, 침실2, 침실3, 알파룸, 주방**	**13,487,000**	**1,348,700**	**14,835,700**	**1,483,570**	**13,352,130**
84B	**거실, 침실1, 침실2, 침실3, 주방**	**13,667,000**	**1,366,700**	**15,033,700**	**1,503,370**	**13,530,330**

• 발코니 확장 공사비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구 분	은 행	계좌번호	예금주
분양금액	**농협은행**	**317-0021-6469-71**	**㈜한국토지신탁**

• 발코니 확장시공에 대한 유의사항

- 다음의 유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하고 숙지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발코니 확장공사는 위치별 선택할 수 없음.(예를들어, 발코니 확장 선택시 침실1, 침실2만 확장 불가능함 확장부위 전체 확장만 가능)
- 건축법시행령 제2조 제14호, 제46조 제4항, 제5항의 규정에 의해 공동주택의 발코니는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기준 내에서 구조 변경할 수 있으며, 발코니 구조 변경은 입주자모집공고시 공개된 금액의 총액 범위 내에서 시공사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별도계약을 체결 할 수 있음.
- 발코니 확장공사는 세대간 조건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세대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고, 확장된 발코니 일부 벽체는 단열을 위하여 분양안내서 등의 그림보다 다소 두꺼워질 수 있고 일부 벽체의 돌출이 발생할 수 있으며 실내 습도 등 생활 습관에 따라 발코니 샤시 및 유리, 기타 확장 부위에 결로 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니 입주자께서 환기 등으로 예방하셔야 하며 이로 인한 하자보수등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발코니 확장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등 또는 동급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발코니확장공사 및 마감자재의 내용 등은 주택형별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주택형별 확장위치 등 세부사항은 반드시 견본주택을 방문하시어 확인하시기 바람.
- 각 주택형별 단위세대 구조에 따라 발코니면적 및 확장면적에 차이가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여야 하며,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발코니 외부 전면창 설치 및 발코니 확장에 따른 냉난방 비용의 상승이 있을 수 있으며, 확장부위는 결로현상 등이 생길 수 있고, 직접 외기에 면해 상대적인 추위를 느낄 수있음.
- 확장되지 아니한 발코니는 단열공간이 아니므로 단열재 시공이 되지 않음.
- 각 세대의 발코니에 필요 시 선홈통 및 드레인이 설치될 수 있으며 위치 및 개수는 추가되거나 감소될 수 있고 드레인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는 물을 사용하지 않는 공간으로 계획됨.
- 발코니 개별확장 세대의 개별 입주자가 개별 시공함으로서 입주후 소음, 진동, 분진 등을 초래하여 타 입주자에게 불만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른 법적 책임은 사업주체와 무관하며 또한 입주후 상당기간 관리비 등이 과다하게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바람
- 상기 공급금액에는 발코니확장 비용이 미포함 되어 있으며, 발코니 확장 선택시, 발코니 확장공사 계약을 별도로 체결하여야 하고, 관련 법령 등에 따라 부가가치세 신고 등 관련 제세공과금 신고를 해야함.
- 발코니 비확장 선택 세대는 사업주체가 알선하는 중도금 대출이자 대납을 받을 수 없으며, 추가 선택품목(옵션) 선택이 불가능함
- 견본주택 세대 내 시설은 확장공사 기준으로 설치되어 있음.
- 세부사항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람.

▣ 유상옵션

- 추가선택품목 계약은 공동주택 공급계약과 별개이며 판매일정은 추후 수분양자에게 별도로 공지하고 계약 진행합니다.
- 추가 선택품목 판매가는 공동주택 공급금액과 별도이며,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추가선택품목의 판매일정, 계약내용, 납부일정(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 납부계좌 및 제품에 관한 사항 등은 주택전시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천정형 시스템에어컨

[단위 : 원, VAT 포함]

주택형	구분	설치위치	제조사	실내기 설치대수	공급금액	비고
84A	ALT-1	거실(주방)+침실1(안방)	LG	2	**3,500,000**	
	ALT-2	거실(주방)+침실1(안방)+침실2+침실3		4	**6,100,000**	
	ALT-3	거실(주방)+침실1(안방)+침실2+침실3+알파룸		5	**7,100,000**	
84B	ALT-1	거실(주방)+침실1(안방)	LG	2	**3,500,000**	
	ALT-2	거실(주방)+침실1(안방)+침실2+침실3		4	**6,100,000**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옵션은 LG전자 제품만 선택 가능합니다.
▶ 시스템 에어컨 판매가격은 냉매배관 및 콘센트 설치비용을 차감한 금액이며, 선택시 침실1(벽걸이형), 거실(스탠드형)에 기존 냉매배관은 설치되지 않습니다.
▶ 시스템 에어컨 미선택시 일반 에어컨 냉매배관 및 콘센트는 침실1(벽걸이형), 거실(스탠드형)만 기본으로 설치됩니다.
▶ 시스템 에어컨 선택시 에어컨 배관으로 인한 환기 디퓨저 위치, 스프링클러 위치, 천장 배관 위치 등이 이동(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시스템 에어컨 선택시 설치되는 실외기에 벽걸이형, 스탠드형 에어컨을 연결하여 가동할 수 없습니다.
▶ 시스템 에어컨 선택시 설치부위의 우물천장 크기가 변경될 수 있고, 실외기공간 및 발코니에 응축수 드레인 및 냉매배관 또는 배관용 슬리브가 노출 시공될 수 있습니다.
▶ 시스템 에어컨은 냉방전용 제품으로 난방운전이 불가하며, 운전 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시스템 에어컨 컨트롤러는 무선리모콘으로 제공되며, 추후 유선 컨트롤러 미설치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시스템 에어컨 위치는 등기구 위치를 고려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시스템 에어컨 선택시 실내기의 설치 위치는 해당 실내에서 다소 조정될 수 있으며, 기능상 장애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및 기타 세대내 조건에 따라 설치 위치의 조정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시스템 에어컨 설치 위치는 계약자가 임의로 지정을 할 수 없으며, 계약 전 위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시스템 에어컨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 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시스템 에어컨 옵션 선택시, 기 선정된 시스템 에어컨 제조사 및 모델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빌트인 가전

[단위 : 원, VAT 포함]

품목	주택형	제조사	모델명	공급금액	비고	
빌트인 냉장고	전주택형	LG전자	CLADING BIS냉장고 홈바형 (S711S124B)	**5,700,000**	옵션 미선택시 일반 냉장고 수납장 제공	택1
			CLADING BIS냉장고 디스펜서형 (S691SI34BS2)	**7,600,000**		
빌트인 김치냉장고	84A	LG전자	김치냉장고 (K221PR14BL/R1)	**1,200,000**	옵션 미선택시 키큰장 제공	
빌트인 김치냉장고+ 주방팬트리장	84B	LG전자	김치냉장고 (K221PR14BL/R1)+인출형 수납장 (W400)	**1,800,000**	옵션 미선택시 일반 김치냉장고 수납장 제공	
전기오븐	전주택형	LG전자	전기오븐 MZ385EBT (38ℓ)	**380,000**	옵션 미선택시 수납공간 제공	택1
			전기오븐 MZ941CLC (38ℓ)	**700,000**		
식기세척기	전주택형	LG전자	식기세척기 DUB22SB (12인용)	**1,160,000**	옵션 미선택시 수납공간 제공	택1
		SK매직	식기세척기 DWA-80U5B (12인용)	**980,000**		
하이브리드쿡탑	전주택형	SK매직	인덕션2구 + 가스1구 (GRA-BI320H)	**800,000**	차감: 기본제공_SK매직 : GRA-B320 가스(3구)	택1

		LG전자	인덕션2구 + 하이라이트 1구(BEY3GTBI)	**1,000,000**	추가: 전기관련 추가비 + 가스차단장치	
인덕션		LG전자	인덕션 3구 (BEI3GTBI)	**1,250,000**		
의류건조기	전주택형	LG전자	스타일러 S3HFB	**1,300,000**	옵션 미선택시 수납공간 제공	

▶ 빌트인 냉장고 공급단가 : 옵션 선택시 삭제되는 일반 냉장고 수납장(상부장 설치)과의 차인액 반영.
▶ 빌트인 김치냉장고 공급단가 : 84A형은 삭제되는 키큰장과의 차인액 반영, 84B형은 옵션 선택시 주방 팬트리장 포함 가격이며, 삭제되는 일반 김치냉장고 수납장(상부장 설치)과의 차인액 반영
▶ 빌트인 식기세척기는 옵션 선택시 삭제되는 수납공간(여닫이 도어설치)과의 차인액 반영
▶ 빌트인 전기오븐은 옵션 선택시 삭제되는 수납공간(여닫이 도어 설치)과의 차인액 반영
▶ 빌트인 하이브리드/인덕션 쿡탑 판매가 : 기존 3구 가스쿡탑 공사비 차감함.
▶ 빌트인 냉장고는 별도의 가구패널 마감이 설치되지 않음.
▶ 의류건조기 옵션 선택시 시스템 선반의 구성이 변경됩니다.
▶ 빌트인 가전은 제품의 단종, 변경, 성능향상 등 제조사의 사정으로 인해 동등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현관중문

[단위 : 원, VAT 포함]

품목	주택형	유리선택	마감사항	공급금액	비고
현관 중문	84A	브론즈 투명	3연동 슬라이딩 (금속프레임 /8.76T)	**1,600,000**	댐핑 포함가격
	84B	브론즈 투명	3연동 슬라이딩 (금속프레임 /8.76T)	**1,600,000**	댐핑 포함가격

▶현관중문은 시공상 중문틀 또는 벽패널과 다소 이격이 생길수 있으며, 이로 인해 소음, 먼지, 외풍 유입이 발생할 수 있음.
▶현관중문은 본 공사시 동등이상의 제품으로 사양 및 디자인이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현관중문 옵션 미선택시 벽패널 및 천장지로 마감됨.
▶현관중문 옵션 미선택시 천장몰딩, 가구, 디딤판, 벽패널, 건식벽의 위치 및 형태가 변경될 수 있음
▶현관중문 개폐방향은 해당세대에 단지배치에 따라 좌우가 변경 될 수 있음.

◎ 붙박이 가구류

[단위 : 원, VAT 포함]

품목	주택형	설치위치		공급금액	비고	
침실2 붙박이장	전주택형	침실2	침실2 붙박이장	**990,000**	경량벽 포함	
주방 인출 수납장	84A	주방	가구도어 + 대형 인출 수납 + 서랍 수납 (W1,200)	**830,000**	옵션 미선택시 일반 김치냉장고 수납장 제공 **알파룸 옵션형(수납강화형) 선택시 가능**	택1
			가구도어 + 대형 인출 수납 + 서랍 수납 (W1,000)	**800,000**	옵션 미선택시 일반 김치냉장고 수납장 제공 **알파룸 기본형(알파룸형) 선택시 가능**	
알파룸 옵션 (보조주방형)	84A	알파룸	현관창고+인키친[가구도어+가구+1구인덕션+렌지후드+벽타일+가구 상판(엔지니어드스톤)]	**3,300,000**	차감: 신발장 1면 + 목창호 일반도어	택1
알파룸 옵션 (수납강화형)			현관창고 + 팬트리(가구도어 + 시스템선반)	**1,300,000**	차감: 신발장 1면 + 목창호 일반도어	

▶ 침실2 붙박이장 옵션 선택시 가구설치부위의 노출되지 않는 가구 후면 및 측면, 천장, 바닥은 마감재 시공범위에서 제외됩니다.
▶ 침실2 붙박이장 옵션 선택시 가구설치를 위한 경량벽체 공사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 침실2 붙박이장 옵션 선택시 해당 침실 등기구 설치위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수납형태 및 내부구성은 해당세대 단지배치에 따라 좌우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침실2 붙박이장 옵션 선택시 가구 설치로 인한 공간협소로 인해 해당 침실의 스위치 및 온도조절기 설치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알파룸 옵션은 84A형만 옵션 선택 가능하며, 옵션 선택시의 신발장 1면 및 목창호 도어 차인액 반영
▶ 주방 인출 수납장 옵션은 주방가구 공간의 제약상 84A형만 옵션 선택가능하며, 옵션 선택시 삭제되는 김치냉장고 수납장(상부장 설치)과의 차인액 반영
▶ 주방 인출 수납장 옵션은 알파룸 옵션 선택형에 따라 제공되는 크기가 상이합니다.
▶ 주방 인출 수납장 옵션 미선택시 일반 김치냉장고의 개폐를 고려하여 수납공간 폭이 줄어듭니다

◎ 마감재 선택형 (엔지니어드 스톤)

[단위 : 원, VAT 포함]

품목	주택형	설치위치	공급금액	비고
엔지니어드 스톤	84A	주방가구 상판 + 주방벽 + 아일랜드 주방 상판	**1,300,000**	차감 : 기본제공_타일+인조대리석(MMA)
	84B	주방가구 상판 + 주방벽	**1,600,000**	

▶ 옵션 선택시 자재의 특성상 엔지니어드 스톤 상판 및 벽 마감은 분절 시공되며, 이음 부분이 노출되거나 상세가 변경될 수 있고 이음 위치가 주택전시관과 다르게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옵션 미선택시 주방가구 인조대리석 상판 및 벽타일로 마감되며, 옵션 선택시 공급단가에서 차감됩니다.
▶ 발코니 확장 선택시 설치되는 다용도실 손빨래용 보조주방가구는 마감재 옵션선택이 불가능하며, 인조대리석 상판으로 마감됩니다.

◎ 유상옵션 선택품목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 아래의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추가 선택품목 대금은 인정하지 않으며 아파트 분양대금 입금계좌와 혼동하지 않으시기 바람
• 계약금은 계약 당일 아래의 납부계좌로 납부하여야 함[단, 추후(계약전 등) 가상계좌(동호수마다 다름)를 안내할 경우 반드시 해당 가상계좌로 납부하여야 함
• 무통장 입금시에는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반드시 기재하시기 바람.
• 계약금 납부 : 계약시 아래 계좌 입금 후 입금증 주택전시관 제출[주택전시관에서 계약금(현금 또는 수표) 수납 불가/ 신용카드 결재 불가
• 통합옵션 선택품목의 계약내용 및 계약금(10%), 중도금(20%), 잔금(70%) 납부일정과 납부금액은 시공사가 적의 조정한 별매품에 준함.

구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유상옵션 선택품목 공사비 납부계좌	**우리은행**	**1005-004-073282**	대림건설 주식회사

※ 상기 입금계좌는 향후 세대별로 부여되는 가상계좌(계약시 별도 안내함)에서 상기계좌로 이체되어 관리되며, 세대별 계좌가 상이하므로 입금시 유의하시기 바람(타은행 계좌이체 및 무통장 입금 가능)
※ 회사에서는 납부기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음. (입금 계좌는 유상 옵션 하단에 표기)

◎ 유의사항

• 추가 선택품목 설치공사는 입주자모집공고시 공개된 금액의 총액 범위내에서 시공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별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 본 공고 외 추가 선택품목 설치에 관한 내용은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및 시행지침"에 따름
• 추가 선택품목 판매가는 아파트 공급금액과 별도이며,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음.
• 시공상의 문제로 일정시점 이후에는 추가 선택품목 공급계약이 불가하며, 중도금 납부이후 변경이나 해약은 불가함.
• 상기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설치시점에 이르러 제품의 품절, 품귀 또는 단종후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 동가 이상으로 변경 제공될 수 있으며, 기타 신청 형별 설치위치 등 세부사항은 주택전시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람.
• 상기 추가 선택품목에는 취득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입주 후 관할관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음.
• 상기 추가 선택품목의 설치 위치는 계약자가 임의로 위치 지정을 할 수 없음 (계약전 위치 확인 요망).
• 상기 추가 선택품목은 주택전시관에 설치된 세대에 전시(일부)되오니 확인하시기 바람.
• 상기 추가 선택품목은 설치공간 등의 제약으로 인하여 발코니 확장시에만 선택할 수 있음.

• 상기 추가 선택품목은 본 아파트 컨셉에 맞추어 디자인하고 설치되는 품목으로써 판매가 및 사양에 대해 교체 및 해약을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사 및 기타 시중품목과 비교 검토한 후에 선택하시고 계약체결 하시기 바람.
• 상기 추가 선택품목 상세내용은 본 공고문 표기와 설명에 한계가 있으므로 계약전 주택전시관에서 필히 확인하시고 설명 들으신 후 계약하시기 바람.

▣ 마이너스 옵션

•공통

- 「주택법」제54조 제1항 제2호 및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에 의거 사업주체가 제시하는 기본 마감재 수준(창호, 바닥재, 벽, 천장, 조명기구, 욕실기구, 주방가구 등)에서 계약자가 직접 일괄 신청시 해당품목의 가격을 제외한 금액으로 공급받을 수 있으며 마이너스 옵션 품목은 아래 제시된 마감재 품목과 금액 범위 내에서 사업주체가 정한 기준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단, 개별품목선택은 불가함)

- 본 주택은 국토교통부의 「동별배정 순서에 의한 기본선택품목제도 시행시 입주자 선정절차」중 당첨자선정 발표시 동·호까지 배정한 후 당첨자가 계약체결시 해당 동·호에 대하여 기본선택품목을 선택하여 계약 체결하는 방식을 채택하였음(기본선택품목 세대 동·호수 우선 배정하지 않음)

•마이너스 옵션 적용품목 및 범위

구분	품목	마이너스옵션 선택 시 시공되지 않는 품목	마이너스옵션 선택 시 기본제공품목
일괄선택 (개별선택불가)	문	목재문(문틀, 포켓도어 포함 문짝, 도어록 및 경첩 등 하드웨어 일체, 문선), PL창호(터닝도어 포함) 등	목재문 가틀(사춤 및 욕실문 하부씰 제외), 발코니 내부 PL창호(시트지 제외), 세대현관방화문 및 도어록, 소방관련 방화문
	바닥	바닥재(마루판, 현관바닥타일, 현관디딤판 등 일체),걸레받이, 발코니 바닥타일, 재료분리대, 실외기실 및 대피공간 바닥마감 등	바닥난방, 시멘트몰탈(난방배관 시공부위만 해당), 발코니/세탁실 바닥방수, 우수선홈
	벽	벽지, 장식벽(벽지, 타일, 래핑 및 벽패널류), 발코니벽 도장, 현관 전신경 및 패널마감(해당 주택형), 현관 창고장(도어 및 선반/ 해당 주택형), 드레스룸 장(도어 및 선반/ 해당 주택형),신발장, 현관수납장(해당 주택형), 화장대(상판 및 거울 포함), 붙박이장(해당 주택형), 발코니 선반류, 경량벽체 등	콘크리트 벽체 위 초배지 마감 또는 기타 부위 석고보드 마감
	천장	천장지(벽지류), 반자돌림(몰딩), 우물천장 인테리어 마감, 발코니 천장도장, 전동빨래건조대 등	천장면 석고보드, 커튼박스, 발코니 천장면처리
	조명기구	매입형 조명등기구(욕실), 화장대등	부착형 조명기구, 매입형 조명등기구(욕실제외) 배선기구류(MDF,타일등 마감 미처리부위 제외)
	욕실	천장재(천장틀 포함), 타일(바닥, 벽), 뒷선반, 위생기구(양변기, 세면기, 욕조, 수전, 샤워기 등),샤워부스, 코너선반, 욕실 악세서리, 욕실장, 바닥배수구 커버, 욕실환풍기,비상콜 및 비데(부부욕실) 등	액체방수 및 구체위 바탕처리, 설비배관, 전기배관/배선, 배기덕트
	주방	주방가구 및 기구(상판 및 악세서리 포함), 벽타일, 설비수전류, 렌지후드, 가스쿡탑, 음식물 탈수기, 각종 빌트인 가전류, 주방액정TV 등	설비배관, 주방배기덕트
	일반가구 및 기타사항	현관신발장, 시스템장, 거울, 드레스룸, 화장대, 욕실장, 붙박이장, 수전류(발코니, 세탁실)	설비배관

•마이너스 옵션금액

구분(주거전용면적)	84.8608(84A타입)	84.9150(84B타입)
기본선택(마이너스옵션)	28,030,573원	28,386,749원

※ 상기 금액에는 취등록세 등이 미포함된 가격이며, 마이너스 옵션 선택시 분양가는 기본형 분양가에서 상기 마이너스 옵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공급가격으로 함

•마이너스옵션 선택 및 시공을 위한 유의사항

• 마이너스 옵션은 설계상 포함된 기본형의 마감재중 선택품목에 해당하는 공사비를 제외한 가격으로 공급받고 입주자가 취향에 맞춰 직접 선택 시공하는 방식임(단, 상기마이너스 옵션 계약은 품목별,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으며 일괄로 선택하여야 함)
- 마이너스 옵션을 선택한 계약자의 분양대금 납입비율은 일반분양 계약자와 동일함.
- 마이너스 옵션과 발코니 확장 옵션 계약의 경우 공사상 상이점(바닥마감, 벽체, 벽지, 방수, 단열 등)으로 인하여 마이너스 옵션을 선택하여 계약하신 세대는 발코니확장이 시공되지 않음
- 마이너스 옵션 선택시 세대내 서비스 제공품목은 시공되지 아니함
- 분양계약 이후에는 자재 발주문제로 인하여 마이너스 옵션을 추가 신청하거나 계약 변경 및 취소가 불가함
- 마이너스 옵션 선택시에도 발코니 확장은 에너지 절약기준,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시공 되어야 하며, 개별 시공할 경우 관계법령 위반에 따른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음
- 사용검사 완료 및 잔금 납부 이후 마이너스 옵션 부분의 공사가 가능하오니 이점 감안하여 품목선택 및 입주계획을 세우시기 바라며, 공사기한은 소음, 분진 등의 문제로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산정지침 제3조 규정에 의거 최초 입주 가능일 부터 60일 이내에 법규정을 준수하여 마이너스 옵션의 시공 및 설치를 완료하여야 함
- 마이너스 옵션 계약 이후 마이너스옵션 부분의 공사비가 건설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금액 (일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실내 건축 공사업등록업자가 시공하여야 하며, 그 외 경우도 품질 확보 및 하자보수책임과 사후관리를 위하여 자격을 구비한 전문건설업체가 시공하여야 함(하자 등으로부터 보호를 받기위해서는 등록된 실내건축공사업자가 시공하더라도 마이너스 옵션 부분 실내공사 계약시 하자이행 보증보험 가입하도록 명기하고 보험증권을 스스로 징구하시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시기 바람)
- 마이너스 옵션 부분에 사용하는 자재는 '건축법 제43조', '건축법 시행령 제61조',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규정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함
- 발코니확장(마감재 제외)과 가변형의 칸막이 제거(변경)를 개별시공 할 경우 입주자는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적합하게 시공하여야 하며 관련법령 위반에 따른 책임은 입주자에게 있음
- 마이너스 옵션 선택시 마감재 선택이 자유로우나, 일부 자재선택에 제한이 있을 수 있음
- 배선기구류 위치 등은 기존 위치와 동일하며, 기타 시공조건(마감재를 제외한 바닥, 벽체 두께 등)은 타입별 마이너스 옵션 미선택시 기준으로 시공됨
- 마이너스 옵션 선택시 기 시공되어진 통신기기, 난방조절기 등이 개별 인테리어공사 과정에서 탈부착 됨으로 인하여 초기 세팅값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최초 입주가능일(입주지정개시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개별공사를 완료 후 정상작동 유무를 확인하여야 함
- 마이너스 옵션 부분 공사시 기 시공된 소방, 전기, 설비시설 및 방수, 단열, 미장 시설, 기타 공사 시설물, 건물의 구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품목을 훼손시에는 원상복구 및 배상의무가 입주자에게 있음
- 마이너스 옵션을 개별 시공하는 세대는 관계 법령에 맞게 시공하여야 하며, 하자발생 및 관계 법령 등에서 정한 기준 위반으로 인한 일체의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음
- 마이너스 옵션을 선택하여 계약체결한 세대의 계약자가 개별적으로 실내인테리어 업체 등을 통하여 개별시공한 위에 하자가 발생하여 원천적 시공책임이 불분명한 경우 기존의 사업주체 시공분 시설은 적법한 감리감독을 통한 시공으로 사용승인을 득하였으므로 본 아파트 사업주체에게 일방적으로 하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하자 발생의 책임소재에 대한 원인규명 의무는 입주자 본인에게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람
- 마이너스 옵션은 별도 동을 지정하지 않으니, 기본 선택품목 선택을 희망하는 경우는 당첨된 동・호수에 기본선택 품목이 적용된 분양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마이너스 옵션 세대의 동이 지정되어 있지 않아 입주 후 인테리어 공사로 인하여 소음 및 분진이 발생할 수 있음
- 마이너스 옵션 계약세대는 계약시에 기본 선택품목(마이너스 옵션)시공, 설치관련 확약서를 작성하여야 함

▣ 기타 주요사항

■ 친환경주택 성능 수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1호 에 따라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을 다음과 같이 표시함.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4조에 적용]

항목		적용여부	비고
건축부문 (제7조제3항제1호)	단열조치 준수(가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제1호에 의한 단열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 때 외기에 간접 면하는 부위의 단열재 설치는 비난방공간과 면하는 난방공간의 외벽을 단열조치
	바닥난방의 단열재 설치(나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제3호에 의한 바닥난방에서의 단열재 설치
	방습층 설치(다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제4호에 의한 기밀 및 결로방지 등을 위한 조치를 준수
기계부문 설계기준 (제7조제3항제2호)	설계용 외기조건 준수(가목) (냉난방설비가 없는 경우 제외)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8조제1호에 의한 설계용 외기조건을 따름
	열원 및 반송설비 조건(나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8조제2호에 의한 열원 및 반송설비 조건을 따름
	고효율 가정용보일러(다목)	적용	산업통상자원부 고시「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에 따른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이상 제품을 사용
	고효율 전동기(라목)	적용	전동기(단, 0.7KW 이하 전동기, 소방 및 제연송풍기용 전동기는 제외)는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에 따른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받은 제품 또는 최저소비효율기준을 만족하는 제품을 사용
	고효율 난방, 급탕·급수펌프(마목)	적용	난방, 급탕 및 급수펌프는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 받은 제품을 사용하거나 그 평균 효율이 KS규격에서 정해진 기준 효율의 1.12배 이상의 제품을 사용
	절수형설비 설치(바목)	적용	세대 내에 설치되는 수전류는 「수도법」제15조 및 「수도법 시행규칙」 제1조의2, 별표2에 따른 절수형 설비로 설치
	실별 온도조절장치(바목)	적용	세대 내에는 각 실별 난방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 온도조절장치를 설치
전기부문 설계기준 (제7조제3항제3호)	수변전설비 설치(가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제1호에 의한 수변전선설비를 설치
	간선 및 동력설비 설치(나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제2호에 의한 간선 및 동력설비를 설치
	조명설치(다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제3호에 의한 조명설비를 설치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 설치(라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제4호에 의한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를 설치

	공용화장실 자동점멸스위치(마목)	적용	단지 내의 공용화장실에는 화장실의 사용여부에 따라 자동으로 점멸되는 수위치를 설치

Ⅷ 유의사항

- 다음의 유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하고 숙지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일반 유의사항

- 입주자모집공고 이전 제작된 홍보물은 사전 홍보 시 소비자의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하여 제작되거나 사용된 것으로 실제와 상이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람.
- 청약 및 계약 전 사업지 주변 혐오시설 유무, 진입로 등 도로여건, 인근 건물 신축계획, 소음, 조망, 일조 등 주위 환경을 확인하기 바람.
- 보존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다소 지연될 수 있음.(특히, 대지의 이전등기는 상당기간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건물등기와 대지권등기를 별도로 하여야 함)
- 본 아파트는 실제로 입주할 자를 위하여 건립되는 것이므로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신청서 내용 변조 등 주택공급 질서를 어지럽힐 시에는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됨.
- 계약면적과 대지지분은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절차로 인한 차이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변동 될 수 있으며, 소수점 이하의 증감에 대하여는 상호 정산하지 않기로 함.
- 아파트의 현장 여건, 구조, 성능, 및 상품개선을 위하여 설계변경사항이 발생할 수 있음.
- 대지측량결과, 관련법규의 변경, 사업계획승인변경 및 신고, 대지 지분 정리 등에 따라 본 계약 물건의 견본주택, 단지배치, 단지 내 시설물의 위치, 설계도면 등의 표시등이 입주 전까지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본 아파트의 공급가격은 각 세대의 층별 등의 다양한 조건들을 고려하여 책정한 금액으로 층별 등 공급금액의 상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마이너스 옵션을 선택하여 계약체결한 세대의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실내 인테리어 업체 등을 통하여 개별적으로 시공한 부위에 하자가 발생하여 원천적으로 하자책임이 불분명한 경우 사업주체는 적법한 감리감독을 통한 시공으로 사용승인을 득하였으므로 본 아파트 사업주체에게 일방적으로 하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관련법령에 의거처리함
- 천연자재는 자재 특성상 동일한 무늬나 색상의 공급이 현실적으로 어려우며, 자재 자체의 특성상 하자의 판단은 KS 기준에 의할 수 있음.
- 공장생산 자재의 경우 자재의 특성상 하자의 판단은 KS 기준에 명시된 내용에만 한정함.
- 각종 인쇄물 및 모형도 등에 표현된 옥상 옥탑부, 주동형태, 창호형태, 측벽디자인, 외부색채, 외벽로고사인, 외벽마감, 식재, 바닥포장, 단지 내 조경, 어린이놀이터, 주민공동시설 등의 계획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제작된 것으로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 시 현장 여건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시공기준은 최종건축(변경)허가 도서를 기준으로 함.
- 카탈로그, 팜플렛 등 각종 인쇄물의 조감도, 평면도, 배치도, 이미지 컷 및 CG 등은 소비자의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 상황 또는 시공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조감도 및 배치도 등의 주변 토지 및 건물 현황은 간략하게 표현된 것이므로 계약 전 현장답사 및 사전확인을 반드시 하시기 바람.
- 각종 인쇄물상 단지 배치도의 대지경계선, 각종 법면 현황은 최종 측량결과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내부도로 및 조경석은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 시 현장 여건등에 의하여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조감도, 단지모형도, 배치도 등에 표현된 주변도로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자료로만 이해하시기 바람.
- 대지인접도로 또는 단지 내·외 도로와 단지 내 비상차로 등에 인접한 저층세대는 차량소음, 자동차 전조등에 의한 사생활권 등의 각종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계약세대가 속한 동, 층 및 향에 따라 입주 후 소음, 진동, 사생활권, 일조권 및 조망권 등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이 점을 확인하시기 바람.
- 각종 인쇄물에 표현된 가구 및 각종 내부 마감재는 제작과정의 표현상 한계로 실제 색상 및 패턴과 상이할 수 있음.
- 아파트 계약자의 경우 아파트 계약면적 외의 비주거부분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도 주장할 수 없음.
- 입주 후 불법구조 변경 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므로 양지하시기 바람.
- 본 아파트의 공사 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굴, 정부의 정책이나 관계법령의 변경, 사업주체의 귀책사유 없는 도시계획도로 개통지연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 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지연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지체상금은 발생하지 않음.
- 본 단지의 명칭, 동 표시, 외부색채 및 외부디자인계획 등은 인허가관청과 협의하여 결정되며 향후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외 부지의 개발계획은 당사와 무관하며 현재의 계획 및 예정사항으로 향후 개발주체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추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동영상 촬영물, 카탈로그, 각종 광고홍보물 등은 마감재 이외에 디스플레이를 위한 전시상품이 포함된 것이므로 견본주택을 계약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 외부 보안등. 옥탑 경관조명, 공용설비(영구 배수 등) 등 단지에 포함된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되는 유지 / 보수 / 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함.
- 주민 부대복리시설의 내부시설은 법적으로 설치가 의무화된 품목만 사업주체가 설치하며, 그 외기타 기기 및 비품은 입주 후 입주민들이 자체적으로 구입하여 설치하여야 함.
- 각종 광고, 홍보 유인물(사이버 견본주택, 홍보 카탈로그, 홈페이지 안내문 등)에 표시된 도로, 기타 공공시설 등의 개발계획은 각각의 개발주체가 계획, 추진예정 중인 사항으로 향후 변경되거나 취소될 수 있음.
- 본 공사 시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기초형식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본인 동호수 지정 시 견본주택과 달리 평면이 좌우대칭이 될 수 있으니 청약 및 계약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 분양가격의 항목별 공시 내용은 사업에 실제 소요된 비용과 다를 수 있음.
- 보존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가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적공부정리 절차 등으로 지연될 수 있음.
- 단지 인근 학교 등 각종 교육시설은 개발(실시)계획의 변경, 해당관청의 학교설립 등 시기 조정 및 설립계획 보류(취소) 결정 등에 의하여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설립계획 및 학교 수용계획 등은 해당 관청의 본 아파트 입주시기 및 학생수 등을 감안하여 결정되는 사항임.
- 본 사업은 2020년 07월 최초 사업계획승인을 득하였으며, 일부 규정은 최초 사업계획승인 당시의 규정이 적용됨.
- 현장여건 반영, 구조/성능/품질개선 등을 위하여 적법한 절차를 거쳐 설계변경 및 사업계획변경이 될 수 있으며,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계약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변경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음.
- 공용부분(주거공용 제외) 및 주민공동시설, 부대복리시설의 일부를 준공 후 현장AS 및 유지관리를 위해 현장사무실 및 입주지원센터, AS센터, 자재보관소 등으로 사용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사용료 등을 요구할 수 없음.
- 소음기준 미달시 방음벽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설계관련 공통유의사항
- 본 아파트의 최초 사업계획승인일은 2020년 7월 22일입니다. (관련 법령 적용 기준)
- 본 아파트는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신청에 따른 단양군 주민복지과의 인허가 검토의견에 따라 어린이집을 미설치 하였음. (2020. 2. 27. 단양군 보육정책위원회 의결사항 : 보육시설 신규 설치인가 제한)
- 사전에 사업부지 내·외 현장을 반드시 방문하시어 주변현황 및 현장여건, 주변개발, 조망권, 각종 공사로 인한 소음발생 여부 등을 확인하신 후 청약신청 및 계약체결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견본주택에 전시된 단지모형 및 홍보를 위한 CG,카탈로그상의 단지 내부 및 주변도로는 준공 시 달라 질 수 있으며,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자료로만 이해하시기 바람.
- 단지의 명칭, 동·호수는 관계기관의 심의 또는 협의에 따라 입주 시 공급 시의 명칭과 상이할 수 있으며, 추후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아파트 외관개선 등을 위하여 건물외관(옥상구조물, 전후면 외관, 측벽, 창틀모양 및 색, 색채), 난간의 디테일, 아파트 측벽 문양, 경비실, 부대복리시설 등이 변경될 수 있음. (장식물 또는 구조물 등의 부착)
- 외부 보안등 등 단지에 포함된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되는 유지, 보수, 관리에 따른 일체의 비용(공용조명, 단지 홍보용 사인물, 홈네트워크 설비, 승강기등)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각 동의 저층부 및 고층부 세대는 외부 보안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음.
- 본 아파트 단지 내에 건립되는 공유시설물 및 대지는 공동으로 사용함.
- 주민운동시설(외부), 쓰레기분리수거장, D/A(설비 환기구) 등의 위치 및 개소는 실제 시공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공동주택의 특성상 층 간, 세대 간 소음 등이 발생 할 수 있음.
- 단지 배치 상 동별, 향별, 층별 일조권, 조망권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인접 동 및 인접세대에 의하여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및 사생활권이 침해당할 수 있으므로 계약자는 이 사실을 사전에 충분히 확인 후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라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지배치 특성상 단지내외 도로(주변 현황도로, 단지 내 비상차로, 주출입구, 근린생활시설 차량입구, 지하주차장 출입구)에 인접한 세대는 차량소음, 자동차 전조등 및 야간조명에 의한 눈부심 현상 등의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또한 부대 복리시설 등 단지 내 시설물 등에 인접한 세대는 소음, 프라이버시 침해 등의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 저층세대의 경우 차로, 보행로 및 인근산책로, 기타 부대시설 등에서 실내가 투시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세대 내 프라이버시가 침해될 수 있음.
- 쓰레기 분리수거함 인접세대에는 소음, 냄새 및 해충 등에 의한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 본 아파트는 세대별 쓰레기 투입구가 설치되어 있지 않음.
- 단지 내에 시공되는 토목 옹벽 구조물은 단지 조화와 미관을 고려하여 설치 위치 및 공법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관계기관 심의결과, 시공과정 등에 따라 재료, 형태, 색채, 위치는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내 조경 및 조경수 식재 등의 위치는 입체적 단지 조화를 고려하여 설치나 식재 등 위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관계기관 심의결과, 시공과정 등에 따라 조경 시설물에 따른 조경 선형이나 포장 및 조경시설물의 재료, 형태, 색채, 위치는 변경될 수 있음.
- 지하주차장, 부대복리시설 등 단지 내 부대시설 등의 사용에 대하여 각 동에 따라 거리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단지 내 시설의 위치에 따라 일부 동 및 세대에서는 이용 상 불편함을 초래할 수 있으니 필히 단지배치도 및 시설의 위치와 규모를 확인하셔야 하며, 추후 설치위치 및 시설면적 변경요구 등 근본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지정일(입주자 사전방문일 등의 지정일) 외에는 안전사고 등의 예방을 위하여 현장에 출입을 할 수 없음.
• 대지면적, 연면적, 용적률, 주차대수는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절차(준공 시 확정측량) 등 부득이한 사유로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각동의 주출입구는 주변 지반레벨 등에 따라 위치 및 구조형식 등이 동별로 상이할 수 있음.
• 필로티가 설치되어 있는 일부 주동의 필로티 옆, 상부층 세대는 외부 통행에 의한 소음 발생으로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으며, 필로티 위층의 바닥 난방의 효율이 떨어질 수 있음.
• 아파트의 현장여건 및 구조 / 성능 / 상품개선 등을 위하여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관련법규(주택법, 건축법 등)에서 정하는 경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음.
• 단지내 사용상의 편의를 위하여 불가피 가스정압시설 및 전기변압대 등의 시설물이 입주자 동의 없이 설치될 수 있음.
• 단지 내 지상도로가 있으나 단지배치 특성상 일부 세대는 이삿짐 사다리차 진입이 어렵거나 불가할 수 있음.
• 단지 내 조경, 동 현관, 지하출입구 등 공용부분은 디자인 의도에 따라 형태, 재질, 색채 등이 각기 다르며 상기 사항은 입주자의 개인 취향이나 민원에 의한 변경대상이 될 수 없음.
• 주출입구, 경비실위치, 지하주차장은 교통 통제의 필요성, 효율성, 측량 결과 등에 의거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설계변경 필요시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 각종 광고 및 홍보유인물에 표시된 도로 등의 개발계획은 각각의 개발주체가 계획, 추진예정 및 실행중인 사항으로 예정상황을 표시한 것으로 향후 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추후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측량 결과에 따라 일부 주동의 위치가 경미하게 변경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지하주차장 램프 및 출입구 위치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주택전시관 및 카탈로그 등에는 소비자의 주택형에 대한 인식의 편의를 위하여 간략한 표기를 한 부분이 있으니 청약 및 계약 시 주택형에 대한 혼동 방지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람.
• 단지 내 설치되는 옥외공간(놀이터, 운동시설(외부), 보행로, 도로 등)으로 인하여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바닥마감재의 패턴, 컬러 등은 모형 및 CG와 상이 할 수 있음.
• 본 공사 시 본동과 주민공동시설 외벽 컬러 및 시공 디테일 등은 상이 할 수 있음.
• 본 공사 시 단지 경계를 따라서 필요 일부 구간에 생울타리 또는 철재 난간이 설치 될 수 있음(적용 디자인 미정)
• 단지 내,외부 도로의 폭, 단차, 레벨 등은 모형과 일부 상이 할 수 있음
• 단지 내 주민 야외 운동시설, 놀이터 등에 적용되는 기구의 개수, 컬러, 구성은 모형과 상이 할 수 있음
• 단지 내 제공되는 자전거 보관소, 쓰레기 보관소의 적용디자인은 미정으로 본 공사 시 변경 될 수 있음
• 주동 벽면에 설치된 사인물로 인해 일부 세대의 경우 빛 공해로 인한 불편을 받을 수 있음
• 현장 여건에 따른 단지 내 문주 설치 시 일부 동 저층세대는 조망, 빛공해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지하주차장의 경우 일부 구조물로 인해 승하차 시, 차량 회차 시 불편을 받을 수 있음
• 부속시설(주민공동시설, 근린생활시설, 경비실 등)의 에어컨 실외기가 설치되어 있는 장소에는 소음, 진동 등이 발생될 수 있으며, 시각적으로 노출될 수 있음(관리동선으로 인하여 세대 프라이버시 침해될수 있음)
• 주동 최상부의 외부 마감 컬러 및 시공 디테일 등은 본 공사 시 변경 될 수 있음
• 승강기의 경우 시공 과정에서 디자인 및 일부 사양이 변경될 수 있음
• 세대내 발코니 일부에 선홈통이 설치될 수 있음.
• 옥탑에는 의장용 구조물, 경관용 조명, 위성 및 공청안테나, 피뢰침, 태양광 패널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소음, 진동 등의 환경권과 조망 및 빛의 산란에 의한 사생활침해를 받을 수 있음.
• 일부 주동의 옥상에는 태양광 발전설비(PV)가 설치되어 아파트 공용부 등의 전력에 사용되며, 태양광 발전설비(PV)는 본 공사 시 위치 및 높이 등이 변경 될 수 있음. 또한 PV의 활용에 따라서 하부 일부 세대의 경우 소음 및 진동의 불편이 있을 수 있으니 계약 전 해당 동호수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 지하주차장 내 위치한 기계실, 전기실 등 부대시설은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설계변경 될 수 있음.
• 환기용 D/A, 실외기 설치공간 위치 및 크기, 제연휀룸D/A 등의 지상 돌출물의 위치 및 형태가 공사 중 설계 변경 될수 있음.
• 「전기통신사업법」 제69조의2 및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24조의2 등에 의거, 기간통신사업자 협의대표인 한국전파진흥협회 이동통신설비 구축지원센터와 구내용 이동통신설비의 설치장소 및 설치방법 등에 대해 협의하였음.
• 단지 내에 기간통신사업자의 이동통신 중계기가 설치 될 예정이며, 본 공사시 우수한 통신품질이 제공될 수 있는 위치로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음.
 - 중계장치 설치 예정 위치 : 지하2층 104동 제연휀룸
• 추후 상기 내용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청약 전 반드시 확인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단위세대 마감재 등

• 단위세대 평면설계는 발코니 확장형을 기본으로 설계하였으므로 이에 대하여 설계변경 등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거실 및 침실 등의 천장고는 2.3M이며 본 공사시 세대내 천장높이는 시공여건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본공사시 세대 목창호 및 기타창호(실외기실 도어)에 설치된 하드웨어(손잡이, 정첩, 스토퍼 등)는 협력업체 계약에 따라 각 협력사가 보유하고 있는 디자인, 재질, 색상 등으로 주택전시관과 다소 상이하게 시공될 수 있음

- 발코니 확장 시 확장부분의 외부 샤시는 이중창호 등으로 설치되며, 창호사양(제조사, 브랜드 및 창틀, 하드웨어, 유리, 손잡이 모양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세대내 창호 및 문의 형태 및 위치는 견본주택 및 분양안내책자 기준으로 시공되나 규격 및 사양, 열림(개폐)방향, 날개벽체가 실제 시공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발코니 또는 다용도실에 설치되는 각종 설비배관은 노출배관(천정, 벽)으로 미관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층에 따라 배관수량이 상이하게 설치될 수 있음
- 계약자가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전제품(김치냉장고, 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무선청소기, 청소기 등) 및 가구 등이 폭, 높이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배치 불가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라며 변경요청 및 이의제기 할 수 없음.
- 세대 내부 가구설치 부위의 비노출면은 별도 마감재가 설치되지 않음.
- 욕실장 후면에는 타일 등의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음.
- 고정형 가구 바닥, 벽체, 천정에는 별도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음.
- 주방가구와 접하는 측면, 후면 하부에는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음.
- 부부욕실 및 공용욕실은 외부창이 설치되지 않음.
- 본 아파트의 각 세대의 위치에 따라서 서비스면적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면적증감 시 분양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발코니에 설치되는 난간과 발코니 샤시의 형태 및 사양은 기능 및 미관개선을 위하여 형태 및 재질이 실제 시공 시 변경 될 수 있음.
- 일부 저층세대의 경우 동 출입구 형태에 따라 동 현관 및 장애인 경사로 설치시 시각적 간섭이 발생될 수 있음.
- 세대별 현관 주변에 승강기 홀 설치로 인하여 프라이버시 간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청약 및 계약 전 분양 카탈로그 등을 확인하시기 바람.
- 승강기 홀 인접 세대에서는 승강기 운행 등에 따른 진동 및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저층세대의 외벽 마감재 설치에 따라 외부 창호는 다소 축소 및 변경될 수 있으며, 벽체 두께가 변경될 수 있음.
- 발코니 확장에 따라 이중창호, 단열재의 추가 설치로 발코니 실사용 면적이 줄어들 수 있음.
- 공장생산 자재(타일 등)의 경우 품질 상 하자의 판단은 KS기준에 의하며, 시공 상 요철이 발생할 수 있음.
- 견본주택 내 스프링클러 및 환기구(급/배기용)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견본주택의 가시설물로서 본 공사 시 및 실시공시에는 소방법령에 맞추어 설치될 예정임.
 (본 공사 시 상기사항 적용에 따른 일부 마감사양, 우물천장, 커튼박스, PL창호, 주방기구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확장하지 않은 발코니는 준 외부공간으로 난방 및 단열재가 시공되지 않으므로 내·외부 온도차에 의하여 결로 및 결빙에 의한 마감 손상이 발생할 수 있음.
- 실외기실 또는 발코니에 환기시스템(장비) 및 배수 배관이 설치되며, 본 시공 시 배관이 노출되거나, 내부마감(창호와 그릴, 전등의 크기 및 위치) 및 건축입면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세대 내부의 욕실 단차는 바닥구배 시공으로 인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침실 내부로의 물 넘김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계되었으며, 또한 욕실 출입 문짝에 의한 신발 걸림이 있을 수 있음.
- 실시공시 세대내 욕실의 천장높이는 바닥타일의 마감 구배와 천장 내 설비배관 설치 등에 의하여 도면상의 치수와 달리 일부 오차가 발생할 수 있음.
- 마감재 이외의 디스플레이를 위한 상품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견본주택을 관람하시고 분양가에 포함품목을 확인하시기 바람.
- 인허가 과정 및 실제 시공 시 사용성 개선 등을 위하여 주방가구 및 수납공간의 계획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조명, 등기구는 실제 시공시점 차이로 인해 디자인이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외단열로 시공되는 일부동의 일부 외벽마감 재질 및 색감 등이 주변 다른 동과 다소 상이할 수 있음.
- 본 공사 시 적용되는 주동 외벽 저층부 몰딩의 규격 및 컬러 등은 모형과 상이 할 수 있음.
- 본 공사 시 제공되는 타일의 간격, 무늬, 컬러는 견본주택과 상이 할 수 있음
- 본 공사 시 제공되는 가스배관, 가스밸브, 스위치, 조명기구, 수전, 콘센트의 위치는 견본주택과 상이 할 수 있음.
- 본 공사 시 제공되는 가구의 적용 하드웨어는 견본주택과 상이 할 수 있음.
- 본 공사 시 제공되는 발코니, 화장실, 현관의 단차는 견본주택과 상이 할 수 있으며, 제공되는 배수구의 노출(입상관, 선홈통), 설치 위치는 견본주택과 상이 할 수 있음.
- 본 공사 시 제공되는 세대 월패드의 제공 프로그램, 기능은 견본주택과 상이 할 수 있음
- 욕실부위 바닥난방은 샤워부스, 욕조하부는 제외됨.
- 본 공사 시 제공되는 가전기기의 경우 생산업체의 사정에 의한 해당모델 단종 및 일부제품 수급이상 등의 사유로 인해 제품 공급이 제한될 시. 동급, 동가 이상의 모델,브랜드로 변경 시공 될 수 있음.
- 본 공사 시 제공되는 침실 크기는 시공오차 범위 내에서 견본주택과 상이 할 수 있으니 반드시 입주자는 계약세대 실측을 통한 가구, 가전기기 배치계획을 가지기 바람.
- 견본주택 내 전시된 김치냉장고, TBI냉장고 등은 전시품목이고 고객이 소유하고 있는 제품에 따라 일부 돌출될 수 있음
- 견본주택의 경우 일부 부위 전시품목으로 표현되어 있으니 해당부위를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 본 공사 시 제공되는 외부창호 및 실외기 그릴의 크기, 설치 위치 등은 변경 될 수 있음.
- 주방발코니 도어 사이즈로 인해 입주자가 가지고 계신 세탁기, 건조기 사양에 따라 주방발코니 내 수납이 어려울 수 있음. 반드시 해당세대 실측 후 전자제품 구매계획을 잡으시기 바람.
- 주방의 가스배관, 차단기, 밸브 등이 노출설치 됨
- 세대내 세탁기 설치 공간은 세탁기 사양에 따라 설치가 어려울 수있음
- 주택전시관내 설치된 빌트인 가전(냉장고/김치냉장고/하이브리드 쿡탑)은 유상옵션으로 제공되며, 본 공사시 동등이상의 제품으로 사양 및 디자인이 변경될 수 있음
- 견본주택 내 전시된 빌트인김치냉장고, 빌트인냉장고 등은 유상옵션으로 제공되는 제품이고 고객이 소유하고 있는 제품크기에 따라 설치가 어려울 수 있으며 돌출정도는 다를 수 있음

- 주택전시관내 전시된 단위세대의 안목치수(POP포함)와 본공사시 단위세대의 안목치수는 시공오차 범위내에서 상이할 수 있으므로, 개별 붙박이장 설치시 반드시 실측치수를 적용하시기 바람
- 고객님이 소유하신 냉장고, 김치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밥통, 청소기 등 가전사양 및 크기에 따라 설치 및 수납이 어려울 수 있으니 반드시 주택전시관에서 설치가능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람 아울러 세탁기 및 건조기 직렬설치시 주택형에 따라 해당부위 세탁실 선반사용이 불가능 할 수 있음
- 거실 및 주방, 침실에 시공되는 마루자재는 스팀청소기 및 물걸레 등 습기를 이용한 청소시 목재 고유한 특성상 장시간 수분 노출 시 변형, 비틀림 등 우려가 있음
- 인조대리석류(현관 디딤판 및 걸레받이, 씽크대상판, 화장대상판, 욕실선반 등)은 무늬와 색상이 동일하지 않으며, 스크래치가 발생할 수 있음
- 기본형(비확장형) 세대의 경우, 인접한 확장형 세대와 면하는 발코니에 단열재 추가설치 등으로 발코니 실사용 면적이 줄어들 수 있음
- 최하층 세대와 기타층 세대간 천장속 공간과 천장고, 천장의 형태(우물천정 유무, 조명위치 포함) 등이 상이하며, 마감자재 내용은 형별, 타입별 등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발코니 바닥턱은 사용편의성, 바닥드레인 설치위치 변경 등에 의해 본 공사 시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목창호, 가구 등에 설치되는 문선은 서로 상이할 수 있으며, 기능 및 미관을 고려하여 일부 디자인 및 사양이 변경될 수 있음
- 본 공사시 발코니 벽체하부에 오염방지 도장이 시공되며, 도장색상은 변경될 수 있음
- 본 공사시 세대 침실 목창호 문선에 도배홈이 설치되며, 미관 및 시공상의 이유로 디자인이 변경될 수 있음
- 본 공사시 발코니, 욕실, 현관 등의 타일류는 줄눈 및 패턴(나누기)이 변경될 수 있음
- 해당타입 단위세대내 벽패널 마감부위의 경우 본 공사시 패널 나누기 형태 및 디테일이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현관 신발장, 주방가구, 일부 붙박이장 등 수납공간의 크기와 마감자재는 주택형별로 상이하므로 이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바닥에 사용되는 마루자재는 주택전시관 및 각종 인쇄물에 표기된 색상 및 무늬와는 실제 또는 제품간 서로 상이할 수 있음
- 세대내 드레인이 설치되는 발코니(또는 다용도실)은 본 공사시 구배시공으로 인하여 주택전시관과 높이가 다소 차이가 있을 수있음
- 비확장세대 발코니 외부창호는 시공되지 않음
- 욕실 천장재의 점검구 위치 및 크기, 개소는 본 공사시 변경될 수 있음
- 부부욕실에 설치되는 샤워부스(일부세대 확장제공)는 접합유리로 시공되며, 본 공사시 협력업체 계약관계에 따라 디자인 및 디테일이 변경될 수 있음
- 단위세대 욕실도어 및 확장시 다용도실 도어 하부에 설치되는 인조대리석 도어씰은 본 공사시 동등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음
- 거실 아트월 부위는 디자인월 마감으로 줄눈채움 시공되지 않으며, 벽걸이 TV설치시 별도의 보강이 필요하고 하부에 배선이 노출됨
- 세대 내외부 창호와 문의 형태 및 위치는 주택전시관 및 분양 안내책자 기준으로 시공되나 본 공사시 업체, 규격 및 사양, 열림(개폐) 방향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협력업체 계약 및 외부입면계획에 따라 디자인, 프레임 사이즈, 유리 사양, 핸들, 외장재, 색상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확장시 설치되는 침실 분합문에는 방충망이 설치되지 않음
- 세대 현관 방화문은 본공사시 방화성능향상 및 협력업체 계약에 따라 디자인이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본공사시 목창호 문틀 및 가구등에 타커 자국이 보일 수 있으며, 이는 하자가 아님
- 당해 주택의 주택형별 단위세대 구조에 따라 발코니 면적 및 확장면적에 차이가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여야 하며,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저층부 외벽 마감재의 종류에 따라 저층부 세대 일부 창호폭이 줄어들거나 창호가 이동될 수 있음
- 주택전시관 세대내 주방가구는 확장형으로 설치되었으며, 기본형은 주방가구 배치가 변경되고, 설치 수납가구가 다소 차이가 있음
- 세대 내외부 창호에 설치되는 유리는 동등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음
- 주방가구 상판의 인조대리석 마감은 마감재 특성상 이음 부분이 노출되거나 상세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음 부분의 위치가 주택전시관과 다르게 변경될 수 있음
- 발코니 확장시 설치되는 외부창호 외부면(침실 분합문 제외)은 1면 착색프레임이 설치되고 내부면은 별도의 마감이 없으며, 본 공사시 주택전시관에 설치된 마감과 다소 색상이 상이할 수 있음
- 당해 주택의 주택형별 접합부위에 단열재 설치 위치에 따른 발코니 유효면적 및 확장면적에 차이가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여야 하며,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외부 창호 디자인, 프레임사이즈, 유리두께 등은 구조검토 및 안전성에 따라 본 시공시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일부 창호 계획에 있어 주거 활용도 향상을 위하여 위치 및 크기가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발코니 확장 시 확장 부분의 외부샷시는 PVC재질 등으로 설치되며, 회사의 도산 및 제품 단종 등의 사유로 창호사양(제조사, 브랜드 및 창틀, 하드웨어, 손잡이, 유리/개폐방향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본 공사시 외부창호의 크기는 설계변경 등의 절차를 통해 주택전시관 또는 각종 홍보물상의 사진 및 이미지와 다르게 시공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발코니 난간높이, 입면의 형태, 친환경주택 성능수준 등이 분양시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전후면 발코니 및 콘크리트 난간 높이는 동 위치 및 층수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실제 시공시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발코니에 설치되는 난간과 발코니 샷시의 설치유무, 형태 및 사양은 동별, 층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기능 및 미관 개선을 위하여 형태 및 재질이 실시공시 변경될 수 있음
- 수전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는 별도의 배수설비가 설치되지 않으며, 물을 사용할 수 없음
- 냉방기기(에어컨) 실외기는 세대 내 발코니 실외기실에 설치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인접공간에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에어컨 개별 설치시 실외기는 출입문과 공간을 감안하여 에어컨 성능에 지장이 없도록 입주자가 설치하여야 함
- 비확장 발코니, 실외기실은 준 외부공간으로서 난방시공 및 단열재가 설치되지 않아 내외부 온도차로 인한 결로 및 결빙 등에 의한 마감손상이 발생할 수 있으며 보관된 물품이 훼손될 수 있음
- 각 세대의 발코니에는 필요시 선홈통 및 드레인 등의 위치, 개소는 추가되거나 변경될 수 있으며, 발코니 확장시, 선홈통 배수관을 가리기 위한 벽체가 일부 돌출되어 미관상 저해요소가 될 수 있음
- 발코니 확장세대의 인접 또는 상하부 세대가 비확장 시에는 단열재 추가 설치로 인하여 인접세대 발코니 부위의 벽체 및 가구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에어컨 실외기실에 설치되는 그릴창은 실제 시공시 협력업체 계약에 따라 디자인이 변경될 수 있음
• 에어컨 실외기실에 설치되는 도어는 실외기 간섭에 의해 개폐방향이 변경될 수 있으며, 실제 시공시 협력업체 계약에 따라 디자인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전동빨래건조대 사용시 간섭이 생길수 있음
• 확장형 단위세대의 경우 비확장 발코니(실외기실 제외)에 결로방지를 위한 단열재 및 마감재가 시공되며, 이에 따라 PVC 재료분리대가 설치될 수 있음
• 본 공사시 발코니 난간대의 형태, 나누기, 고정방식, 색상, 프레임 두께 및 재질 디테일, 디자인이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당 사업지는 별도의 대피공간이 없이, 실외기실에 에어컨실외기 공간과 하향식 피난구가 함께 설치 됨
• 하향식 피난구는 짝수층과 홀수층 위치가 교차되어 설치되며, 하향식 대피사다리의 규격 및 사양, 위치, 열림(개폐)방향이 변경될 수 있음 아울러 구조상 층간소음으로 불편이 발생할 수 있음.
• 하향식 피난구는 2층 이상 모든 세대의 실외기실 바닥에 설치되며, 하부에 세대가 없는 최하층 세대의 경우(하부세대가 필로티인 경우 포함)는 하향식 피난구가 설치되지 않음.
• 모든 세대 실외기실에는 상부세대의 사다리가 내려오는 공간 및 대피를 위한 동선에 물건을 적치하는 등의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됨
• 각 주택형 욕실에 설치된 점검구는 본 공사시 크기 및 위치, 설치개소가 다소 변동될 수 있음
• 주택전시관에 표기한 주방 가스배관 설치위치는 다소 변동될 수 있으며, 가스배관이 설치되는 주방 상부장의 깊이는 변경될 수 있음
• 본 공사시 렌지후드 상부장에 자동식 소화기가 설치되며 해당부위 수납공간이 변경될 수 있음
• 본 공사시 발코니2(다용도실)에 가스계량기 및 가스배관이 노출되어 설치되며, 위치가 주택전시관과 다르게 변경될 수 있음
• 일부 세대에 공용설비 점검을 위한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음.
• 발코니 또는 다용도실에 설치되는 각종 설비배관 및 기계환기설비는 노출배관(천장, 벽)으로 미관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소음 및 하부 바닥배관으로 인한 턱 및 바닥구배에 의한 단차가 형성될 수 있음
• 주택전시관 내에 설치된 조명은 매립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노출등은 연출을 위한 조명으로 본 공사에 적용되지 않는 품목임
• 주방가구 개수대 하부에 설치되는 온수분배기는 본공사시 위치가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온수분배기 설치로 인해 해당부분 주방가구 깊이가 조정될 수 있음
• 세대내 설치된 선홈통(우・배수관), 배수구, 수전(세면기, 샤워기, 주방, 세탁기, 손빨래 등), 세면기, 샤워부스, 욕조, 변기 등은 실제 시공시 위치 및 디자인이 변경될 수 있음
• 세대 환기장치는 본공사시 위치가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덕트가 설치됨 (덕트 노출을 가리기 위해 해당타입 침실 커텐박스 폭이 변경될 수 있음)
• 주택전시관 세대내 주방의 식탁 조명등 위치는 본 공사시 다소 변동될 수 있음
• 주택전시관 세대내 거실 및 침실 등에 설치된 환기 디퓨져는 본 공사시 위치와 개소가 다소 변동될 수 있음
• 본공사시 세대 보일러는 설치위치가 변동될 수 있으며, 동등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음.
• 세대별 보일러가 발코니2(다용도실)에 설치되며, 이로 인해 주방벽과 면한 경우 보일러 작동시 인접한 주방벽체에 진동 및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홈페이지, 카다로그 및 각종인쇄물, 주택전시관 등에 적용된 마감자재는 유사색상 및 무늬를 지닌 동등이상의 성능을 가진 타제품으로 대체 시공될 수 있으며 의장이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모양이나 색상이 변경될 수 있음
• 홈페이지, 카다로그 및 각종인쇄물, 주택전시관 등에 적용된 마감재 수준 이상으로의 변경요구는 불가하므로 마감재 수준을 자세히 확인하신 후 신청 및 계약체결 하시기 바람.
• 주택전시관은 확장형으로 시공되었습니다. 기본형(비확장)세대 선택시 제외품목이나 기본품목 등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창호 및 부속 철물류, 가구(시스템가구 포함) 및 가전류, 벽체 및 바닥재, 샤워부스, 발코니 난간대 등 마감재의 색상, 디자인, 재질 등은 실제 시공시 협력업체 계약에 따라 각 협력사가 보유하고 있는 디자인, 재질 등으로 주택전시관과 다소 상이하게 시공될 수 있으며 동등 이상의 성능제품으로 시공됩니다.
• 본인 동호수 지정시 동일평형이라 하더라도 주택전시관과 달리 평면이 좌우대칭이 될 수 있으니 청약전 반드시 확인 바랍니다.
• 일부세대는 인근 도로의 특성상 발생되는 소음, 차량의 전조등으로 인해 불편할 수 있으며 개인 사생활이 침해될 소지가 있으니 계약전 반드시 해당동 호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사시 통신단자함은 84A형의 경우 옵션 선택에 따라 현장창고 또는 알파룸, 84B형은 현관창고 내부에 설치될 예정이며 위치와 크기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전기 분전함은 관련 법규 변경으로 인해 침실1(안방)벽에 노출 시공되며, 주택형별 설치위는 주택전시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거실 및 침실 등의 천장고는 2.3M이며 본 공사시 세대내 천장높이는 시공여건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84A형의 경우 확장형 계약시 알파룸을 보조주방형(주택전시관), 수납강화형 또는 알파룸형으로 선택하실 수 있으며, 선택형에 따라 주방가구 디자인 및 수납공간(팬트리 또는 알파룸), 제공품목 차이가 있으며, 디퓨져의 위치 및 수량, 등기구 디자인 및 위치, 콘센트 등 배선기구 수량 및 위치가 변경됩니다. 또한, 옵션 선택시 주방폭이 변경되오니 계약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① 보조주방형_현관창고+인키친(가구도어+가구+1구인덕션+렌지후드+벽타일+엔지니어드 스톤 상판(엔지니어드스톤)
② 수납강화형_현관창고+팬트리(가구도어+시스템선반)
③ 알파룸형_신발장 1면+알파룸(목창호 도어)
• 본공사시 세대 목창호 및 기타창호(실외기실 도어)에 설치된 하드웨어(손잡이, 정첩, 스토퍼 등)는 협력업체 계약에 따라 각 협력사가 보유하고 있는 디자인, 재질, 색상 등으로 주택전시관과 다소 상이하게 시공될 수 있음
• 본 공사시 세대 마감자재(수전 및 액세사리류 포함)의 설치 위치는 마감치수 및 사용자 편의를 고려하여 주택전시관에 설치되었던 위치와 상이하게 일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설치되는 인테리어 마감재, 디자인 및 다양한 두께로 인해 안목치수가 도면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사업계획승인 도면의 안목치수는 타일·가구 등 마감재 설치 두께가 미반영된 수치로 입주시 실제 측정 치수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선택형 유상옵션품목의 경우 최초 계약자의 선택에 의해 결정되어 시공이 되며, 이후에는 배선, 배관 등 관련 설비공사에 따라 선택변경이 불가합니다.

• 발코니 확장 시 확장부분의 외부 샤시는 이중창호 등으로 설치되며, 창호사양(제조사, 브랜드 및 창틀, 하드웨어, 유리, 손잡이 모양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세대내 창호 및 문의 형태 및 위치는 주택전시관 및 분양안내책자 기준으로 시공되나 규격 및 사양, 열림(개폐)방향, 날개벽체가 실제 시공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발코니 또는 다용도실에 설치되는 각종 설비배관은 노출배관(천정, 벽)으로 미관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층에 따라 배관수량이 상이하게 설치될 수 있음
• 주택전시관내 설치된 현관 중문의 경우 유상옵션으로 제공되며, 본 공사시 동등이상의 제품으로 사양 및 디자인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현관 중문 미선택시 천장몰딩, 가구, 디딤판의 위치 및 형태가 변경될 수 있으며 신발장 측면이 건식벽으로 마감됩니다.
• 본공사시 적용될 세대내 입상관, 수전, 배수구, 스위치, 콘센트의 위치 등은 주택전시관과 상이할 수 있으며, 적용모델은 동급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택전시관내 설치된 천장형 에어컨의 경우 유상옵션으로 제공되며 냉방전용제품으로 난방운전이 불가하고, 운전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설치위치, 사양 및 디자인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계약자가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전제품(김치냉장고, 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무선청소기, 식기세척기, 청소기 등) 및 가구 등이 폭, 높이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배치 불가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라며 변경요청 및 이의제기 할 수 없음.
• 본공사시 세대내 다용도실, 욕실(샤워부스 포함), 현관, 실외기실 등의 단차는 주택전시관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본공사시 적용될 현관 디딤석은 엔지니어드 스톤의 특성상 무늬, 색깔 등이 주택전시관과 다소 상이할 수 있으며 본공사시 시공 편의성을 위해 분절 시공됩니다.
• 본공사시 적용될 세대내 입상관, 수전, 배수구, 스위치, 콘센트의 위치 등은 주택전시관과 상이할 수 있으며, 적용모델은 동급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공사시 세대내 등기구 위치 및 사양, 디자인은 주택전시관과 상이할 수 있으며, 동급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택전시관내 설치된 세대 화재감지기 및 스프링클러의 위치는 본공사와는 무관하며, 법적 설치기준에 의거 위치 및 개소가 변경됩니다.
• 세대 내부 가구설치 부위의 비노출면은 별도 마감재가 설치되지 않음.
• 욕실장 후면에는 타일 등의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음.
• 고정형 가구 바닥, 벽체, 천정에는 별도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음.
• 주방가구와 접하는 측면, 후면 하부에는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음.
• 본 아파트의 각 세대의 위치에 따라서 서비스면적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면적증감 시 분양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발코니에 설치되는 난간과 발코니 샤시의 형태 및 사양은 기능 및 미관개선을 위하여 형태 및 재질이 실제 시공 시 변경 될 수 있음.
• 일부 저층세대의 경우 동 출입구 형태에 따라 동 현관 및 장애인 경사로 설치에 따른 시각적 간섭이 발생될 수 있음.
• 세대별 현관 주변에 승강기 홀 설치로 인하여 프라이버시 간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청약 및 계약 전 분양 카탈로그 등을 확인하시기 바람.
• 승강기 홀 인접 세대에서는 승강기 운행 등에 따른 진동 및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저층세대의 외벽 마감재 설치에 따라 외부 창호는 다소 축소 및 변경될 수 있으며, 벽체 두께가 변경될 수 있음.
• 발코니 확장에 따라 이중창호, 단열재의 추가 설치로 발코니 실사용 면적이 줄어들 수 있음.
• 공장생산 자재(타일 등)의 경우 품질 상 하자의 판단은 KS기준에 의하며, 시공 상 요철이 발생할 수 있음.
• 홈페이지, 카다로그 및 각종인쇄물, 주택전시관 등에 적용된 마감자재는 유사색상 및 무늬를 지닌 동등이상의 성능을 가진 타제품으로 대체 시공될 수 있으며 의장이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모양이나 색상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확장하지 않은 발코니, 대피공간은 내・외부 온도차에 의하여 결로 및 결빙에 의한 마감 손상이 발생할 수 있음.
• 실외기실에 환기시스템(장비) 및 배수 배관이 설치되며, 본 시공 시 배관이 노출되거나, 내부마감(창호와 그릴, 전등의 크기 및 위치) 및 건축입면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세대 내부의 욕실 단차는 바닥구배 시공으로 인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침실 내부로의 물 넘김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계되었으며, 또한 욕실 출입 문짝에 의한 신발 걸림이 있을 수 있음.
• 실시공시 세대내 욕실의 천장높이는 바닥타일의 마감 구배와 천장 내 설비배관 설치 등에 의하여 도면상의 치수와 달리 일부 오차가 발생할 수 있음.
• 마감재 이외의 디스플레이를 위한 상품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견본주택을 관람하시고 분양가에 포함품목을 확인하시기 바람.
• 인허가 과정 및 실제 시공 시 사용성 개선 등을 위하여 주방가구 및 수납공간의 계획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본 공사 시 적용되는 주동 외벽 저층부 몰딩의 규격 및 컬러 등은 모형과 상이 할 수 있음.
• 본 공사 시 제공되는 타일의 간격, 무늬, 타일나누기, 컬러는 견본주택과 상이 할 수 있음
• 본 공사 시 제공되는 가스배관, 가스밸브, 스위치, 조명기구, 수전, 콘센트의 위치는 견본주택과 상이 할 수 있음.
• 본 공사 시 제공되는 가구의 적용 하드웨어는 견본주택과 상이 할 수 있음.
• 본 공사 시 제공되는 세대 월패드의 제공 프로그램, 기능은 견본주택과 상이 할 수 있음
• 본 공사 시 욕실 바닥난방은 샤워부스, 욕조하부는 제외됨.
• 주택형별 설치된 일반가구 및 시스템가구(수납장/붙박이장/팬트리/현관창고 등)는 평형에 따라 일부 확장제공이며, 기본형(비확장)세대 또는 평면타입 미선택시 기본마감(도배, 마루 등)으로 시공됩니다.
• 본 공사 시 제공되는 가전기기의 경우 생산업체의 사정에 의한 해당모델 단종 및 일부제품 수급이상 등의 사유로 인해 제품 공급이 제한될 시. 동급, 동가 이상의 모델,브랜드로 변경 시공 될 수 있음.
• 본 공사 시 제공되는 침실 크기는 시공오차 범위 내에서 견본주택과 상이 할 수 있으니 반드시 입주자는 계약세대 실측을 통한 가구, 가전기기 배치계획을 가지기 바람.
• 견본주택 내 전시된 김치냉장고, TBI냉장고 등은 전시품목이고 고객이 소유하고 있는 제품에 따라 일부 돌출될 수 있음
• 견본주택의 경우 일부 부위 전시품목으로 표현되어 있으니 해당부위를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 본 공사 시 제공되는 외부창호 및 실외기 그릴의 크기, 설치 위치 등은 변경 될 수 있음.
- 주방발코니 도어 사이즈로 인해 입주자가 가지고 계신 세탁기, 건조기 사양에 따라 주방발코니 내 수납이 어려울 수 있음. 반드시 해당세대 실측 후 전자제품 구매계획을 잡으시기 바람.
- 주방의 가스배관, 차단기, 밸브 등이 노출설치 됨
- 주택전시관내 설치된 빌트인 가전(냉장고/김치냉장고/하이브리드/인덕션 쿡탑/식기세척기/전기오븐)은 유상옵션으로 제공되며, 본 공사시 동등이상의 제품으로 사양 및 디자인이 변경될 수 있음
- 견본주택 내 전시된 빌트인김치냉장고, 빌트인냉장고 등은 유상옵션으로 제공되는 제품이고 고객이 소유하고 있는 제품크기에 따라 설치가 어려울 수 있으며 돌출정도는 다를 수 있음
- 주택전시관내 전시된 단위세대의 안목치수(POP포함)와 본공사시 단위세대의 안목치수는 시공오차 범위내에서 상이할 수 있으므로, 개별 붙박이장 설치시 반드시 실측치수를 적용하시기 바람
- 고객님이 소유하신 냉장고, 김치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밥통, 식기세척기, 청소기 등 가전사양 및 크기에 따라 설치 및 수납이 어려울 수 있으니 반드시 주택전시관에서 설치가능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람
아울러 세탁기 및 건조기 직렬설치시 주택형에 따라 해당부위 세탁실 선반사용이 불가능 할 수 있음
- 홈페이지, 카다로그 및 각종인쇄물, 주택전시관 등에 적용된 마감재 수준 이상으로의 변경요구는 불가하므로 마감재 수준을 자세히 확인하신 후 신청 및 계약체결 하시기 바랍니다.
- 거실 및 주방, 침실에 시공되는 마루자재는 스팀청소기 및 물걸레 등 습기를 이용한 청소시 고유한 특성상 장시간 수분 노출 시 변형, 비틀림 등 우려가 있습니다.
- 인조대리석(씽크대상판) 및 강화석재(화장대상판, 욕실선반), 엔지니어드 스톤(현관디딤판)은 무늬와 색상이 동일하지 않으며, 스크래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기본형(비확장형) 세대의 경우 등기구의 수량 및 소비전력이 확장형에 비해 변동되며, 사양이 상이할 수 있음.
- 인허가 과정 및 실제 시공시 사용성 개선을 위하여 주방가구 및 수납공간의 계획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기본형(비확장형) 세대의 경우, 인접한 확장형 세대와 면하는 발코니에 단열재 추가설치 등으로 발코니 실사용 면적이 줄어들 수 있음
- 최하층 세대와 기타층 세대간 천장속 공간과 천장고, 천장의 형태(우물천정 유무, 조명위치 포함) 등이 상이하며, 마감자재 내용은 형별, 타입별 등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발코니 바닥턱은 사용편의성, 바닥드레인 설치위치 변경 등에 의해 본 공사 시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목창호, 가구 등에 설치되는 문선은 서로 상이할 수 있으며, 기능 및 미관을 고려하여 일부 디자인 및 사양이 변경될 수 있음
- 본공사시 목창호 문틀 및 가구 등에 타커 자국이 보일 수 있으며, 이는 하자가 아닙니다.
- 본 공사시 발코니 벽체하부에 오염방지 도장이 시공되며, 도장색상은 변경될 수 있음
- 본 공사시 세대 침실 목창호 문선에 도배홈이 설치되며, 미관 및 시공상의 이유로 디자인이 변경될 수 있음
- 본 공사시 발코니, 욕실, 현관 등의 타일류는 줄눈 및 패턴(나누기)이 변경될 수 있음
- 해당타입 단위세대내 벽패널 마감부위의 경우 본 공사시 패널 나누기 형태 및 디테일이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현관 신발장, 주방가구, 일부 붙박이장 등 수납공간의 크기와 마감자재는 주택형별로 상이하므로 이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바닥에 사용되는 마루자재는 주택전시관 및 각종 인쇄물에 표기된 색상 및 무늬와는 실제 또는 제품간 서로 상이할 수 있음
- 세대내 드레인이 설치되는 발코니와 욕실 바닥은 본 공사시 구배시공으로 인하여 주택전시관과 높이가 다소 차이가 있을 수있음
- 비확장세대 발코니 외부창호는 시공되지 않음
- 욕실 천장재의 점검구 위치 및 크기, 개소는 본 공사시 변경될 수 있음
- 부부욕실에 설치되는 샤워부스는 접합유리로 시공되며, 본 공사시 협력업체 계약관계에 따라 디자인 및 디테일이 변경될 수 있음
- 단위세대 욕실도어 및 확장시 다용도실 도어 하부에 설치되는 인조대리석 도어씰은 본 공사시 동등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음
- 거실 아트월 부위는 디자인월 마감으로 줄눈채움 시공되지 않으며, 벽걸이 TV설치시 별도의 보강이 필요하고 하부에 배선이 노출됨
- 세대 내외부 창호와 문의 형태 및 위치는 주택전시관 및 분양 안내책자 기준으로 시공되나 본 공사시 업체, 규격 및 사양, 열림(개폐) 방향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협력업체 계약 및 외부입면계획에 따라 디자인, 프레임 사이즈, 유리 사양, 핸들, 외장재, 색상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세대 현관 방화문은 본공사시 방화성능향상 및 협력업체 계약에 따라 디자인이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본공사시 목창호 문틀 및 가구등에 타커 자국이 보일 수 있으며, 이는 하자가 아님
- 당해 주택의 주택형별 단위세대 구조에 따라 발코니 면적 및 확장면적에 차이가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여야 하며,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저층부 외벽 마감재의 종류에 따라 저층부 세대 일부 창호폭이 줄어들거나 창호가 이동될 수 있음
- 주택전시관 세대내 주방가구는 확장형으로 설치되었으며, 기본형은 주방가구 배치가 변경되고, 설치 수납가구가 다소 차이가 있음
- 세대 내외부 창호에 설치되는 유리는 동등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음
- 각 주택형 주방가구에 설치된 주방액정TV, 가구 콘센트 등의 위치와 사양은 본 공사시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택전시관 세대내 주방가구는 확장형으로 설치되었으며, 기본형은 주방가구 배치가 변경되고, 설치수납가구가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 유상옵션 품목인 빌트인 냉장고, 빌트인 김치냉장고의 경우 주택형별로 상품의 조합, 위치 등이 상이하며 변경은 불가합니다.
- 84A형의 경우 빌트인 김치냉장고 미선택시 키큰장이 제공됩니다.
- 84A형의 알파룸 옵션에 따른 주방 인출 수납장 선택시 가구 도어간 간섭이 생길 수 있습니다.
- 빌트인 냉장고 및 빌트인 김치냉장고 미선택시 일반 수납장이 제공되며, 가구의 형태 및 디자인은 유상옵션 POP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빌트인 전기오븐 옵션 선택시 삭제되는 수납공간(여닫이 도어 설치)의 가격이 차감됩니다. 본 공사시 동등이상의 제품으로 사양 및 디자인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쿡탑의 경우 가스3구(GRA-B320_SK매직)가 기본으로 제공되며, 유상옵션 선택시 기본품의 가격이 차감됩니다. 단, 본 공사시 동등이상의 제품으로 사양 및 디자인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빌트인 식기세척기의 경우 제조사에 따라 가구 디자인이 상이하며, 옵션 미선택시 수납공간이 제공됩니다. 단, 본 공사시 동등이상의 제품으로 사양 및 디자인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의류건조기 옵션 선택시 시스템 선반의 구성이 변경됩니다.
- 주택전시관 세대내 다용도실에 전시된 건조기는 전기식 건조기 설치사례로 가스식 건조기는 설치가 불가능합니다.
- 주방가구 상판의 인조대리석(엔지니어드 스톤) 마감은 마감재 특성상 이음 부분이 노출되거나 상세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음 부분의 위치가 주택전시관과 다르게 변경될 수 있음
- 발코니 확장시 설치되는 외부창호 외부면은 1면 착색프레임이 설치되고 내부면은 별도의 마감이 없으며, 본 공사시 주택전시관에 설치된 마감과 다소 색상이 상이할 수 있음
- 주방가구 상판/벽은 유상옵션 선택에 따라 마감자재의 두께(엔지니어드 스톤↔인조대리석/벽타일)가 상이하여, 목창호 및 가구 맞댐부위의 마감부위의 노출정도 및 시공 디테일에 차이가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시 침실1 워크인드레스룸 크기가 변경되고 시스템선반이 추가로 설치됩니다.
- 당해 주택의 주택형별 접합부위에 단열재 설치 위치에 따른 발코니 유효면적 및 확장면적에 차이가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여야 하며,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외부 창호 디자인, 프레임사이즈, 유리두께 등은 구조검토 및 안전성에 따라 본 시공시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일부 창호 계획에 있어 주거 활용도 향상을 위하여 위치 및 크기가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발코니 확장 시 확장 부분의 외부샷시는 PVC재질 등으로 설치되며, 회사의 도산 및 제품 단종 등의 사유로 창호사양(제조사, 브랜드 및 창틀, 하드웨어, 손잡이, 유리/개폐방향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본 공사시 외부창호의 크기는 설계변경 등의 절차를 통해 주택전시관 또는 각종 홍보물상의 사진 및 이미지와 다르게 시공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발코니 난간높이, 입면의 형태, 친환경주택 성능수준 등이 분양시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전후면 발코니, 주방, 드레스룸의 콘크리트 난간 높이는 타입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실제 시공시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발코니에 설치되는 난간과 발코니 샷시의 설치유무, 형태 및 사양은 동별, 층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기능 및 미관 개선을 위하여 형태 및 재질이 실시공시 변경될 수 있음
- 수전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는 별도의 배수설비가 설치되지 않으며, 물을 사용할 수 없음
- 냉방기기(에어컨) 실외기는 세대 내 발코니 실외기실에 설치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인접공간에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에어컨 개별 설치시 실외기는 출입문과 공간을 감안하여 에어컨 성능에 지장이 없도록 입주자가 설치하여야 함
- 비확장 발코니, 실외기실은 준 외부공간으로서 난방시공 및 단열재가 설치되지 않아 내외부 온도차로 인한 결로 및 결빙 등에 의한 마감손상이 발생할 수 있으며 보관된 물품이 훼손될 수 있음
- 각 세대의 발코니에는 필요시 선홈통 및 드레인 등의 위치, 개소는 추가되거나 변경될 수 있으며, 발코니 확장시, 선홈통 배수관을 가리기 위한 벽체가 일부 돌출되어 미관상 저해요소가 될 수 있음
- 발코니 확장세대의 인접 또는 상하부 세대가 비확장 시에는 단열재 추가 설치로 인하여 인접세대 발코니 부위의 벽체 및 가구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에어컨 실외기실에 설치되는 그릴창에는 개폐형 방충망이 설치되며, 그릴창 및 방충망은 실제 시공시 협력업체 계약에 따라 디자인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에어컨 실외기실에 설치되는 도어는 실외기 간섭에 의해 개폐방향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확장형 단위세대의 경우 비확장 발코니(실외기실 제외)에 결로방지를 위한 단열재 및 마감재가 시공되며, 이에 따라 PVC 재료분리대가 설치될 수 있음
- 본 공사시 발코니 난간대의 형태, 나누기, 고정방식, 색상, 프레임 두께 및 재질 디테일, 디자인이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당 사업지는 별도의 대피공간이 없이, 실외기실에 에어컨실외기 공간과 하향식 피난구가 함께 설치 됨
- 하향식 피난구는 짝수층과 홀수층 위치가 교차되어 설치되며, 하향식 대피사다리의 규격 및 사양, 위치, 열림(개폐)방향이 변경될 수 있음 아울러 구조상 층간소음으로 불편이 발생할 수 있음
- 하향식 피난구는 2층 이상 모든 세대의 실외기실 바닥 및 최하층 세대 실외기실 천정에 설치되며 모든 세대 실외기실에는 상부세대의 사다리가 내려오는 공간 및 대피를 위한 동선에 물건을 적치하는 등의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됨
- 각 주택형 욕실에 설치된 점검구는 본 공사시 크기 및 위치, 설치개소가 다소 변동될 수 있음
- 주택전시관에 표기한 주방 가스배관 설치위치는 다소 변동될 수 있으며, 가스배관이 설치되는 주방 상부장의 깊이는 변경될 수 있음
- 본 공사시 렌지후드 상부장에 자동식 소화기가 설치되며 해당부위 수납공간이 변경될 수 있음
- 본 공사시 발코니2(다용도실)에 가스계량기 및 가스배관이 노출되어 설치되며, 위치가 주택전시관과 다르게 변경될 수 있음
- 일부 세대에 공용설비 점검을 위한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음.
- 발코니 또는 다용도실에 설치되는 각종 설비배관 및 기계환기설비는 노출배관(천장, 벽)으로 미관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소음 및 하부 바닥배관으로 인한 턱 및 바닥구배에 의한 단차가 형성될 수 있음
- 주택전시관 내에 설치된 조명은 매립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노출등은 연출을 위한 조명으로 본 공사에 적용되지 않는 품목임
- 주방가구 개수대 하부에 설치되는 온수분배기는 본공사시 위치가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온수분배기 설치로 인해 해당부분 주방가구 깊이가 조정될 수 있음
- 세대내 설치된 선홈통(우・배수관), 배수구, 수전(세면기, 샤워기, 주방, 세탁기, 손빨래 등), 세면기, 샤워부스, 욕조, 변기 등은 실제 시공시 위치 및 디자인이 변경될 수 있음
- 세대 환기장치는 본공사시 위치가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덕트가 설치됨 (덕트 노출을 가리기 위해 해당타입 침실 커텐박스 폭이 변경될 수 있음)
- 주택전시관 세대내 주방의 식탁 조명등 위치는 본 공사시 다소 변동될 수 있음
- 주택전시관 세대내 거실 및 침실 등에 설치된 환기 디퓨져는 본 공사시 위치와 개소가 다소 변동될 수 있음
- 본공사시 세대 보일러는 설치위치가 변동될 수 있으며, 동등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음.
- 세대별 보일러가 발코니2(다용도실)에 설치되며, 이로 인해 주방벽과 면한 경우 보일러 작동시 인접한 주방벽체에 진동 및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지상 1~2층, 최상층(피로니 포함) 세대는 발코니(확장시 실내)내부에 동체감지기가 설치됨

• 아파트용 엘리베이터의 운행속도는 105m/min으로 설치되며, 엘리베이터 특성상 운행시 다소 소음이 발생 될 수 있음
• 본 공사시 통신단자함은 현관창고에 노출되어 설치될 예정이며, 이로 인해 수납내부의 시스템선반 구성이 일부 변경되거나 거실 복도 벽두께가 변경될 수 있음. 전기분전함은 관련 법규 변경으로 인해 침실1(안방)벽에 노출되어 시공되며, 주택형별 설치위치는 주택전시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통신단자함, 전기분전함, 세대 배선기기, 급수 분배기함은 상황에 따라 위치가 변경될 수 있음.

■ 단지여건
• 단지 내 도시기반시설의 관리주체는 수분양자이며, 준공 후 임의변경 불가함.
• 단지 외부와의 높이 차이에 따라 설치된 옹벽(보강토블럭옹벽, 건축옹벽, 토목옹벽, 조경석 등) 설치 구간 및 옹벽 높이, 해당 부분의 조경 식재 등은 본 공사시 변경될 수 있으며, 인근 세대의 조망 및 일조권에 침해될 수 있으니 계약 전 해당 동호수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 본 모형에 표현된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 도로, 횡단보도 등)은 간략하게 표현되어 있으며, 사업진행 과정에서 지구단위계획 및 교통영향평가 등의 도시계획 변경에 따라 수정 될 수 있음. 또한, 도시계획시설 개발 방향은 당 사업지와 무관함.
• 단지 주변에 야산이 존재하며, 높이는 모형 및 CG와 상이할 수 있음. 아울러 인근 세대의 조망 및 일조가 침해될 수 있으니 계약 전 해당 동호수를 반드시 확인하기 바람.
• 현장 및 주변환경을 확인 후 계약하셔야 하며 향후 이에 따른 민사나 형사상의 소송 및 이의 제기 등을 할 수 없음
• 단지 외부 현황(건물, 가로등, 가로수, 도로 등)은 모형 및 CG와 상이할 수 있음.
• 단지 내 주민공동시설은 입주 후 입주민이 자체적으로 운영 및 유지·관리하여야 함.
• 공유시설물 및 대지는 다른 세대 입주자와 공동으로 사용하여야 함.
• 단지 내 차량진출입을 위한 출입구는 사용승인 후 도로법에 의거 점용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점용료의 납부주체는 입주자 부담임.
• 사업계획승인조건에 따라 근린생활시설 지상1층 주차장은 입주민과 인근지역주민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개방형 주차장이며, 해당 주차장의 유지 관리 주체는 입주자며, 유지관리 비용 또한 입주자가 부담함
•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흙막이가시설, 지하층의 구조, 기초형식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하층 내 환기 및 제습을 위해 별도의 기계설비 장치가 설치될수 있으며 관리에 필요한 유지 또는 운용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본 공사시 현장여건에 따라 건물의 높이가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추후 근린생활시설(부대시설 포함) 등에 음식점 또는 다양한 업종의 입주로 인하여 인접세대는 소음, 냄새, 프라이버시 침해 등의 불편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 차량 진출입 차단기가 설치될시 설치위치는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계약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설계관련 유의사항
• 단지 내 주민공동시설은 분양 시 제시한 기능으로 적용되고 설계변경을 통해 일부 실배치 및 면적이 변경될 수 있음.
• 주변 도로의 경사도 및 대지의 레벨차이로 인하여 본 건물의 레벨 차이가 있으며, 단지 내 도로의 경사도는 시공 중 주변도로의 경사도 및 레벨에 순응하기 위하여 일부조정될 수 있음.
• 단지 경계부는 도로 및 인접대지와의 높이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높이차로 인한 일부 구간에 단지 내 옹벽이 설치될 수 있음
• 지하주차장 상부는 각종 배관, 배선이 노출되어 있음.
• 동출입구의 형태(평면형태, 외관형태) 및 크기는 동 평면의 형상 및 진입방식에 따라 각 동 및 동출입구 별로 상이할 수 있음.
• 입주자 주차장은 지상층 및 지하1~3층에 설치되고 각 동별 주차장 이용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주차장 배치가 계획되어 있으나, 차량의 진출입 동선 및 주차장 성능 개선등을 위하여 단지 내 주차장의 설계가 일부 변경 될 수 있음.
• 지하주차장에는 일부 공간에 회차 공간이 없어 이용이 불편할 수 있음.
• 지하주차장은 전체 단지 통합으로 계획되어 있으므로 각 동에 따라 차량의 진출입 동선, 거주자의 주차장 접근 동선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지하주차장 진입 및 주행 유효높이는 일부구간은 2.3m로, 택배 차량 등의 출입이 불가능 한 층 및 구간이 발생하며, 추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비상 차량(소방차, 이삿짐차량 등), 택배 차량 등은 지상으로 통행하며, 일부 세대의 경우 소음 및 진동, 세대 내 프라이버시가 침해 될 수 있으니 계약 전 해당 동호수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 저층세대의 경우 이동 동선 등으로 인해 세대 내 프라이버시가 침해 될 수 있으니, 해당 동·호수를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 단지 내 지하시설물의 환기 및 채광을 위한 시설물(환기창, D/A)이 설치 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인접한 저층세대는 조망 및 소음, 진동 등의 침해를 받을 수 있음.
• 단지 내 영구배수시설 설치시 이로 인한 하(우)수도 사용료 및 유지비용의 부담주체는 입주민임.
• 외부색채와 외부상세계획 등은 인허가과정, 법규변경, 현장시공 여건 및 상품개선, 향후 관할관청에서 정한 기준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분양 시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동호수의 표기 또한 변경될 수 있음.

• 아파트 주동 및 지하주차장, 근린생활시설, 부대복리시설, 경비실, 문주, 기타 옹벽 등에 적용되는 마감재(외장재)의 색상 및 줄눈은 변경될 수 있음.
• 본 아파트는 공동주택 바닥 충격음 차단구조인정 및 관리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19-179)을 준수하며 층간소음, 진동 등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본 공사시 브랜드 기준 변경에 따라서 BI의 디자인 및 설치 위치는 변경 될 수 있음.
• 주요 방범 및 방재활동 영역에 보안등과 CCTV가 설치될 예정이나, 일부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으며, 본공사 시 수량과 위치는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배치상 동별, 층별 차이 및 세대 상호간의 향·층에 따라 조망, 일조량 등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일부 세대는 환경권 및 사생활권이 침해당할 수 있으니 계약 전 해당 동호수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 101동과 105동 사이는 지하주차장 출입구가 설치되어 일부 저층 세대는 소음 및 진동, 빛공해, 세대 내 프라이버시가 침해될 수 있으니 계약 전 해당 동호수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 101동, 103동, 104동, 105동 전후면 또는 일부 면에 옥외주차장이 설치되며 이로 인하여 일부 세대는 사생활 침해 및 소음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계약 전 해당 동호수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 102~105동 전후면 입접한 곳에는 단지 외부와의 높이 차이에 따라 옹벽이 설치되어 조망 및 일조권, 세대 내 프라이버시가 침해될 수 있으니 계약 전 해당 동호수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 일부동 전면부에는 어린이놀이터 및 주민운동시설이 위치하여 소음 및 진동, 세대 내 프라이버시가 침해될 수 있으니 계약 전 해당 동호수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 일부동에 인접하여 옥외 계단 등이 위치하며 이로 인하여 일부 세대는 사생활 침해 및 소음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계약 전 해당 동호수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 101동, 102동에 인접하여 근린생활시설 및 스쿨버스존이 위치하며 이로 인하여 일부 세대는 사생활 침해 및 소음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계약 전 해당 동호수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 101동 지하층에는 주민공동시설(실내골프, 피트니스 등) 및 수직동선(계단실, 엘리베이터 등)이 위치하며 이로 인하여 일부 세대는 사생활 침해 및 소음, 진동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계약 전 해당 동호수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 103동 하부층에는 관리사무소, 104동 하부층에는 경로당이 위치하며 이로 인하여 일부 세대는 사생활 침해 및 소음, 진동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계약 전 해당 동호수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 101동,103동,104동,105동의 일부라인은 승강기와 세대 현관문이 마주보도록 설계되어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계약 전 해당 동호수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 103동은 지하3층 지하주차장에서 연결된 승강기가 제공되지 않으므로 계약 전 해당 동호수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 101동, 102동 ,105동 일부라인은 사다리차 사용불가로 승강기를 이용한 이사만 가능하므로 계약전 해당 동호수를 반드시 확인하시가 바람
• 105동 84B타입 저층부는 단차 및 차폐식재를 반영하나 인접 화성아파트에 의해 프라이버시가 간설 될 수 있으므로 해당 동호수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 견본주택 유의사항
• 주택전시관은 발코니 확장형으로 시공되어 있으므로 비확장형 선택세대는 확장형 세대와는 다르게 공간이 협소하고, 상이한 내부 인테리어가 적용됩니다. 이에 계약자는 계약전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상담 시 계약조건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발코니 외부창호류, 세대내 목창호류, 가구류, 유리, 바닥재 등 마감자재의 색상, 디자인, 재질 등은 실제 시공 시 주택전시관과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주택전시관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제시된 마감자재 및 설치 제품은 자재품절, 품귀, 제조회사의 도산 등의 사유로 동질 또는 동가 이상의 다른 제품(타사제품 포함)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택전시관 내에는 기본품목, 별도계약품목, 선택옵션품목, 전시품목 등이 혼합되어 시공되어 있고, 본 시공 시에는 계약내용에 따라 설치될 예정입니다. 별도계약 품목(설치사항, 규격), 선택옵션 품목, 주택전시관의 연출용 시공품목(전시품목 등) 및 공간 확보(주방, 전자제품 사용공간 등) 부분 등에 대해 계약자는 사전에 주택전시관을 충분히 확인한 다음 분양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택전시관에 설치된 모형 및 단위세대는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며, 대지 주변현황, 필요한 전기, 설비기기 및 출입문 등은 표현되지 않았고, 실제 시공시 주택전시관과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주택전시관에 설치된 화재 감지기 및 스프링클러는 주택전시관 소방설비로 본공사와 위치, 개소 등이 상이합니다.
• 주택전시관에 노출되어 설치된 전시조명, 전시용품은 연출용이며, 본 공사시 설치되지 않습니다.
• 주택전시관 단위세대 내부에 설치된 인테리어 각종 소품가구(커텐, 블라인드, 침구류, 카펫, 액자, 선반, 조명기구 등 포함), 벽 장식패널 마감, 디스플레이 가전제품(냉장고, 김치냉장고, TV, 세탁기, 건조기, 스타일러, 전기밥솥, 직수형 정수기, 청소기, 전자레인지, 식기세척기 등), 기타 전시용품 등은 분양가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주택전시관은 일정기간 공개 후 관계규정에 의거 폐쇄 또는 철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철거 전 주택전시관 내부의 평면설계 및 마감자재 등은 촬영하여 보관할 예정입니다.
• 주택전시관 내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의 용량, 속도, 탑승위치 등)은 최종사업계획승인도서(변경승인 및 신고 포함)에 준합니다.
• 주택전시관에 표시되거나 설치된 우, 오수 배관의 위치, 선홈통과 수전의 위치, 온도조절기와 바닥배수구의 제품사양 및 위치 등은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은 84A, 84B Type이 설치될 예정이며 모델하우스 내 비치된 설계도서와 견본주택 모형, 분양안내문을 반드시 확인 후 계약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 설치마감재가 단종, 품귀시 동등이상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고객의 이해를 위해 제작된 CG, 단지모형 등 분양홍보물에 반영된 사항이 본공사 시 변경 시공 될 수 있습니다.
• 세대내 제공되는 홈네트워크(또는 홈오토메이션)의 기능이 본공사시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내에 건립된 타입의 경우 전시계획상, 본공사시 시공되지 않는 벽체가 일부 시공되어 있으니 해당부위를 계약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세부사항은 견본주택내 안내사항을 참고바랍니다

■ 주택소유 유의사항
(1) 건물의 용도는 공부상 표시된 용도를 기준으로 함
(2) 주택은 전국에 소재하는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주택의 공유지분을 소유한 경우나 주택의 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3) 주택매매 등 처분사실은 건물 등기사항증명서상 등기접수일(미등기주택은 건축물 관리대장등본 상 처리일)기준임

(4) 주택 공유지분 소유자 및 주택의 용도가 있는 복합건물 소유자도 주택소유자에 해당됨
(5) 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 지분 소유자 전원이 주택소유자로 인정됨
(6)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판명내용이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 내에 '주택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을 참고하시어 소명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함
(7)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3조]
- 검색대상 :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세대원 전원
- 주택의 범위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 (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와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분양권등
- 주택처분 기준일 (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① 건물등기부등본: 등기접수일
② 건축물관리대장 : 처리일
②의2. 분양권등에 관한 계약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
②의3. 제2조제4호다목에 따른 분양권등의 매매계약서
가. 분양권등의 매매 후「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신고된 경우에는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
나. 분양권등을 증여나 그 밖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상 명의변경일
③ 기타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8)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봄
-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나 입주자모집 승인권자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하다가 다른 주택 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①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② 전용면적 85㎡이하의 단독주택
③ 소유자의「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전용면적 20㎡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한 자는 제외)
-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민영주택 일반공급의 경우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의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봄)|
-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않는 폐가 또는 멸실되어 있거나, 주택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 이내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 무허가 건물[종전의「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함]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해야 함
- 소형·저가주택등을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사람으로서 제28조에 따라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는 경우
- 제27조제5항 및 제28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사람은제외)

Ⅸ 기타사항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약관 중 보증의 범위 및 보증대상 제외사항

- 단양 e편한세상 리버비스타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입니다.

보증서 번호	보증금액	보증기간
제01282020-101-0013200호	₩78,023,400,000-	입주자모집 신고수리일로부터 소유권보존등기일까지 (사용검사 또는 당해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 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한다)

제1조 (보증채무의 내용)

공사는「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주채무자가 보증사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 해당 주택의 분양이행 또는 환급이행 책임을 부담합니다.

【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의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주채무자】 보증서에 적힌 사업주체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분양이행】 주택법령에서 정한 주택건설기준 및 해당 사업장의 사업계획승인서,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여 입주를 마침
【환급이행】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되돌려 줌

제2조 (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 등의 납부)

①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분양권 양도자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포함)에는 보증채권자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않습니다.

1. 천재지변, 전쟁, 내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사정으로 주채무자가 주택분양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여 발생한 채무
2. 주채무자가 대물변제・허위계약・이중계약 등 정상계약자가 아닌 자에게 부담하는 채무

【대물변제】 주채무자의 채권자가 그 채권에 대하여 주채무자가 분양하는 아파트 등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변제에 갈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허위계약】 분양의사가 없는 자가 주채무자의 자금 융통 등을 돕기 위하여 명의를 빌려주어 분양계약하는 것으로 차명계약을 의미합니다.

3. 입주자모집공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입주금】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로부터 받는 계약금과 중도금 및 잔금을 말합니다.

4.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한 입주금납부계좌(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서에서 지정한 계좌를, 공사가 입주금납부계좌를 변경・통보한 후에는 변경된 납부계좌를 말함)에 납부하지 않은 입주금.
5. 공사가 보증채권자에게 입주금의 납부중지를 알린 후에 그 납부중지통보계좌에 납부한 입주금
6.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납부기일 전에 납부한 입주금중 납부기일이 보증사고일 후에 해당하는 입주금. 다만, 공사가 입주금을 관리(주채무자 등과 공동관리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계좌에 납부된 입주금은 제외합니다.
7. 보증채권자가 분양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넘어 납부한 입주금
8.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입주금에 대한 이자, 비용, 그 밖의 종속채무
9. 보증채권자가 대출받은 입주금 대출금의 이자
10. 보증채권자가 입주금의 납부지연으로 납부한 지연배상금
11. 보증사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에게 되돌려 주어야 할 입주금. 다만, 보증사고 사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유로 보증채권자가 보증사고 발생 이전에 분양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12. 주채무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입주예정일 이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한 경우의 지체상금
13.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주택 또는 일반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의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사양선택 품목(예시:홈오토, 발코니샤시, 마이너스옵션 부위, 그 밖의 마감재공사)과 관련한 금액. 다만, 사양선택 품목과 관련한 금액이 보증금액에 포함된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14. 보증채권자가 제5조의 보증채무이행 청구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3조의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그 밖에 보증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발생하거나 증가된 채무
15.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등과 도급관계에 있는 수급인, 그 대표자 또는 임직원 등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등에게 자금조달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납부한 입주금
16.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또는 그 대표자 등이 보증채권자에 대한 채무상환을 위하여 납부한 입주금
17.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또는 그 대표자 등으로부터 계약금 등을 빌려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②공사가 제6조에 따라 분양이행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에는 보증채권자는 잔여입주금 및 제1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입주금을 공사에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입주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잔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1. 사용검사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2. 임시사용승인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중 전체 입주금의 9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잔금

【보증채권자】 보증서에 적힌 사업에 대하여 주택법령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준수하여 주채무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분양권 양수자를 포함)를 말합니다. 다만, 법인이 주택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 이전에 그 주택분양계약에 대하여 공사에 직접 보증편입을 요청하고 동의를 받은 법인만 보증채권자로 봅니다. 이하 같습니다.

제4조 (보증사고)

①보증사고란 보증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주채무자의 정상적인 주택분양계약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를 말합니다.

1. 주채무자에게 부도・파산・사업포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예정공정률(주채무자가 감리자에게 제출하는 예정공정표상의 공정률을 말함. 이하 같음)보다 25퍼센트P 이상 부족하여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다만, 입주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행청구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3.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75퍼센트를 넘는 경우로서 실행공정이 정당한 사유 없이 예정공정보다 6개월 이상 지연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4. 시공자의 부도・파산 등으로 공사 중단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보증기간】 해당 주택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일(복리시설의 경우 신고일을 말함)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사용검사 또는 해당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함)까지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②보증사고일은 공사가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사고 안내문으로 알리면서 다음 각 호 중에서 보증사고일로 지정한 날을 말합니다. 이 경우 공사는 보증서에 적힌 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를 한 일간지(공고를 한 일간지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1개 일간지를 말함)에 실어 통보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이하 같습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부도・파산일, 사업포기 관련 문서접수일 등
2. 제1항 제2호에서 제4호의 경우에는 보증이행청구 접수일

※ 아파트 공사진행 정보 제공: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 사업장의 공사진행 정보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HUG-i)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음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함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관련으로 개인정보 요구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
※ 상세내용은 보증회사인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문의 바랍니다.

▣ 분양형 토지신탁계약 관련 특약사항

○ 본 주택은 「신탁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토지신탁을 원인으로 한 신탁재산으로 "위탁자" ㈜더푸름 "수탁자" (주)한국토지신탁이 **2020년 07월 31일자**로 체결한 분양형 토지신탁계약 내용에 따라 공급되는 것입니다.

① "본 사업"은 분양형 토지신탁사업으로서 "위탁자"와 "수탁자"간 신탁이 종료(신탁목적의 달성, 신탁기간의 만료, 신탁계약의 해지 등 신탁계약에서 정한 종료사유의 발생)되거나, 또는 "본 사업" 분양대상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이 "수탁자"에서 "분양계약자(매수인, 분양권을 승계받은 자 포함)"에게로 이전된 경우(신탁의 일부 종료) "수탁자(매도인)"의 모든 권리·의무는 분양계약의 변경 등 별도의 조치 없이 "위탁자(수익자)"에게 면책적으로 포괄승계되며, "분양계약자(매수인)"은 이에 대하여 동의하고 "위탁자" 및 "수탁자"에게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② 분양대금이 토지비, 공사비, 대출금상환 등의 지급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 부동산 개발의 표시·광고 등에 관한 규정 준수
※ 부동산개발업자 : (주)한국토지신탁(등록번호 : 서울080010,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7) ※ 분양대금관리방법 : (주)한국토지신탁 관리 ※ 인허가 사항 : 2020년 7월22일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2020-민원과-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1) ※ 공급대상물-소재지 : 충청북도 단양군 단양읍 도전리 659-2번지 일원 / 지목 : 대지(예정) / 용도 : 공동주택(아파트 396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 규모- 대지면적 : 23,527.20㎡, 건축면적 : 6,258.5388㎡(본 건축면적은 인허가 변경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연면적 : 60,001.8957㎡(본 연면적은 건축허가 변경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층수 : 지하3층~지상20층 ※ 착공(예정)일 : 2020년 12월 (예정, 인허가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준공(예정)일 : 2023년 4월(예정, 공정진행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입주(예정)일 : 2023년 6월(예정, 공정진행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지역, 지구 : 제2종 일반주거지역 등 ※ 토지거래허가구역에 해당하지 아니함 ※ 건축물의 대지소유권 : 100% 확보 ※ 소유권 이전형태 : 잔금완납시 개별 등기 ※ 시공업체 : 대림건설 주식회사 ※ 분양대행사 : (주)국진하우징 ※ 건축주 겸 신탁업자 : (주)한국토지신탁 ※ 위탁사 : (주)더푸름 ※ 본 광고 내용은 추후 인허가 과정이나 건축허가 변경 여부, 실제 시공시 현장 여건등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인쇄물은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감리사 및 감리계약금액

(단위: 원, VAT포함)

구 분	건축 감리	전기 감리	통신/소방 감리
회사명	㈜해승종합건축사사무소	㈜무림설계기술단	서한컨설탄트(주)
감리금액	₩1,332,181,400-	₩420,882,550-	₩264,000,000-

▣ 사업주체 및 시공사

구분	사업주체 및 수탁사	위탁사	시공사
상호	**㈜한국토지신탁**	**㈜더푸름**	**대림건설 주식회사**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7 (역삼동)**	**충청북도 단양군 단양읍 도전7길3**	**인천광역시 남동구 미래로 14 (구월동)**
법인등록번호	**110111-1258220**	**154611-0014449**	**110111-0163115**

▣ 분양 홈페이지 : www.daelimcon-apt.co.kr
▣ 견본주택 위치 : 충북 단양읍 별곡리 15번지
▣ 분양문의 : 1811-1028 (견본주택)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당사 견본주택으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시 관계법령이 우선합니다.
※ 본 입주자 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주택전시관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는 관계법령이 우선합니다.)
※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 예방을 위하여 주택전시관에 열화상감지카메라 및 손세정제를 비치하였고 일회용 마스크를 주택전시관 방문고객에게 배부할 예정입니다.
(단, 마스크는 수량소진시 배부가 불가할 수 있사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